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 변화와 한국 농업

UR 농산물 협상 타결 및 EC 통합과 관련하여

최 세 균(책임연구원)

권 오 복(연구원)

빈

면

머 리 말

오늘날 世界農業은 人類의 技術革新에 따른 交通·通信手段의 發達로 더욱 開放化·國際化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른 農業의 國際分業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UR 農產物協商 妥結과 經濟의 地域主義 深化는 世界農業의 변화 속도와 폭을 더욱 촉진·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이제 農業의 開放化·國際化는 우리가 싫든 좋은 상관없이 받아 들여야만 하는 시대적 조류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지금 우리 나라 농업이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과제는 개방화·국제화라고 하는 충격을 잘 흡수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이다.

본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농산물 교역질서의 양대 변화의 흐름인 UR 농산물 협상 타결과 EC 통합이 세계농산물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우리 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책적 함축성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물론 연구 과정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은 계속 보완·발전시키기로 하겠지만, 모쪼록 본보고서가 각계의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참고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1. 6

院 長 許 信 行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 2 장 국제무역환경의 주요 변화	
1. 세계 경제구조의 재편	5
2.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7
3. GATT체제의 한계점 노출	8
4. 경제의 지역주의 심화	9
제 3 장 UR 농산물 협상과 국제농산물시장	
1. UR 농산물 협상	12
2. UR 농산물 협상 타결과 국제농산물시장	16
제 4 장 EC 통합과 EC 농업의 변화	
1. EC 통합의 배경과 주요 내용	37
2. EC 통합과 EC 경제	43
3. EC 통합과 EC 농업	56
제 5 장 UR 농산물 협상 타결 및 EC 통합과 한국 농업	
1. UR 농산물 협상 타결과 한국 농업	105
2. EC 통합과 한국 농업	115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25

표 목 차

제 3 장

표 3 - 1	선진국의 무역자유화와 국제농산물 가격 변동	23
표 3 - 2	선진국·개도국의 무역자유화와 국제 농산물가격 변동	25
표 3 - 3	무역자유화와 개도국의 수출량 변동	27
표 3 - 4	무역자유화와 국제가격 안정성의 변화	36

제 4 장

표 4 - 1	EC의 산업별 부가가치, 1985	43
표 4 - 2	식품가공업에 대한 장벽제거 효과	48
표 4 - 3	EC의 농산물 지지가격 10% 감축효과	54
표 4 - 4	부분균형모형에 의한 EC 통합효과 (EC 7개국)	55
표 4 - 5	거시경제모형에 의한 EC 통합효과	56
표 4 - 6	EC 경제에서 농업의 비중	57
표 4 - 7	EC 각국의 농업경영구조, 1987	59
표 4 - 8	EC 회원국별 농업생산에서 개별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1989	60
표 4 - 9	EC 농업생산에서 개별회원국의 비중, 1989	61
표 4 - 10	EC 주요 농산물의 생산 현황	62

표 4 - 11	EC의 육류 생산 현황	63
표 4 - 12	EC의 계란 및 낙농품의 생산 추이	64
표 4 - 13	EC 주요 농산물이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65
표 4 - 14	EC의 국민 1인당 연간 식품 소비량 추이	66
표 4 - 15	EC 주요 농산물의 평균 자급률	67
표 4 - 16	EC 회원국의 신선과일 자급률	68
표 4 - 17	세계농산물 무역에서 EC의 비중	69
표 4 - 18	EC의 주요 농산물 수입 추이	70
표 4 - 19	EC의 주요 농산물 수출 추이	71
표 4 - 20	연도별 EC의 주요 농산물 연말 재고 현황	79
표 4 - 21	연도별 EC의 예산 운용 내용	80
표 4 - 22	EC 식품가공산업에서의 비관세장벽 현황	98
표 4 - 23	EC 4개국의 식품 소비동향 (1인 연간 소비량), 1988/89	103

제 5 장

표 5 - 1	국제가격 상승과 수입 비용의 증가	107
표 5 - 2	TE 30% 감축에 따른 피해액 (품목별 계측)	112
표 5 - 3	TE 30% 감축에 따른 피해액 (농업부문모형에 의한 계측)	113
표 5 - 4	우리 나라의 대EC 농수산물 수출 실적, 1990	120
표 5 - 5	EC 제국에서의 수입금지 과일	121
표 5 - 6	식물검역증명서 제출시 수출 가능품목	121
표 5 - 7	우리 나라의 EC 농산물 수입 현황, 1990	123
표 5 - 8	연도별 및 주요 품목군별 미국 농산물 수출 시장으로서의 EC 비중	124

그 림 목 차

제 1 장

그림 1-1 세계농산물 교역질서 변화와 한국농업	3
----------------------------------	---

제 3 장

그림 3-1 수출 보조금과 국제가격 변동	18
그림 3-2 수입국의 국경보호 감축과 국제가격 변동	21

제 4 장

그림 4-1 무역장벽 제거의 효과	45
그림 4-2 독점기업과 잉여의 감소	46
그림 4-3 노동력의 이동과 잉여의 변화	46
그림 4-4 가격지지제도의 운용체계	7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세계농산물시장은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식량 부족의 시대에 살던 인류는 식량의 공급 과잉과 식품 소비의 고급화시대에 살게 되었다. 통신, 운송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국제화·개방화는 필연적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국제화·개방화시대의 세계경제 속에서 농업부문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UR) 협상은 이러한 세계경제의 국제화·개방화를 촉진시킬 전망이다. 농산물분야는 GATT체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많은 무역왜곡 조치들을 인정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왜곡 조치들은 심각한 교역마찰을 야기시켰으며, UR 협상 타결로 농산물분야도 보다 GATT체제에 가까운 교역분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농산물시장의 국제적 분업화를 의미하며, 각국의 농업은 보호의 막을 벗는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세계의 농업구조는 재편성될 것이다.

반면 EC 통합과 같은 지역주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움직임은 지역내에서의 자유무역 또는 지역내에서의 개방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주의 움직임은 EC 통합 이외에도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지역 자유무역협정,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 움직임,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유대강화 노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움직임도 역내외 교역에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계경제는 GATT를 중심으로 개방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지역주의 흐름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주의 흐름도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개방화에 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은 한국 경제 전반에는 물론 농업분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망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특히, UR 농산물 협상은 농업개혁이라는 매우 진보적 내용을 담고 있어 식량 수입국이며, 농업의 경쟁력이 낮은 한국에는 커다란 변화와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제적 농산물 교역질서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며, 한국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연구에서 우리는 자유주의 교역의 흐름으로서의 UR 협상과 지역화 경향으로서의 EC 통합을 개관하고, 이러한 양대흐름이 세계농산물시장과 한국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적 함축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UR 농산물 협상 타결 이후 국제농산물 가격변화 전망
- (2) UR 농산물 협상 타결이 국제농산물 가격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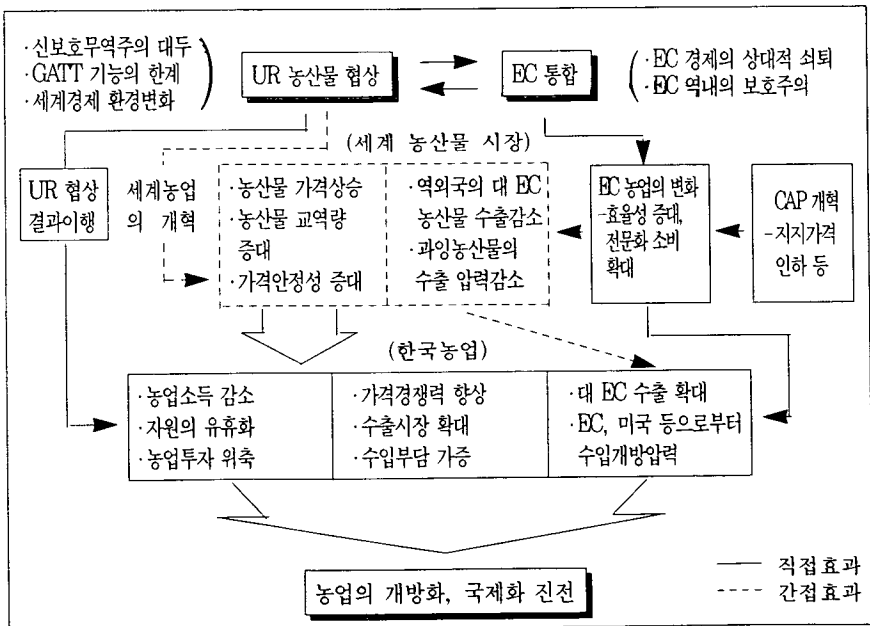
(3) EC 통합이 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특히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이러한 영향에 대응한 정책적 함축성 도출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연구에서 연구의 범위는 국제농산물 교역질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많은 요인들 가운데 UR 농산물 협상과 EC 통합에 한정하였다. 또한 UR 협상 타결로 인한 국제농산물시장의 변화는 국제농산물 가격의 등락과 안정성문제에 국한하였으며, EC 통합은 회원국의 증대 가능성은 논외로 하고 기존의 12개 회원국의 무역장벽 제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그림 1-1).

그림 1-1 세계농산물 교역질서 변화와 한국농업



선행연구와 교역자료를 중심으로 양대흐름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적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가격 변화와 안정성문제, EC 통합의 경제적 의미 등은 경제이론을 중심으로 함축성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계량적 분석이나 실증적인 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

제 2 장

국제무역환경의 주요 변화

세계농산물 교역질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의한 영향이라고 본다. 본보고서의 주된 분석대상인 UR 협상이 그렇고, EC 통합이 그러하다. 본장에서는 세계농산물 교역질서와 관련된 국제무역환경의 주요 변화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세계경제구조의 재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1960년대말 브레튼 우드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세계경제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었다. 종전 후 미

-
- 1) 브레튼 우드(Bretton Wood) 체제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을 중심으로 한 국제통화체제를 의미한다. 이 체제하에서 제1의 기축통화는 달러화였고, 제2 기축통화는 영국의 스테링화(Sterling)이었다.

국은 전후 세계경제의 복원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과 세계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을 설립하고, GATT를 설립하였다. 이와 같은 기구들을 통하여 국제금융질서를 바로 잡고 세계무역 확대를 도모했다.

한편 미국은 마셜계획(Marshall Plan)을 통하여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 재건을 지원하였다.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같은 노력은 유럽의 재건과 세계경제의 회복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55년경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 복구되었고, 1950년대 후반부터 일본·독일·프랑스 등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다가 1968년 영국이 국제수지의 적자를 이유로 스테링화를 평가절하함에 따라 전후 이래 세계금융질서의 핵심을 이루어 왔던 금본위제의 IMF체제가 흔들리게 되면서부터 전후 세계경제체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스테링화의 평가절하에 이은 1971년 달러화의 평가절하로 국제통화시장에서 미국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어 제1차 오일쇼크로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보호주의가 대두함에 따라 GATT체제도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서독의 경제는 미국경제에 비해 꾸준한 성장을 보였다.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대신 일본과 서독을 필두로 한 EC의 비중이 높아졌다. 미국 중심의 전후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정인 1970년대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다극화가 진전되었다. 이에 따른 무역마찰도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말 다시 발생한 제2차 오일쇼크는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지위를 더욱 낮아지게 하였으나 일본과 서독은 더욱 부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한 이래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직면하여 1985년부터는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략한 반면 일본과 서독은 대규모 무역흑자를 나타냈다.

그리고 1980년대는 세계경제에서 신흥공업국이 새롭게 부각하였다. 이들 신흥공업국들은 1960년대부터 공업화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1970년대 이래 개도국과 선진국의 경제성장 속도를 훨씬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소위 말하는 '3저현상'으로 더욱 높은 고도성장을 구가하였다.

요컨대 1980년대는 세계경제의 다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된 시기이고, 이의 여파로서 지역주의와 보호주의가 심화된 시기로 특징지워진다.

2.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1970년대초반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만연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이래 국가간 국제수지의 불균형심화문제이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폭 확대와 달러 신뢰도 하락, 일본과 서독의 흑자누적으로 미국 주도의 GATT체제의 무역자유화정책을 재검토하였다. 자유무역의 추구보다는 자국 산업보호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보호무역주의가 서서히 대두하게 되었다.

둘째, EC를 위시한 지역주의의 대두이다. GATT는 EC와 같은 지역동맹을 GATT 의무준수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었다. 그러나 지역동맹이 거대화됨에 따라 무차별원칙에 입각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다. 아메리카대륙에서 미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FTA) 등이 이에 대응하여 생겨났다.

셋째, GATT체제의 약화이다.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다.

넷째, 소위 말하는 신보호주의의 출현이다. 주요 선진국이 산업구조 조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유치산업뿐만 아니라 사양산업까지도 보호무역을 통해 보호하려는 성향이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 보호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보호수단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보호수단인 관세나 수입수량제한이 아니라 수량규제, 가격규제, 정부간여, 수출자율규제협정, 행정절차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이 동원되었다. 이 결과 자유무역을 기치로 삼고 있는 GATT체제는 더욱 약화하게 되었다.

3. GATT체제의 한계점 노출

GATT의 기본원칙은 무차별원칙, 자유무역의 원칙, 공정경쟁의 원칙이다.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은 자유무역의 원칙과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T)라고 불리는 무차별원칙이다. 이 원칙들을 보다 쉽게 풀이하면 세계 각국(가맹국)은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해 관세를 제외한 모든 수출입제한 조치를 제거하고, 이같은 조치를 모든 가맹국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IMF와 함께 GATT는 전후 이래 세계경제질서의 축으로서 자유무역 확대와 세계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60년대 말 IMF체제에 균열이 가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GATT도 상당한 누수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선진국들이 비관세장벽을 이용, 자의적으로 실시하는 보호무역주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는 못했다.

1980년대 초반은 GATT 설립 이래 세계적인 보호주의가 극에 달한 시기이다. 자유무역의 기수를 자처해 오던 미국도 공정무역 또는 상호주의라는 기치 아래 다자간 무역협상에 의한 문제해결보다 쌍무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방식에 치중하였다. GATT체제가 더욱 약화되게 된 것은 이른바 회색지대(Grey Area)라고 불리는 각종 비관세

조치가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수출자율규제협정 (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s), 시장질서유지협정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OMA),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GATT규정에는 이를 명쾌하게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더구나 GATT 설립 이래 거의 예외적인 분야로 인정되어 온 농산물분야에서 무역왜곡 내지 보호주의가 극심하여 주요 국가간 무역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지만, GATT는 이를 적절하게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GATT가 이전에 포괄하지 않았던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 등 새로운 분야의 교역규범의 정립이 크게 요구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GATT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86년부터 8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UR 협상이 개시되었다.

4. 경제의 지역주의 심화

지역주의는 경제교류, 특히 무역에 국한하여 모든 국가가 상호 동등한 대우를 하고 호혜주의에 입각, 완전 자유화를 실현하는 국제주의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김세원, 1985). 즉, 지역주의는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군이 자유무역, 무차별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서 지역주의가 심화된 배경으로는 역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국제경제의 역학관계 변화가 한 요인이다. 세계경제구조가 미국 중심에서 다극화 방향으로 진전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미국과

EC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주의 성향이 보편화되었다.

둘째, 다자간 무역체제의 약화이다. 1970년 이후 나타난 국제경제 면에서 무역경쟁의 심화, 자원 민족주의의 대두, 남북문제의 첨예화, 그리고 미국경제의 상대적 후퇴 등에 따라 세계경제는 보호주의로 치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주의가 퇴색케 되고, 지역주의가 대두된 것이다. 더욱이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자 국제무역질서 유지자로서 미국의 역할이 크게 약화되었고, GATT의 다자간협상 방식에 대한 회의 및 최혜국대우 적용에 있어 무임승차문제로 선후진국간 이해 차이가 확대되면서 GATT 이탈감이 고조되었다. 자국에게 별다른 이익을 주지 못하는 GATT원칙을 준수하기 보다는 정부개입에 의한 쌍무교섭을 더 중시하고 자국의 무역문제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간에 협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크게 보아 유럽공동체, 북미자유무역권, 아시아 경제협력체 등을 중심으로 3분화되고 있다. 특히, EC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제블록체로서 내부적인 통합결속작업과 아울러 EC 교역량의 60%를 차지하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단일 경제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또한 EC는 동서 냉전시대의 종식과 함께 시장경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동구권과도 교류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유럽전체가 단일 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미경제권 형성도 EC 통합의 진전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89년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발효중에 있고, 현재는 이같은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포함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물론 이 지역은 각국의 특성상 자유무역지대 이상을 초월한 경제통합체 결성은 힘들겠지만,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완성할 경우 북미지역은 인구 3억 6백만명에다 GNP가 6조

2천억달러에 달해 EC를 능가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체가 될 것이다. 이들 3개국은 1991년말까지 자유무역협정을 완결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멕시코와 중미국가들은 오는 1996년까지 시장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놓고 있다.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남미국가들은 1994년까지 자유무역권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메리카 대륙전체에서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EC를 중심으로 붙어 닦친 세계무역의 지역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과, 이들 국가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이라고 풀이된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타지역에 비해 경제통합이 뒤늦게 바람이 불었다. 경제협력체라기보다는 정치·외교적 협력을 위한 협력체로 1968년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이 대표적인 지역협력체인데, 1980년대 이후 경제·무역분야에서의 협력도 병행하여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1992 EC의 경제 통합, 북미지역의 통합 추진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다양한 통합체 건설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동남아시아경제권(East Asian Economic Grouping: EAEG), 그리고 일본에 의해 제안된 동해경제권 등이다. 이 중에서, 특히 APEC은 무역, 투자, 인력 및 기술개발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회원국으로는 ASEAN 6개국·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12개국이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의 국가간에는 경제격차가 다양하고, 정치적 역학관계가 얽혀 있어 유럽 등지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블록화 출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제 3 장

UR 농산물 협상과 국제농산물시장

1. UR 농산물 협상

가. UR 농산물 협상의 대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EC는 보다 강력한 지역경제체제를 향한 통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북미지역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밖에도 동남아시아, 태평양 연안국들도 경제적 유대 강화를 모색하게 되어 세계의 교역질서는 지역주의의 강화로 GATT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의 계속적 발전을 위협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급격히 확대되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이에 양자간 또는 GATT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적자 해소를 위한 시장 개방압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특히 그들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의 분야에 시장 개방압력을 강화하였다.

UR 협상은 이와 같은 보호주의, 지역주의에 대한 우려, 새롭게 대두된 무역문재인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에 관한 GATT의 새로운 규범 설정의 필요성 등에 의해 대두되었다. UR 협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 협상분야는 GATT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다루어 오던 분야를 GATT체제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세계농산물시장은 1970년대까지의 식량 부족시대에서 1980년대의 식량 과잉공급시대로 전환하면서 과잉생산, 재고 누증, 수출보조금 경쟁 등 세계교역질서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농산물 교역질서 왜곡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의 협상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UR 협상의 15개 협상그룹 가운데 하나인 농산물 협상의 진행 추이와 타결 전망을 간략히 소개한 것이다.

나. UR 농산물 협상의 추이

UR 협상은 1986년 9월 우루과이(Uruguay)의 Punta del Este (Punta del Este)에서의 각료선언을 시발점으로 한 GATT의 여덟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1990년말을 타결 시한으로 잡고 시작되었으나 1990년 12월 브릿셀 각료회의에서도 타결을 보지 못하고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다음은 그간의 주요 협상일지이다.

- 1986년 9월: 우루과이 Punta del Este에서 각료선언으로 협상 개시
- 1986년 9월 ~ 1987년 2월: 각종 공식·비공식 농산물그룹 회의
- 1988년 12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전반기 협상을 종합하고 후반기 2년간의 실무협상에 기본이 되는 협상목표 설정을 위한 중간평가회의 개최. 미국과 EC의 참여한 대립으로 중간평가 합

의에 실패

- 1989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농산물 협상의 목표, 이행방법 등의 장기조치와 농업보호의 현수준 동결이라는 단기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중간평가 합의문 채택
- 1989년 4월 ~ 1990년 6월: 협상의 촉진을 위해서 가장 견해차가 큰 국가, 주요 협상참가국을 대상으로 비공식회의 위주의 협상 진행
- 1990년 7월: 지금까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농산물그룹 의장 재량으로 의장초안을 작성하여 배포. 협상진행이 가속화되기 시작
- 1990년 7월 TNC회의: 의장초안을 토대로 협상의 기초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의장초안을 협상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만 합의
- 1990년 10월: 협상전반에 대한 주요 의제를 놓고 마지막 공식회의인 제25차 농산물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을 보지 못하고 12월에 열릴 브릿셀 각료회의로 협상 타결 여부를 넘김
- 1990년 12월: 브릿셀에서 각국의 각료급들이 모여 마지막 정치적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 UR 타결 시한으로 잡은 1990년 말까지 타결을 보지 못하고 브릿셀 각료회의는 UR 협상의 연장을 선언한 채 폐막

- 1991년 2월: GATT 사무국은 미국, EC, 케언즈그룹 등 주요 협상국들과의 협상재개를 위한 절충을 시도한 끝에 2월 26일 TNC회의를 개최하고 UR 협상의 재개를 선언
- 1991년 3월 ~ 6월: 네 차례에 걸친 주요국 비공식 실무회의와 이를 토대로 작성된 대안서(Option Paper) 배포
- 1991년 7월: 협상진행 대안서에 대한 각국의 평가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위급 무역협상위원회 개최를 통해 실무회의 종결 시도

다. UR 농산물 협상의 전망

지난 4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세계적인 교역분쟁이 우려되며,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협상을 타결시키고자 하고 있다. 1991년 7월의 G7 정상회담에서도 1991년말까지는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1992년 11월)와 EC 통합(1992년말) 등 주요국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1991년말까지 최소한 협상의 기본골격(Frame work)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7월말의 고위급 무역협상위원회에서 협상의 골격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미국과 EC의 정치일정 등을 놓고 볼 때 미국과 EC는 서로의 양보를 통해 협상 타결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치적 절충과정에서 미국은 EC의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수입 부과금 및 수출 보조금 감축문제에서 일보 양보하고 EC는 미국의 주장인 국내 보조금 감축과 관세화를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 UR 농산물 협상 타결과 국제농산물시장

가. 국제농산물 가격의 변화

국제무역질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으며, GATT의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진행중인 최근에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의 하나는 비교우위론이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교역 당사자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역으로부터의 이익과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특히 농업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의 장벽을 좀처럼 허물어 오지 않았다. 이러한 농업에 대한 보호주의의 이유로는 주로 식량안보, 환경보전, 정부의 재정적 수입을 들 수 있다. 특히, 각국은 식량안보에 관한 한 정부의 정책목표에 대한 어떠한 손상도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익과 비교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무역이론에 있어서 교역으로부터의 이익을 논함에 있어 이러한 정책목표는 간과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국제농산물시장은 각국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의 농업보호정책들에 의해 왜곡되어 왔으며, 최근의 생산과잉, 국제농산물 가격의 하락도 직접적인 원인이 이러한 각국의 농업보호정책에 기인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8). 국제농산물 교역량의 감소와 가격의 하락은 국제교역에 있어서 심각한 마찰을 야기시켰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이러한 국제적 갈등 해소의 차원에서 출발된 것이다.

농업에 대한 보호는 주요 선진국과 식량 수입국에서 행하여 지고

있으며, 농업에 대한 보호수준을 감축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 국내 농산물가격은 하락할 것이나 국제농산물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현재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국제가격 수준보다 높은 정부의 지지가격과 수출 보조금의 감축은 수출국의 국내 시장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며, 국내 시장가격의 하락은 생산을 감소시키고 소비를 증가시켜 수출량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제시장에 대한 공급량의 감소는 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수출 보조금의 감축도 국제가격 상승의 또 다른 요인이 된다. 둘째, 수입국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수입규제조치의 완화는 수입수요를 증가시켜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다음은 이러한 경로를 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국제농산물 가격이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의 결과로 어느 정도나 상승할 것인가는 그간의 연구결과들은 토대로 예측해 보고자 한다.

① 수출국의 보호수준 감축과 국제농산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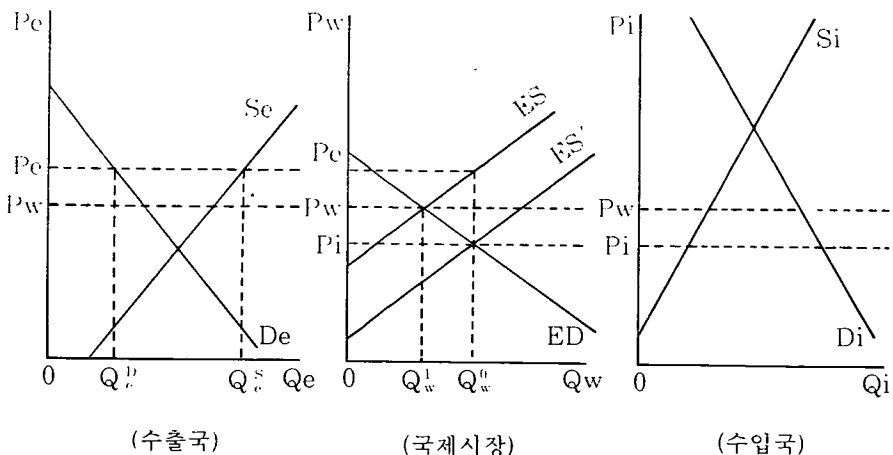
수출국의 농업보호는 국내 가격지지정책과 이로 인한 수출 보조금 지급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수출 보조금제도는 국제가격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수출 보조금 감축과 국제가격 변동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수출 보조금제도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자국의 농업보호를 위해 채택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농업은 아직도 수출 보조금은 커녕 오히려 조세에 의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국들은 수출보다도 수입 감소에 주력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출 보조금은 주로 정부가 세계시장가격보다 높은 국내 농산물 지지가격을 설정하여 농산물의 국내 공급과잉, 정부 재고 증가문제를 야기시킬 경우 국내 공급과잉문제를 해외시장에서 해결하려 할 때 채택된다.

어느 수출국(A국이라 하자)이 세계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국내가격을 설정하고 생산자 지지가격 유지로 인한 공급과잉 현상을 수

출 보조금을 통해 해소하고 있으며, 다음의 가정하에 있다고 하자. A국은 국제시장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교역량 비중이 커 A국의 수출량 또는 수출정책에 의해 국제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Large Country Assumption). A국의 생산자 지지가격은 소비자에게도 적용된다. 수입국의 무역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이 가정은 단지 수출국의 정책에만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임). 국내의 시장은 안정적이다. 수요곡선은 우하향이며, 공급곡선은 우상향이다.

그림 3-1에서 첫번째 그림은 수출국시장, 두번째 그림은 국제시장, 그리고 세번째 그림은 수입국시장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에서 아래첨자 e는 수출국 exporter), i는 수입국 importer), w는 세계시장(world market)을 나타낸다. P는 가격, Q는 수량, S는 공급, D는 수요, ES는 초과공급, ED는 초과수요를 의미한다.

그림 3-1 수출 보조금과 국제가격 변동



먼저 수입국과 수출국에서 어떠한 시장왜곡조치도 없다고 가정하자. 이 때 그림과 같은 수요와 공급구조하에서의 국제시장가격은 초과공급곡선 ES와 초과수요곡선 ED가 만나는 P_w 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수출국에서 세계시장가격(P_w)보다 높은 수준에서 국내가격(P_e)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하자. 이 때 수출국의 국내수요는 OQ'' 가 되고, 공급은 OQ''' 가 된다. 따라서 Q'' Q''' 만큼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며, 현재의 국제가격 P_w 하에서는 수출이 어렵다. 왜냐 하면 국내가격 P_e 가 국제가격 P_w 보다 높아 수출업자는 손해를 보게되기 때문이다.

수출국 정부는 결국 이러한 국내 공급과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출 보조금은 수출국의 국내가격 P_e 와 자유무역하의 국제가격 P_w 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국내가격을 P_e 로 유지함으로써 수출 가능물량이 국내가격을 P_w 에 유지할 때 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시장에서의 공급곡선은 ES에서 ES'으로 이동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¹⁾ 따라서 국제시장가격은 ES'과 ED가 만나는 P_i 에서 결정되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수출 보조금은 P_e 와 P_i 수준에서 결정된다. 수출 보조금 총액은 P_eP_i 에 Q'' Q''' 를 곱한 것이 된다. 수출국의 국내가격 지지정책과 수출 보조금 지불정책으로 국제가격은 자유무역시보다 P_w 에서 P_i 로 하락하고, 수입국은 P_w 보다 낮은 P_i 에서 보다 많은 물량을 수입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수출국의 국내 보조정책과 수출 보조금 지불정책이 감축될 경우 국제가격은 P_i 에서

-
- 1) 수출 보조금이 물량단위(Per unit)로 일정액(specific subsidy)이 주어진다는 가정하에서 초과공급선 Es는 Es'로 수평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 보조금이 일정률(Ad Valorem Subsidy)로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ES는 수평이동이 아닌 회전이동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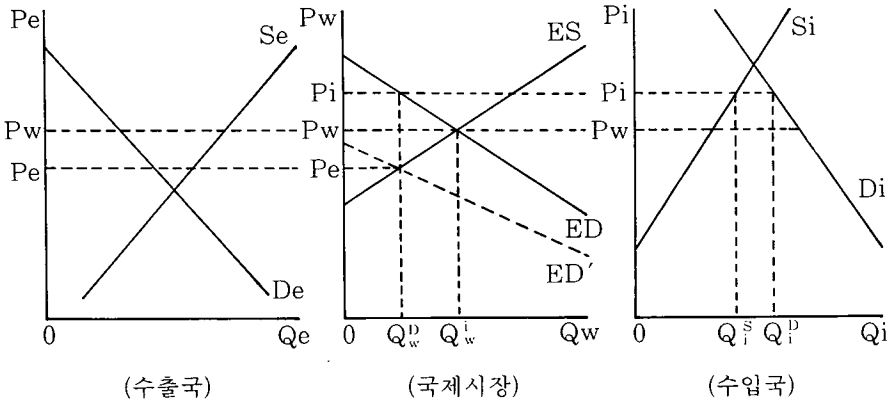
P_w 로 접근해 가게 될 것이다. 수출국의 국내가격은 P_e 에서 P_w 로 접근하며, 수입국의 국내가격은 P_i 에서 P_w 로 접근할 것이다. 결국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 감축은 여타조건이 일정하다면 국제가격 상승, 수출국 국내가격 하락, 수입국 국내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② 수입국의 국경보호수준 감축과 국제농산물 가격

농산물 수입국들은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왜곡조치들은 자국의 농업보호와 재정적 수입의 확보가 주된 정책목표로 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관세인하는 물론 각종 비관세조치(특히, 수량규제)를 관세화하여 감축해 나가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수입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하나의 관세로 묶어 감축해 나갈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제가격의 변동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논의의 간편화를 위해 수출국의 무역왜곡조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그림 3-2〉에서 모든 표기는 앞 절의 수출 보조금과 국제가격 변동의 경우와 같다. 수입국의 무역규제가 없다고 할 때 그림과 같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수요와 공급구조하에서는 국제시장의 공급과 수요곡선은 각각 ES 와 ED 가 되고, 국제가격은 P_w 에서 결정된다. 만약 수입국에서 일정률의 관세(ad valorem tariff)를 수입품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하고, 그 관세율은 국내가격을 P_i 로 유지하는 수준에 맞춘다고 하자. 이 때 수입국의 국내가격은 관세부과만큼 높아 지게 되고, 수요는 감소한다. 따라서 국제시장에 있어서의 초과수요도 감소하며, 초과수요곡선 ED 는 ED' 으로 이동하게 된다. ED' 이 ED 로부터 수평이동하지 않고 회전한 것은 일정률의 관세부과가 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3-2 수입국의 국경보호 감축과 국제가격 변동



수입국의 관세부과로 국제시장가격은 Pw 에서 Pe 로 하락하게 된다. 수출국은 국제시장가격인 Pe 에서 수출을 하게 되지만 수입국은 Pe 에 구입하여 Pe Pi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소비자에게는 Pi 에 판매하게 된다. 수입물량은 자유무역하에서의 교역량보다 적은 Q_i^s Q_i^p 가 되며, 관세수입은 Pi Pe 에 수입량 Q_i^s Q_i^p 를 곱한 것이 된다. 자유무역과 비교할 때 수입국의 수입규제(관세부과)는 교역량을 줄이고, 국제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상의 논의에서 본 바와 같이 수입국의 각종 수입규제는 국제가격을 자유무역의 경우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한다. 현재 수입국들은 각종 수입규제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의해 국제교역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러한 각종 수입규제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타결될 경우 국제가격은 자유무역시의 가격수준 즉, Pw 로 접근할 것이며, 이는 국제가격 상승과 교역량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수출국의 수출 보조금 감축과 수입국의 관세화와 이를 통한 보호수준 감축이 모두 국제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보호수준 감축으로 어느 정도나 국제가격이 상승할 것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③ 국제가격 변동의 폭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이후의 국제농산물 가격 변동은 지금까지 발표된 예측결과들을 종합하는 범위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무역자유화 이후의 국제가격 변동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UNCTAD(1990), Krissoff(1990), 그리고 Zietz와 Valdes(1990) 등이 있다. 먼저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종합하여 변동폭을 예측해 보기로 하자.

UNCTAD(1990)의 연구결과는 <표 3-1>에 요약되어 있다. 연구결과는 시나리오별로 정리되었으나 어느 시나리오도 UR 협상 결과를 완전히 반영시키고 있지 못하다. 물론 UR 협상이 진행중인 현상황에서 협상 타결의 방향을 짐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 소개되는 예측결과들은 단지 가격 변동의 폭을 가늠하는 기초자료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UNCTAD의 시나리오는 선진국들(호주·캐나다·EC·미국·일본)의 자유화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들 선진국의 완전자유화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국제가격이 상승할 품목은 미곡인 것으로 계측되었다(42.6%). 완전자유화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것은 곡물류와 설탕이며, 커피·코코아·담배 등의 가격 상승은 비교적 작다(한 자리수 정도). 선진국에서 생산자 지지가격을 20% 감축할 경우에는 쌀(18.3%), 쇠고기(13.0%), 설탕(10.6%) 정도가 두 자리수의 가격 상승을 가져오며, 그밖의 품목들은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수출 보조금을 철폐할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수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인 밀과 쇠고기의 경우만 두 자리수의 국제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선진국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커피, 코코아, 잎담배의 가격은 선진국이 최소시장접근을 10%만 증가시켜도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표 3-1>.

표 3-1 선진국의 무역자유화와 국제농산물가격 변동

단위: %

품목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시나리오 IV
밀	20.4	7.5	12.2	1.1
옥수수	15.1	4.8	0.1	3.9
쌀	42.6	18.3	8.5	2.2
수수	12.4	1.9	0.0	2.4
대두	3.6	0.0	0.0	2.5
쇠고기	12.5	13.0	11.1	1.6
설탕	26.5	10.6	0.9	4.3
면화	0.1	0.9	0.0	9.1
차류	2.9	0.5	0.0	8.3
커피				
볶지않은것	4.4	0.4	0.0	29.9
볶은것	7.5	0.0	0.0	38.7
코코아	0.1	0.0	0.0	19.7
잎담배	2.6	0.3	0.0	12.3

시나리오 I : 선진국의 완전개방

시나리오 II : 선진국의 생산자 지지가격 20% 감축

시나리오 III : 선진국의 수출 보조금 철폐

시나리오 IV : 선진국의 수입수준(최소시장접근) 10% 증가

자료: UNCTAD, 1990.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무역자유화를 전제로 한 연구결과로는 Krissoff외(1990)가 있다. Krissoff외의 연구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UR 협상의 타결방향보다는 과도한 자유화 가정하에 나온 것이다. 즉, 선진국 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완전히 자유화를 시행한다는 가정하에서 연구한 것으로 UR 협상의 타결선이 될 수 있는 10년간 30~50% 정도의 보호수준 감축보다 두배 정도 과대평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나 UNCTAD(1990)의 연구가 선진국의 자유화만을 가정한 것과는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자유화 대상에 놓고 분석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Krissoff외의 분석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서 첫째, 선진국만이 자유화하고, 개도국은 그들의 보호수준을 유지하며, 국제가격 변동의 50%만을 국내가격 변동에 반영시킨다는 가정 둘째, 첫번째 가정과 같으나 국제가격 변동을 개도국이 100% 국내가격에 반영시킨다는 가정 셋째,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자유화한다는 가정이다. 우리의 관심은 UR 타결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일정 수준의 자유화를 이행할 경우의 국제가격 변동에 있다. 따라서 Krissoff외 연구결과 가운데 세번째 가정에 의한 시나리오Ⅲ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자유화로 국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것은 유제품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크게 가격이 상승할 것은 쌀을 포함한 곡물류이며, 설탕도 40% 정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육류가격도 10~20% 정도 상승하여 평균 16% 국제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국 UR 타결로 현재의 보호수준이 반 정도 감축된다면 국제농산물 가격은 완전개방시의 가격 상승폭의 반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2 선진국·개도국의 무역자유화와 국제농산물 가격 변동

단위: %

품목	시나리오 I	시나리오 II	시나리오 III
쇠고기	19	16	11
돼지고기	14	12	11
양고기	31	25	21
닭고기	18	16	16
계란	6	5	4
버터	99	84	85
치즈	43	37	38
기타유제품	88	81	81
밀	37	27	20
옥수수	29	22	23
사료곡물	22	16	15
쌀	19	11	15
콩	-2	-2	-3
면화	12	8	4
설탕	48	29	40
담배	4	3	3
평균	21	16	16

시나리오 I : 선진국의 자유화와 개도국의 세계시장가격 반영률 50% 조
절을 가정

시나리오 II : 선진국의 자유화와 개도국의 세계시장가격 반영률 100%
유지를 가정

시나리오 III :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자유화 가정

자료: Krissoff, B. *et al.*, 1990.

그밖에도 Parikh의(1988)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보호수준을 완전감축할 경우 농산물의 대 비농산물 가격 변화는 밀은 23%, 사료곡물은 13%, 쌀은 16%, 쇠고기는 11%씩 국제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Zietz와 Valdes(1990)는 쇠고기와 설탕의 가격은 13.3%와 0.8% 각각 상승하나 밀, 사료곡물, 쌀, 콩의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같이 UR 협상 타결 이후 국제농산물 가격의 상승에 관한 이견도 없지는 않으나 하락보다는 상승을 예측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나. 국제 농산물 교역의 변화

앞 절의 논의에서 <그림 3-1>을 통해 볼 때 수출 보조금의 감축은 국제 교역량을 감소시키게 된다(OQ^0 에서 OQ^1 으로 감소). 그러나 <그림 3-2>에서와 같이 수입규제를 감축할 경우에는 국제 교역량은 증가한다(OQ^0 에서 OQ^D 으로 증가). 이와 같이 어떤 정책으로 인한 보호수준의 감축은 국제 교역량 증가를 가져오나 또 다른 정책의 보호수준 감축은 교역량 감소를 초래하기도 한다. UR 농산물 협상에서는 모든 보호수준의 감축을 논의하고 있어 교역량 증가와 교역량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가 함께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UR 협상 타결 이후 국제 교역량이 증가할 것인지 또는 감소할 것인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UR 협상 이후의 국제 농산물 교역량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교역자유화와 교역량의 변화에 관한 연구 가운데 UR 협상 타결 이후의 농산물 교역량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구로 여기서는 Zietz와 Valdes(1990), 그리고 Burniaux의(1990)를 소개하고자 한다. Zietz와 Valdes의 연구결과는 <표 3-3>에 다른 연구결과와 함께 요약되어 있다. Zietz와 Valdes의 연구결과를 보면 무역자유화와 개도국의 수출량 감소를 추정한 경우도 있다(<표 3-3>).

표 3-3 무역자유화와 개도국의 수출량 변동

연구자	밀	사료곡물	쌀	쇠고기	설탕	콩
Zietz와 Valdes						
선진국의 자유화	8.8	-11.6	4.0	0.8	5.1	-0.9
개도국의 자유화	0	16.1	2.5	-1.8	2.5	-4.0
모두의 자유화	8.9	1.7	6.4	-0.7	7.8	-5.3
IIASA						
선진국 자유화	11.1	1.3	9.1	1.8	—	—
개도국 자유화	-11.0	-10.0	0	0.3	—	—
Tyers와 Anderson						
선진국 자유화	4.9	-2.3	4.0	2.9	2.9	

자료: Zietz와 Valdes, 1990.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가 무역을 자유화할 경우 개도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량은 크게 증가하여 현재보다 1,900만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만 무역자유화를 수행할 경우에는 개도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량은 600만톤, 개도국만 무역자유화를 수행하면 1,500만톤 정도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출량 증가 추정은 기타의 연구결과에서도 비슷하다.

Burniaux외(1990)는 주요 선진국들의 보호수준 철폐로 국제 농산물 교역량은 약 26%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품목군별로 볼 때 가장 많은 교역량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유제품으로 2.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육가공품의 교역량도 1.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로 비농산

물 교역량도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물론 UR 타결 이후 농산물 교역량의 정확한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UR 이후 국제 농산물 교역질서의 변화는 선진국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결과와 UR 협상 타결 이후를 연결시켜 볼 수는 있다. 먼저 선진국의 무역자유화로 농산물 교역량이 증가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선진국과 함께 개도국이 농산물 교역을 자유화한다면 국제 농산물 교역량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개도국이 농산물 교역에 있어 자유화를 취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각종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완화이며, 다른 하나는 수출에 대한 조세정책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국과는 달리 수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수출에 대한 부(-)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들이 의존하고 있는 각종의 수입규제와 수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제 농산물 교역량은 증가할 것이다. 선진국에 있어서의 수출 보조금 감축은 농산물 교역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나 그밖의 정책들에 대한 자유화는 교역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선진국에 있어서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가 국제 농산물 교역량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로 국제 농산물 교역량의 증가를 가져 올 것이라는 예측은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교역의 자유화는 국별 분업화와 전문화를 촉진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국제 교역량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증가량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다. 국제 농산물가격 안정성의 변화

가격 안정성(price stability)은 가격 변동(price variability)에 대비한 저장정책, 가격 예측, 가격 변동폭을 줄이기 위한 각종의 가격

정책에 의해 증가할 수 있으며, 국제가격의 안정성은 국제시장에 가격 불안정요인을 전가시키는 각국의 정책들에 의해 저해받기도 한다.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국제시장에 그 불안요인을 전가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EC의 변동부과금제도(Variable Levy System)를 들 수 있다. EC의 변동부과금제도는 EC의 가격을 어느일정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부과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국제가격 변동에 의한 EC내의 생산과 소비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며, 국제가격 변동요인을 EC는 조금도 완화시키거나 흡수하지 않게 된다.

국제 농산물가격 안정성의 문제는 수입국은 물론 수출국에 있어서도 큰 관심사항이다. 각국은 농산물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저장정책을 중심으로 각종의 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Shei와 Thompson(1977), Grennes외(1978)는 국제가격 변동을 국내가격에 반영시키지 않는 각종 정책들에 의해 국제시장의 가격 불안정성은 증가하며, 이러한 정책들의 철폐가 저장정책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국내정책이 국제시장의 가격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순화한 모형에 의해 설명한 것이다.

① 자유무역

다음과 같은 수요, 공급, 국제교역의 함수식을 가정하자. 식 (1)은 수요, 식 (2)는 공급, 식 (3)은 교역을 나타내며, 식 (4)는 국제 교역량의 역수요함수식이다.

$$(1) \quad Q_c = a - b P_c$$

$$(2) \quad Q_p = c - d P_p, \quad t-1 + \epsilon$$

$$(3) \quad T = Q_c - Q_p$$

$$(4) \quad P_w = g + hT + \theta$$

여기서 Q_c 는 수요, P_c 는 소비자 가격, Q_p 는 생산량, P_p 는 생산

자 가격, $t-1$ 은 전년도 가격, T 는 교역량(여기서 정(+)의 값은 수입을, 부(-)의 값은 수출을 나타냄), P_w 는 국제시장 가격을 나타낸다. a, b, c, d, g, h 는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방정식의 계수이다. ϵ 는 생산에 있어서의 무작위 요소(Random Component)로 평균은 0, 분산은 σ_ϵ^2 로 가정되었다. θ 는 P_w 에 관련된 무작위 요소로 $\theta \sim N(0, \sigma_\theta^2)$, $E(\epsilon, \theta) = 0$ 로 가정하였다.

자유무역은 국제가격과 생산자가격, 소비자가격이 일치함을 의미하며, $P_w = P_c = P_p$ 이다. 식 (1)과 (2)를 식 (3)에 대입하고 식 (3)을 다시 식 (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국제가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5) \quad P_w = \frac{g + h(a - c - dP_{w, t-1} - \epsilon) + \theta}{(1 + bh)}$$

식 (5)에 관한 분산은 다음과 같다.

$$(6) \quad \text{Var}(P_w)_F = \frac{h^2 \sigma_\epsilon^2 + \sigma_\theta^2}{(1 + bh)^2}$$

여기서 아래첨자 F 는 자유무역(Free Trade)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무역을 가정한 경우의 국제가격에 대한 분산과 각종의 무역왜곡 조치들이 존재할 경우의 국제가격에 대한 분산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무역을 향한 UR 농산물 협상 타결 이후와 많은 무역왜곡 정책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가격 안정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 종량세

종량세(Specific Tariff)는 일반적으로 수입가격 또는 국제가격에 일정액의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P_w + T = P_p = P_c$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식 (1) ~ (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은 국제가격에 관한 식을 얻을 수 있다.

$$(7) \quad P_w = \frac{g + h \{a - bt - c - d(P_w + t) - \epsilon\} + \theta}{(1 + bh)}$$

식 (7)에 대한 분산은 다음과 같다.

$$(8) \quad \text{Var}(P_w)_s = \frac{h^2 \sigma_\epsilon^2 + \sigma_\theta^2}{(1 + bh)^2}$$

따라서 종량세가 존재할 경우의 국제가격에 대한 분산(식 (8))과 자유무역을 가정한 경우의 국제가격에 관한 분산(식 (6))은 같다. 즉, 종량세는 국제가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③ 종가세

종가세(Ad Valorem Tariff)는 일반적으로 수입가격 또는 국제가격에 일정률을 곱한 형태로 부과된다. 즉, $P_w(1+t) = P_p = P_c$ 이다. 이를 식 (1) ~ (4)에 대입하여 정리하고, ϵ 에 대한 분산을 구하면 국제가격에 관한 식은 식 (9)와 같고, 식 (9)에 대한 분산은 식 (10)과 같다.

$$(9) \quad P_w = \frac{g = h\{a - c - d\{P_w(1+t)\} - \epsilon\} + \theta}{1 + bh(1+t)}$$

$$(10) \quad \text{Var}(P_w)_A = \frac{h^2 \sigma_\epsilon^2 + \sigma_\theta^2}{\{1 + bh(1+t)\}^2}$$

식 (10)에서 아래첨자 A는 종가세를 나타낸다. 종가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국제가격에 대한 분산 식 (10)과 자유무역하의 국제가격에 대한 분산(식 (6))을 비교해 보면 종가세를 부과할 경우의 분산이 자유무역하의 분산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소비자가격은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제가격의 상승폭보다 절대액

면에서 국제가격보다 더 오르고, 국제가격이 하락하면 절대액면에 있어서 국제가격보다 덜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국내 소비를 억제시키고, 국제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국내 소비를 촉진시켜 국제가격 안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4] 부족불지급제도

생산자가격은 소비자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며, 국제가격과 소비자가격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생산자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해서 충당된다고 하자. 즉, $P_p = P^*$, $P_c = P_w$ 이다. 이를 식 (1) ~ (4)에 대입하여 국제가격을 구하면 식 (11)과 같고, 식 (11)에 대한 분산은 식 (12)와 같다.

$$(11) \quad P_w = \frac{g + h(a - c - dP_{t-1}^* - \epsilon) + \theta}{1 + bh}$$

$$(12) \quad \text{Var}(P_w)_D = \frac{h^2 \sigma_\epsilon^2 + \sigma_\theta^2}{(1 + bh)^2}$$

식 (12)의 아래첨자 D는 부족불지급제도(Defficiency Payment)를 의미한다. 식 (12)와 식 (6)을 비교해 보면 분산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족불지급제도는 국제가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변동부과금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동부과금제도(Variable Levy System)는 EC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경보호 조치의 하나이다. 변동부과금제도에 의해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가격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가격은 국제가격과는 연관이 없게 된다. 즉, $P_p = P_c = P^* \neq P_w$ 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식 (1) ~ (4)에 대입하여 국제가격을 구하면 식 (13)과 같고, 식 (13)에 대한 분산

을 구하면 식 (14)와 같다.

$$(13) \quad P_w = g + h(a - bP^* - c - dP_{t-1}^* - \varepsilon) + \theta$$

$$(14) \quad \text{Var}(P_w)_v = h^2 \sigma_\varepsilon^2 + \sigma_\theta^2$$

식 (14)의 아래첨자 V는 변동부과금을 의미한다. 식 (14)와 식 (6)을 비교할 때 식 (14)의 분산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변동부과금 제도는 자유무역과 비교할 때 국제가격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임을 알 수 있다.

⑥ 국제가격 변동에 대비한 국내가격 안정화정책

국제가격 변동을 국내시장에 반영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EC와 같이 변동부과금제도를 도입하면 국제가격 변동이 전혀 국내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국제가격 변동을 부분적으로만 국내가격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즉, 다음과 같은 식을 가정하자.

$P_p = (1 - \delta_p)P_w + \delta_p P_{p, t-1}$, $P_c = (1 - \delta_c)P_w + \delta_c P_{c, t-1}$ 이라고 하자. 여기서 δ_p 와 δ_c 는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고 하면 국내가격은 국제가격 변동에 일정률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식 (1) ~ (4)에 대입하여 국제가격을 구하면 식 (15)와 같다.

$$(15) \quad P_w = \frac{g + h[a - b\delta_c P_{c, t-1} - c - d(1 - \delta_p) P_{w, t-1} - d\delta_c P_{c, t-1} - \varepsilon] + \theta}{1 + bh(1 - \delta_c)}$$

식 (15)의 분산은 식 (16)과 같다.

$$(16) \quad \text{Var}(P_w)_p = \frac{h^2 \sigma_\varepsilon^2 + \sigma_\theta^2}{\{1 - bh(1 - \delta_c)\}^2}$$

식 (16)의 아래첨자 P는 가격안정화정책(Price Stability Policy)를 의미한다. 즉,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국제가격 변동을 일정부분만 흡

수하고자 하는 정책은 자유무역의 경우보다 국제가격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 이는 자국의 가격 불안정성을 국제시장에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7 저장정책

저장정책 (Stock Policy)은 일반적으로 가격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를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증명해 보기로 하자. 먼저 저장량이 무작위 요소들의 함수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된다고 하자. 즉, $\Delta S = \beta_s \epsilon - \beta_p \theta$ 이다. 이는 국내 생산량의 변동과 저장량은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국제가격 변동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가정하에서 세워진 식이다. 저장량은 수요량과 같이 취급될 수 있으므로 식 (4)는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될 수 있다.

$$(4)' \quad T = Qc + \Delta S - \theta p$$

식 (4)'에 의해 국제가격을 구하면 식 (17)과 같다.

$$(17) \quad P_w = \frac{g + h(a - c - dP_w, t-1 - \epsilon + \beta_s \epsilon - \beta_p \theta) + \theta}{1 + bh}$$

식 (17)의 분산을 구하면 식 (18)과 같다.

$$(18) \quad \text{Var}(P_w)_{ST} = \frac{h^2(\beta_s - 1)^2 \sigma_\epsilon^2 + (1 - h\beta_p)^2 \sigma_\theta^2}{(1 + bh)^2}$$

식 (18)의 아래첨자 ST는 저장정책을 의미한다. 만일 국내생산과 국제가격 변동을 완전히 흡수할 정도의 저장정책을 쓴다면 $\beta_s = 1$, $\beta_p = 1$ 이 되고, $\text{Var}(P_w)_{ST} = 0$ 가 된다. 국내생산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저장정책을 채택한다면,

$$\text{Var}(P_w)_{ST} = \frac{\sigma_\theta^2}{(1 + bh)^2} \text{이다.}$$

반면 국제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면,

$$\text{Var}(P_w)_{ST} = \frac{h^2 \sigma_\epsilon^2 + (1-h)^2 \sigma_\theta^2}{(1+bh)^2}$$

가 된다. 이와 같이 저장정책이 국제가격과 국내생산 변동에 대해 무관하지 않을 경우 ($P_s \neq 0$, $\beta p \neq 0$)에 저장정책은 국제가격 안정성에 기여하게 된다.

㉔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 (Import Quota)는 수입을 규제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수입국의 무역정책의 하나이다. 수입할당제는 관세제도와는 달리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즉, $P_c = P_p \neq P_w$ 이다. 따라서 국제가격은 식 (19)와 같다.

$$(19) \quad P_w = g + h(a - bP_c - dP_{p, t-1} - \epsilon) + \theta$$

식 (19)에 대한 분산은 식 (20)과 같다.

$$(20) \quad \text{Var}(P_w)_Q = h^2 \sigma_\epsilon^2 + \sigma_\theta^2$$

식 (20)에서 아래첨자 Q는 수입할당제 (Quota System)를 의미한다. 식 (20)의 분산과 식 (6)의 분산을 비교해 보면 수입할당제하에서의 국제가격의 분산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수입할당제는 국제가격 안정성을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 볼 때 자유무역보다 국제시장의 가격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은 종가세와 저장정책 등을 들 수 있으며, 가격 안정성을 저해하는 정책은 변동부과금제도, 국내가격 변동을 국제가격 변동보다 작게하는 각종 무역(가격)정책, 수입할당제 등의 수량규제가 있다. 반면 종량세와 부족불지급제도 등은 자유무역과 비교하여 국제가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이다. 따라서 UR 협상 타결에

따른 각종 무역장벽과 국내정책의 자유화와 국제가격 안정성과의 관계는 안정성을 저해하는 정책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자유화할 때 발생하는 상반된 영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가격 안정성의 증가 또는 감소를 일률적으로 논하기 힘들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국제가격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저장정책은 UR 협상 타결 이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제가격 안정성을 저해하는 각종 비관세조치의 관세화와 변동 부과금제도의 폐지 또는 관세화는 가격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R 협상 타결 이후 국내외 정책의 자유화는 국제가격 안정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Anderson과 Tyers(1990)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가 무역을 자유화하면 국제가격 불안정성이 2/3 정도 감소하며, OECD 국가들만의 자유화에 의해서도 국제가격 불안정성은 1/3 정도 감소할 수 있다(표 3-4).

표 3-4 무역자유화와 국제가격 안정성의 변화

시나리오	밀	사료작물	쌀	쇠고기	가타육류	유제품	설탕	평균
자유화 이전의 변동계수	0.58	0.53	0.38	0.24	0.08	0.25	0.36	0.34
자유화 이후의 변동계수								
EC 자유화	0.39	0.45	0.32	0.15	0.08	0.13	0.28	0.26
US 자유화	0.60	0.64	0.36	0.17	0.10	0.27	0.31	0.35
OECD 자유화	0.33	0.47	0.28	0.07	0.08	0.11	0.25	0.23
OECD+개도국 자유화	0.15	0.23	0.09	0.04	0.05	0.06	0.07	0.11

자료: Anderson and Tyers, 1990.

제 4 장

EC 통합과 EC 농업의 변화

1. EC 통합의 배경과 주요 내용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의 근원은 1952년 파리조약을 근거로 발족한 「석유·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이다. 그러나 ECSC는 성격상 다분히 전쟁 재발방지라는 정치적인 면이 강하며, 대상도 협소하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제통합의 과정은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발족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로부터 그 출발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그 뒤 EEC는 ECSC와 역시 1957년에 발족한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와 단일집행기구로 통합되어 유럽공동체(EC)로 확대 발전되기에 이르렀다. 당초 회원국은 6개국(프랑스·서독·이탈리·베네룩스 3국)으로 발족한 후 1973년 영국·아일랜드·덴마크,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포르투갈이 각각 가입하여 현재 회원국은 모두 12개국이다.

이와 같은 EC가 1992년을 목표로 국경 없는 단일시장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통합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가. EC 통합의 배경

EC 통합의 역사를 경제통합의 질적인 측면에서 시대적으로 구분해보면 ① 관세동맹의 수립기(1957~68) ② 공동시장의 양적 팽창 및 질적 담보기(1969~85) ③ 경제통합의 본격 추진(1985~)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미 EC는 관세동맹의 수립기인 1962년 1월까지 역내 수입쿼타는 완전 폐지하고 역내 관세를 1968년까지 폐지하여 명실상부한 경제통합체를¹⁾ 만들었다.

공동시장의 양적 팽창 및 질적 담보기에는 EC 회원국이 2차례에 걸쳐 확대되어 10개국이 되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과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양연안국가(ACP)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EFTA와는 1970~71년 동안 자유무역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하여 1977년 7월까지 양측간의 관세를 철폐하였다. 또한 농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도 수입수량제한을 철폐하였다. ACP 국가들과는 1975년 로메협정(Lomé Convention)을 통하여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하여 각 회원국들이 여러 가지 비관세장벽을 높여 공동시장으로서의 EC가 담보기 내지 후퇴기에 머물렀다.

1) 여기에서 경제통합체란 “2개 이상의 국가가 협정 또는 기타의 조약에 의해 동맹을 결성, 동맹국 상호간에는 상품·노동·자본 및 기타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한편 재정·금융·통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상호협조를 도모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한편 발라사(Bela Balassa)는 경제 통합단계를 ① 자유무역지대 ②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④ 경제동맹 ⑤ 완전경제통합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Balassa, 1969). 현재 EC는 관세동맹기를 거쳐 공동시장의 단계에서 1992 EC 통합으로 경제동맹체 형성을 향해 통합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유럽경제가 다소간의 호전기미를 보이면서 경제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회원국들은 미국·일본 등 타선진국과의 경쟁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시장구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이 팽배하게 된 배경은 많은 전문가들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 유럽경제가 다른 경쟁상대국(미국·일본·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빈약한 발전을 하게 된 원인을 EC시장 및 산업의 경직성에서 찾은 데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역내 시장의 신축성을 증가시키고 모든 상품 및 서비스, 생산요소의 역내 이동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아래 EC 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구성을 위한 300여 개에 달하는 내용을 담은 백서(White Paper)를 발간하였다. 1987년에는 유럽통합의 입법적 조치로서 유럽단일의정서(Single European Act)가 발효되었다.²⁾ 현재 추진중인 1992 EC 통합은 이와 같은 백서와 유럽단일의정서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2) 유럽단일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도입하여 EC 통합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첫째, 단일시장 완성 목표시일로서 1992. 12. 31를 명시하고 있다. 둘째, 종래 만장일치제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에서 가중다수제(qualified majority)를 도입하여 법령 제정을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협조절차(Cooperation Procedure)를 도입하여 유럽의회의 권한을 상대적으로 강화하였다.

나. EC 통합의 주요 내용

‘역내 시장의 완성’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이란 제목이 붙여진 백서에는 역내에서 상품, 노동,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① 물리적 장벽의 제거 ② 기술적 장벽의 제거 ③ 재정적 장벽의 제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주요 장벽의 제거와 1992 EC 통합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경제통화동맹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³⁾

① 물리적 장벽의 제거

국경에서의 물리적 장벽이란 역내 국경을 통과하는 재화나 개인에 대한 국경통제의 형태로 존재하는 장벽을 의미한다. 예컨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에서 사람 및 상품에 대한 검사·통제가 이에 속한다. 이같은 장벽은 EC가 단일시장권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주민이 EC는 하나가 아닌 국별로 분할되어 있음을 강하게 느끼게 한다. 물리적 장벽 제거를 위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람의 국경 통과에 따른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① 개인 면세품 소지범위를 확대하고 ② 역내 주민에 대한 국경 통제의 완화를 위해 공동체 여권(European-model passport)을 발급, 이용하고 출입국시 모두 받던 출입국검사를 출국시에만 실시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국경 통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는 공동세관의 도입, 입출국 관련 서류의 간소화, 그리고 동식물 검역기준의 조화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역내에서 공중위생상의 이유로 각국별로 엄격

3) 이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을 참조하였음.

(Brealey and Quigley, 1989), (U. S Department of Commerce, 1989), (Christophe *et al.*, 1989), (민충기, 1990), (박성근, 1989), (전국경제인연합회, 1989), (도용환외, 1989), (岸上慎太郎, 1989).

하게 실시되어 농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저해한 동식물 검역기준을 공동체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EC 역내는 물론 역외국의 대 EC 농산물 무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② 기술적 장벽의 제거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이란 회원국들이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 운용하는 각종 법규와 산업표준 등의 형태로 남아 있는 장벽을 의미한다. 물리적 장벽이 가시적인 장벽이라 한다면 기술적 장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장벽이다.

기술적 장벽 제거를 위한 조치들로는 ① 상품 이동의 자유화 ② 공공구매시장의 개방 ③ 노동 및 전문 직업인 이동의 자유화 ④ 서비스 공동시장의 실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농업 및 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조치는 상품 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조치이다.

상품 이동의 자유화 실현을 위해 제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표준제도의 조화이다. 1985년 이전까지 EC는 상품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국내 법규와 각종 표준제도를 통일시켜 유럽표준제도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성공을 보지 못했다. 그 대신 1985년부터 접근방식을 공동기준의 제정에서 관련기준의 회원국간 상호인정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로서 각종 표준규격, 표시, 함량, 포장에 관한 법규들이 조화(harmonize)될 경우 역내의 무역은 크게 촉진될 전망이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③ 재정적 장벽의 제거

재정적 장벽(fiscal barrier)이란 회원국간 상이한 조세구조에 의해 기인되는 장벽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와 물품세(Excise Tax)의 조화가 있다.

회원국별 부가가치세의 조화의 범위는 경감세율은 4~9% 범위, 표준세율은 14~20%로 제안되고 있다. 여기에서 경감세율이란 알콜음료를 제외한 식료품, 난방 및 광열을 위한 에너지 공급, 수자원 공급, 의약품 등에 부과되는 저세율을 의미한다.

물품세는 주로 담배, 알콜음료의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회원국간 물품세 구조를 조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농산물의 생산 및 무역과 특히 관련을 갖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조화이다.

④ 경제·통화동맹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의 추진 목적은 EC 단일시장 완성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각 회원국간 고정환율제 또는 단일통화를 창출하는데 있다. 1990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다. 제1단계는 전회원국 통화를 유럽 통화체계(European Monetary System: EMS)의 환안정 메카니즘(Exchange Rate Mechanism: ERM)에 가입시키고 회원국간 경제·통화정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1993년말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제2단계는 1994년부터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는 유럽중앙은행(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 ESCB)을 설립하고 공동경제통화정책을 추진한다. 제3단계에서는 유럽 단일통화를 창조하고 유럽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EC는 경제통화동맹을 위한 제1단계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영국만이 적극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회원국은 의견의 차이가 다소 없지는 않지만 경제·통화동맹 추진이라는 원칙에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 적어도 2단계까지는 큰 무리없이 진전될 전망이나 유럽중앙은행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유럽 단일통화의 제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991년 3월말 현재 EC 통합의 진척도는 약 68%이다. 총282개의 통합지침중 192개에 대한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금융서비스, 자본, 이동의 자유화, 기술조화 등이다. 반면 회원국의 공중위생,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입법상 만장일치제가 요구되는 국경 통제의 철폐, 동식물 검역 분야는 진척이 부진한 실정이다.

2. EC 통합과 EC 경제

EC는 인구면에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이며, 부가가치 생산면에서 볼 때에도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EC의 인적 자원은 3억 2천만을 넘어 미국의 약 1.5배, 일본의 약 3배에 달한다. 부가가치 생산액은 1985년을 기준으로 약 3조 2천억 ECU이며, 이는 일본의 1.7배, 미국의 60%에 달하는 것이다.

표 4-1 EC의 산업별 부가가치, 1985

단위: 10억 ECU

산업별	EC 12국	일본	미국
농림수산업	92 (2.9)	55(3.0)	134(2.6)
에너지산업	215 (6.8)	70(3.9)	281(5.4)
제조업	825 (26.1)	505(27.8)	1,024(19.5)
건축업	180 (5.7)	128(7.0)	245(4.7)
서비스	1,850 (58.5)	1,060(58.3)	3,563(67.9)
부가가치합	3,162(100.0)	1,817(100.0)	5,246(100.0)

() 는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Emerson, M. 외, 1988.

EC의 산업구조는 〈표 4-1〉과 같다. 서비스분야가 부가가치 생산액의 약 60%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분야가 26%를 점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은 총부가가치 생산액의 2.9%에 불과하다. EC 통합은 이러한 EC의 산업구조 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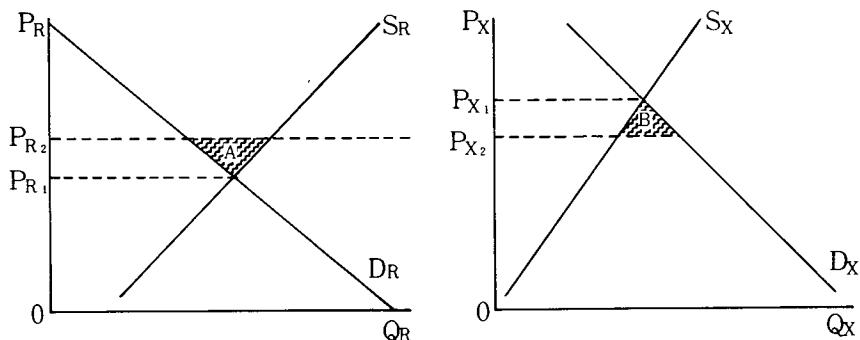
EC의 선진화된 산업구조와 경제적 잠재력은 EC 경제의 완전통합이 이루어진 후에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현재 EC 역내에는 국가간에 각종 기술적·물리적·재정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에 의해 EC의 경제적 잠재력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EC는 1992년을 목표로 완전한 경제통합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EC의 경제통합은 EC 역내는 물론 역외국과 국제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 부문별 예상효과

1992 EC 통합은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함을 의미한다. 장벽의 제거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첫째, 이들 장벽이 존재함에 따른 비용을 측정하거나 둘째, 장벽제거에 따른 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에 의해 계측될 수 있다. 이들 양자의 측정치는 동일할 것이다. 교역에 대한 장벽 제거는 잠재적으로 생산성 향상, 실질소득 증가, 인플레이션 억제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국내가격의 하락은 소비자잉여를 증가시키고, 소비자에게 폭 넓은 소비생활을 영위케 하여 소비의 질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생산자는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자잉여의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교역의 자유화는 그밖에도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고, 경쟁을 유도하며, 비교우위에 의한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시킨다. 보이지 않는 비효율의 원인들(X-inefficiency)의 제거는 학자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효율 제고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그림 4-1〉은 EC 역내의 어느 국가(X국)가 무역장벽을 통해 역

그림 4-1 무역 장벽 제거의 효과



내의 다른 국가들과 가격차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EC 역내 국가와 X국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순화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림 4-1〉에서 S는 공급을, D는 수요를, P는 가격을, Q는 물량을 나타낸다. 아래첨자 X는 X국을, R은 그밖의 역내 국가(Rest of the EC Countries)를 나타낸다. X국은 수입규제를 통하여 국내가격을 P_{X1} 에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타 역내 국가들의 가격은 P_{R1} 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X국이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수입을 자유화하면 역내의 가격은 P_2 에서 동일하게 되며, X국은 생산자잉여의 감소를 증가하는 소비자잉여의 증가로 삼각형 B만큼의 잉여가 발생한다. 반면 X국을 제외한 EC 국가들은 생산자잉여의 증가로 삼각형 A만큼의 잉여가 발생한다. 따라서 EC 전체의 생산자(소비자)잉여의 증가는 A와 B가 된다.

〈그림 4-2〉는 독점기업이 경쟁적 기업으로 전환될 경우의 사회적 잉여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다. 독점기업은 독점력의 행사로 경쟁가격 P_1 보다 높은 P_0 에서 OQ_0 만큼을 공급한다. 그러나 경쟁상태하에서는

그림 4-2 독점기업과 잉여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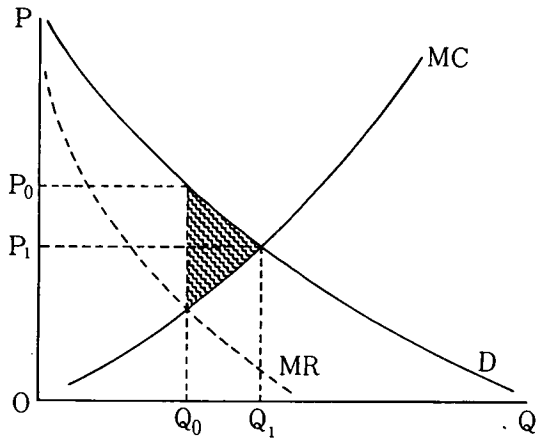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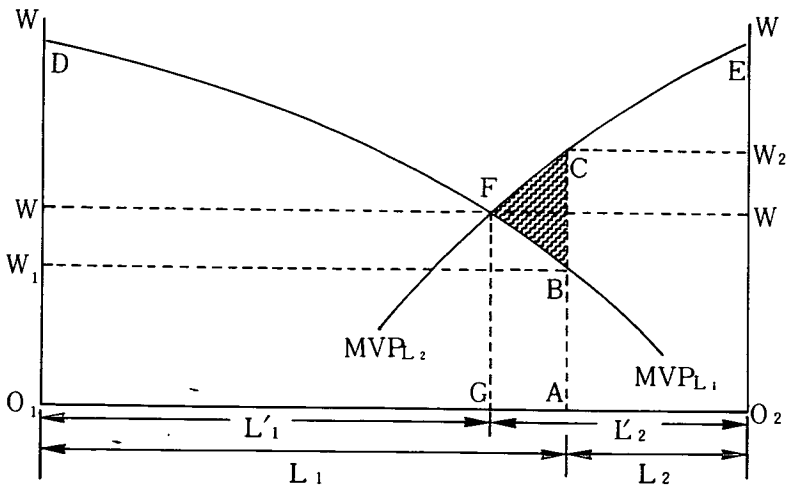


그림 4-3 노동력의 이동과 잉여의 변화



P_1 이라는 낮은 가격하에서도 OQ_1 만큼을 공급하게 되며, 이 때 사회적으로는 빗금친 부분만큼의 잉여가 발생하게 된다.

EC 통합은 EC 기업에게 규모의 경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규모의 경제로 EC 기업들의 생산비 절감을 가져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며, 자원의 공동이용(자유로운 이동)으로 경제성장은 보다 촉진될 것이다. 〈그림 4-3〉은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생산요소는 토지와 노동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림에서 수평축은 양국(A국과 B국이라 하자)의 노동력의 총량을 나타낸다. A국의 노동력은 L_1 , B국의 노동력은 L_2 로 표기하였다. 수직축은 임금(W) 또는 노동력의 한계가치생산성(MVP)을 나타낸다. A국의 노동력이 B국보다 풍부하며, 임금도 B국보다 저렴한 W_1 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하자. B국의 임금은 W_2 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각국은 노동의 한계가치생산성과 임금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노동력을 고용하며, A국은 L_1 , B국은 L_2 를 고용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은 A국과 B국의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다는 가정 때문이다. 이 때 A국의 노동에 대한 보수는 $W_1 \times L_1$ 으로 〈그림 4-3〉에서 직사각형 W_1BAO_1 이 된다. 자본에 대한 보수는 삼각형 DBW_1 이 된다. B국의 노동에 대한 보수는 $W_2 \times L_2$ 로 〈그림 4-3〉에서 직사각형 W_2CAO_2 이며, 자본에 대한 보수는 ECW_2 이다.

A국과 B국의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양국의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임금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며, 임금은 W 에서 결정되고 A국은 L_1' 만큼의 노동력을, B국은 L_2' 만큼의 노동력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이 때 A국의 노동에 대한 보수는 $W \times L_1'$ 으로 〈그림 4-3〉에서 직사각형 $WFGO_1$ 이며, 자본에 대한 보수는 DFW 가 된다. B국의 노동에 대한 보수는 $W \times L_2'$ 으로 〈그림 4-3〉에서 직사각형 $WFGO_2$ 이며, 자본에 대한 보수는 EFW 가 된다. 결국 양국간의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자본과 노동에 대한 보수의 합은 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 비해 FBC만큼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은 잠재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은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성장요인들을 실제로 추정한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이는 Emerson 외(1988)의 EC 통합에 관한 설문조사와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① 식품 가공업

EC의 식품 가공산업은 EC 경제에서 부가가치 총생산의 약 4%에 달한다. 식품 가공업에 존재하고 있는 무역장벽은 주로 식품 첨가물에 관한 규정, 내용물과 이에 대한 표기법, 포장 및 상표 부착, 세율, 수입규제 등에 관한 각국의 서로 다른 규정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장벽의 제거는 보다 저렴한 원료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포장과 상표 부착에 대한 비용 절감, 통관에 있어서의 행정비용 감소

표 4-2 식품 가공업에 대한 장벽제거 효과

단위: 100만ECU

장벽	직접효과	간접효과	계
순도에 관한 규정			
맥 주	15~20	90~215	105~235
파스타	35~100	M	35~100
아스파타임	0~10	S	0~10
초콜렛	190~235	S	190~235
아이스크림	75~100	M	75~100
사카린	20~45	S	20~45
프라스틱 용기	15~50	M	15~50
상표 부착	5이하	S	5이하
기 타	0~207	S	0~207
계	350~775		440~975

M = 어느정도 효과 있음, S = 약간의 효과 있음.

자료: Emerson 외, 1988.

등으로 약 5~10억ECU(연간)의 비용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식품 가공업의 연간 부가가치 생산액의 약 2~3%에 달하는 것이다. 분야별 비용 감소액 추정결과는 <표 4-2>와 같다.

② 제약업

제약업은 EC의 총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이나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심한 산업이다. 제약업에 관한 장벽으로는 회원국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과 제품 등록에 따른 지연 등이다. 따라서 중복된 등록절차의 간소화로 연간 약 1억 6천만~2억 6천만 ECU를 절약할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로 약 1억~2억 7천만 ECU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각국의 정부규제와 무역장벽에 의한 가격차별을 극복하여 가격의 단일화를 이룩할 경우 7억 ECU 정도의 소비자잉여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자동차산업

EC의 자동차 시장은 제조업의 6~7%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거의 절반 정도가 독일의 자동차산업이 차지하고 있다. 전체 생산량의 약 30%가 EC 회원국 및 비회원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1986년도의 비회원국으로의 수출은 약 8%이었다.

자동차산업에 존재하는 무역장벽은 주로 서로 다른 기술적 요구수준, 통관에 있어서의 지연과 행정비용, 부가가치세제의 차이 등이다. 자동차산업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무역장벽의 제거는 자동차산업의 기술개발, 구조조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생산비 절감을 가져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절감은 차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대형차나 특수차의 경우 2.9~3.4% 정도, 소형차와 작은 중형차는 2.7~2.9%, 큰 중형차는 1.2% 정도로 추정된다(Emerson 외 1988).

EC의 자동차산업 전체에 대한 비용 절감효과는 약 5% 또는 26억 ECU에 달할 것이며,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자동차산업은 평균보다 높은 약 5.5%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비용 절감효과가 EC평균보다 낮게 나타난 곳은 영국과 독일이다.

[4] 섬유업

섬유 및 의류업에 대한 세계적인 구조조정으로 EC의 섬유와 의류업의 성장은 1970년대 중반을 고비로 정지되었으며, 그 이후 계속 부(-)의 성장을 지속해 왔다. 1975~85 기간중의 고용 감소는 의류업에서 40%, 섬유업에서 38%에 달했다. 그러나 섬유 및 의류업은 연간 55억ECU의 부가가치 생산액과 250만명의 고용인원을 가진 산업으로 남아 있다. 이는 EC 전체의 제조업부문 부가가치 생산액의 6%, 고용의 10%에 달하는 것이다.

EC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의 섬유업이 가장 큰 감소를 보여왔으며, 의류업에 있어서는 독일이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의류 수출은 이탈리아가 주도하고 있는 반면 섬유 수출은 독일이 주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섬유와 의류에 대한 EC 역내 무역의 심각한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도 몇몇 업체에서는 행정적 장벽, 통관 지연, 상표 부착 의무, 생산지 표시, 부가가치 세율의 차이 등에 무역의 애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섬유 및 의류업에 대한 무역장벽 제거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에 있어서 직접적인 비용 절감효과는 0.1~0.3% 정도로 추정된다. 간접적인 비용 절감효과도 0.3~0.6%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

⑤ 통신장비산업

EC의 통신장비업은 1986년 현재 약 175억ECU에 달하며, 이는 EC 총GDP의 0.5%이다. 통신시설업은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이룩하고 있는 산업이다. 최근 디지털방식의 도입으로 통신장비산업은 더욱 크게 성장하고 있다.

통신업은 전통적인 독과점업이며, EC 회원국간에 개방이 된다해도 규모의 경제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C에 존재하고 있는 통신장비업에 대한 무역장벽으로는 상이한 기술규격, 정부나 공공기업의 구매정책, 제품에 대한 면허제와 그에 따른 시장간섭, 부품 사용 규제 등이다.

EC의 통신장비업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장벽의 제거(표준화)로 얻어지는 이익은 8~11억ECU로 추정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부조달(구매)시장의 개방으로 통신장비업은 37억ECU 정도의 이익이 예상된다.

⑥ 에너지 산업

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전력 등의 에너지산업은 EC의 총 국민생산액의 8%인 5,100억ECU에 이르는 거대한 산업이다. 일정한 배분망(조직)에 의해 이용되는 전력이나 천연가스는 독과점적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그밖의 에너지도 독점력에 있어서 전력이나 천연가스보다는 약하나 독과점적 성격이 강하다. 가격통제나 수입허가제가 행하여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그밖의 무역장벽으로는 석유 화학제품의 함량에 관한 상이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유황, 납, 점성(Viscosity) 등의 함량이나 기술적 특성을 각 회원국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유회사들은 수출을 위해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석유제품에 관한 교역자유화는 5억ECU 정도의 비용을 감축시켜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석탄산업에 지불되고 있는 보조금은 연간 30억 ECU를 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도 교역자유화로 어느 정도 감축이 가능할 것이다. 전력과 천연가스의 시장개방으로도 80억ECU 정도가 절약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7] 서비스분야

EC의 금융산업은 총부가가치 생산액의 6.5%, 고용의 3%를 점하는 산업으로 금융분야의 통합(개방)은 금융산업은 물론 타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회원국 내에서의 은행, 보험기관 설립은 자유로운 편이나 국별로 설립에 따른 비용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예금 가입, 보험 가입 등에 대한 타국에서의 직접적인 권유행위가 자유롭지 못한 회원국들이 있다. 주식과 채권시장도 거의 그 개방의 방향이 정립되어 있으나 금융시장의 개방은 외환의 통제를 어느 정도나 자유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금융시장의 통합으로 금융서비스의 비용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시장통합으로 가장 큰 비용 감소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국가는 스페인이며, 다음 그룹으로는 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독일 등이다. 가장 작은 비용 감소를 보일 곳은 룩셈부르크와 영국으로 추정되고 있다. EC 8개국의 평균 금융시장의 가격 하락은 약 10%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비용 절감은 200억 ECU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GDP의 약 0.7%).

비즈니스 서비스(Business Service)분야는 경영, 광고, 컴퓨터 서비스, 회계, 법률(상담),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EC의 총부가가치 생산액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분야에 대한 장벽은 주로 기술규격, 자격의 인식, 정부조달,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 광고법 및 광고시간 할당, 자격증 발급과 관

런된 것이다. 비즈니스 서비스에 관련된 장벽제거로 3% 정도의 평균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EC 전체에 약 35억 ECU의 사회적 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접적인 비용 감소효과보다 간접적인 효과 즉, 가격 인하로 인한 수요 창출효과와 EC 경제활동의 활력화는 더욱 큰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로운송업에 대해서도 도로안전규칙, 물량규제(허가증 발급을 통한), 가격통제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저해요인으로 인한 빈 수송차량 이동만으로도 12억 ECU 정도의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운송의 경우는 거의가 독과점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EC 회원국 가운데 동일노선에 2개 이상의 항공사가 동시에 운행하고 있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장가격은 경쟁적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북미의 항공사들에 비해 EC의 항공사들의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통신서비스에 있어서는 전신망 이용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와 장거리 전화 사용에 있어 국경을 통과할 경우 국내 장거리 전화사용보다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관세, 장비 구매에 대한 규제, 비경쟁적 요인 등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 이들 장벽의 제거로 기대되는 효과는 약 60억 ECU에 달한다.

㉔ 농업분야

농업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벽 제거는 주로 동식물 검역과 위생 규정, 그리고 공동농업정책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농업에 대한 공동보조가격제도이다. 동식물 검역과 위생규정에 대한 개정(조화)은 무역장벽 제거는 물론 동식물에 대한 질병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장벽 제거 문제는 공동보조가격의 개정이다. 현재 EC의 농산물 평균가격보다 가장 높은 지지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은 독일과 네덜란드이며,

평균가격보다 가장 낮은 곳은 영국과 그리스이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C의 평균가격 수준에 있다. 이와 같은 회원국간에 서로 다른 농산물 가격유지를 위해서는 관세와 보조금이 필수적이다.

OECD(1987)의 연구에 의하면 1979~81 기간중의 EC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 보조 상당액(PSE)은 총생산액의 43%에 달한다<표 4-3>. 이러한 공동 지지가격을 10%만 감축하여도 약 68억ECU의 사회적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나. 종합적 효과

이상에서 우리는 부문별 EC 통합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다음은 이러한 부문별, 정책별 효과를 종합한 결과로 역시 Emerson의 (1988)를 요약한 것이다. <표 4-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무역장벽의 해소와 시장통합은 직간접적으로 EC 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표 4-3 EC의 농산물 지지가격 10% 감축효과

단위: 10억 ECU

품목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납세자 잉여	전 체
곡물	-2.5	0.8	1.3	-0.4
우유	-3.3	3.7	2.4	2.8
육류 및 계란	-3.5	4.3	1.3	2.1
설탕	-0.7	0.5	0.2	0
계	-10.7	9.6	7.9	6.8

* EC 10개국 기준.

자료: Thompson, 1985.

EC 7개국의 장벽 제거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는 미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650~800억 ECU이다. 이는 EC GDP의 2.0~2.4%에 달한다. 장벽 제거로 인한 간접효과 또는 규모의 경제와 X-efficiency는 460억 ECU (GDP의 1.6%)로 추정된다. EC 12개국으로 확대하여 보면 전체적인 효과는 1,730~2,570억 ECU에 달하는 것이다.

거시경제모형에 의한 분석결과는 <표 4-5>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다. EC 통합에 의한 거시경제적 효과는 GDP의 4.5%에 상응하는 잉여 발생, 소비자 물가의 6.1% 하락, 180만명의 고용 증대효과로 요약된다.

결국 EC 통합은 EC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 성장률 4.5 ~ 6.0% 증가, 소비자 물가 6% 하락, 고용 증대, 국제수지 균형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4-4 부분 균형모형에 의한 EC 통합효과(EC 7개국)

통합효과	절대액(10억 ECU)	GDP에 대한 비율(%)
무역장벽 제거	8 ~ 9	0.2 ~ 0.3
기타 장벽 제거	57 ~ 71	2.0 ~ 2.4
규모의 경제	60 ~ 61	2.0 ~ 2.1
X-efficiency 등	46	1.6
계	171 ~ 187	5.8 ~ 6.4

자료: Emerson외, 1988.

표 4-5 거시경제모형에 의한 EC 통합효과

분 야	무역장벽	정부조달	금융	생산증대	계
GDP에 대한 비율(%)	0.4	0.5	1.5	2.1	4.5
소비자물가(%)	-1.0	-1.4	-1.4	-2.3	-6.1
고용(1,000명)	200	350	400	850	1,800
국제수지(GDP에 대한 비율,%)	0.2	0.1	0.3	0.4	1.0

자료: Emerson외, 1988.

3. EC 통합과 EC 농업

1992 EC 통합은 일반경제분야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경제가 영향을 받아 그것이 농업에 충격을 주는 동시에 직접적으로도 공동농업정책의 운용에 영향을 주어 EC의 농산물 생산·소비·무역이 변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EC 농업의 개요

[1] 농업구조

EC 경제에서 농업의 비중은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낮은 편이다. GDP상으로 농업은 3%에 불과하고, 취업인구중 비중은 7%이다.⁴⁾ 국가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인 서독·프랑스·영국 등에서 농업의 비중은 그리스나 아일랜드·포르투갈보다 훨씬 낮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EC에서 농업은 균형된 사회경제구조 유지와 건강한 자연환경 보존에 기본역할이 여전히 크게 강조되고 있음을 본다 (Commission of the EC, 1989).

표 4-6 EC 경제에서 농업의 비중

구 분	GDP상 비 중	총고정자본형성 에서의 비중	전체취업자수 에서의 비중	전체수출액중 비 중	전체수입액중 비 중
연도	1988	1988	1989	1989	1989
E C 12	3.0	3.4	7.0	8.7	12.9
벨 지 움	2.2	1.9	2.8	4.7	11.0
덴 마 크	3.8	3.5	6.0	25.0	18.1
서 독	1.6	2.2	3.9	3.9	10.6
그 리 스	16.4	6.6	26.6 ¹⁾	26.0	16.2
스 페 인	5.1	3.9	13.0	16.2	18.8
프 랑 스	3.2	2.4	6.4	12.7	12.0
아 일 랜 드	10.9	11.1	15.1	26.4	9.7
이 탈 리 아	4.1	7.5	9.3	5.6	15.2
룩셈부르크	2.3	3.1	3.4	4.7	11.0
네 덜 란 드	4.2	5.4	4.7	23.9	15.1
포 루 투 갈	5.2	3.5	18.9	12.9	28.6
영 국	1.4	1.2	2.2	6.5	11.1

1) 1988.

자료: (Commision of the EC, 1991).

전체 수출입에서 농림수산물의 비중은 1989년의 경우 각각 8.7%, 12.9%로서 수입 비중이 약간 높다. 특히, 아일랜드(26.4%), 그리스(26%), 덴마크(25%), 네덜란드(24%) 등은 전체 수출중 농림수산물의 비중은 약 20%를 상회하고 있다.

EC 역내의 총면적은 약 2억 2,583만ha이다 . 이 중 53.4%인 1억 2,732만ha가 농경지이다<표 4-7>. 농경지의 절대면적상으로 보면 스페인·영국·이탈리아 등이 넓은 농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국민 1인당 면적을 보면 아일랜드만이 1ha를 초과할 뿐 나머지 국가들은 그 이하이다.

EC 평균 농가호당 경지면적은 13.2ha로서 우리 나라보다는 넓지만 호주나 미국 등에 비해서는 극히 소규모이다. 회원국중 영국은 농가호당 경지면적이 68.9ha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반면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은 10ha 이하이다.⁵⁾

생산액면에서 볼 때 EC는 우유(18.5%), 쇠고기(13.5%), 돼지고기(10.7%), 신선채소(7.8%)의 생산 비중이 높다<표 4-8>. 아일랜드·덴마크 등은 축산 비중이 높은 반면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국가들의 과채류의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맥 생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EC 전체 농업생산에서 개별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프랑스(26.4%)와 이탈리아(20.9%)가 EC 농업 생산의 약 47%를 점하고 있다<표 4-9>. 특히, 프랑스는 옥수수(59.4%), 포도주(56.9%), 종자(56.4%), 신선채소(49.0%)의 역내 생산중 50%내외를 점하고 있다. 서독은 역내 호밀과 호프 생산의 62.5%, 82.5%를 생산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역내 미곡 생산의 78.9%, 올리브유의 63.2%, 앞담배의 46.5%, 신선과채류의 40%를 생산하고 있다.

5) 남부 유럽제국, 즉 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에서 전체농가의 2/3가 5ha 미만의 소농이다. 이러한 농업구조형태를 일컬어 '이탈리아형 농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中野一新, 1990). 이러한 이유로 남부 유럽제국의 농업이 북구보다 경쟁력면에서 뒤진다.

표 4-7 EC 각국의 농업경영구조, 1987

구분	국토면적 ¹⁾		인구인당 경지면적	평 균 경 영 규 모	경영규모별 농가 분포 ³⁾				
	1,000ha	중농경지 (면적)			5ha이하	5~20	20~50	50ha이상	소 계
단 위	1,000ha	1,000ha	ha	ha	%	%	%	%	%
EC전체	225,827	127,320	0.39	13.2	49.2	30.3	13.7	6.8	100.0
벨지움	3,052	1,363	0.14	17.3	27.7	42.6	23.9	5.8	100.0
덴마크	4,309	2,809 ²⁾	0.57	32.5	1.7	41.6	39.4	17.2	99.9
서독	24,869	11,885	0.19	17.6	29.4	39.7	24.8	6.1	100.0
그리스	13,196	5,741 ²⁾	0.57	5.3	69.4	27.6	2.5	0.5	100.0
스페인	50,477	27,110 ²⁾	0.70	16.0	53.3	31.3	9.4	6.0	100.0
프랑스	54,909	30,710	0.54	30.7	18.2	30.8	32.8	18.1	99.9
아일랜드	7,028	5,697 ²⁾	1.62	22.7	16.1	44.4	30.5	9.0	100.0
이탈리아	30,128	17,297 ²⁾	0.30	7.7	67.9	25.6	4.6	1.9	100.0
룩셈부르크	259	126	0.33	33.2	18.9	22.3	32.5	26.2	99.9
네덜란드	3,980	2,019 ²⁾	0.13	17.2	24.9	43.4	27.3	4.4	100.0
포르투갈	9,207	4,532 ²⁾	0.44	8.3	72.5	22.2	3.4	1.9	100.0
영국	24,414	18,031 ²⁾	0.32	68.9	13.5	27.7	25.4	33.3	99.9

1) 1989, 2) 1988, 3) 전체 농가수에 대한 각 규모별 농가의 비율임.

자료: <표4-6>과 동일.

② 농산물 수급

EC가 창설된 이래 농업 생산은 ① 역내 우선원칙 등에 의거한 공동농업정책의 추진 ② 가맹국의 확대 ③ 기술혁신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60년 이래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중점 육성해 온 곡물, 우유 및 유제품, 쇠고기, 사탕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지급달성은 물론 과잉생산되고 있다.

<표 4-10>은 EC의 주요 농산물 식부면적, 단수, 그리고 생산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배, 감자, 포도 등의 생산만이 많이 줄어 들고 있을 뿐 나머지 농산물들의 생산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 분		EC전체	벨지움	덴마크	서독	그리스	스페인 ²⁾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EC 시장 조식 대상 품목	소	6.6	3.6	6.8	4.4	5.4	3.8	10.6	1.4	4.7	2.1	1.1	5.0	11.0
	호밀	0.2	0.0	1.1	0.9	0.0	0.1	0.0	0.0	0.0	0.1	0.0	0.6	0.0
	귀리	0.1	0.1	0.1	0.0	0.0	0.1	0.1	0.2	0.1	0.4	0.0	0.5	0.3
	대맥	2.2	1.5	6.6	2.7	0.4	3.1	2.3	3.3	0.5	2.1	0.3	0.5	5.1
	옥수수	2.0	0.0	0.0	0.3	3.1	2.5	4.5	0.0	2.7	0.0	0.0	2.8	0.0
	미곡	0.3	0.0	0.0	0.0	0.4	0.6	0.1	0.0	1.3	0.0	0.0	1.6	0.0
	사탕수수	2.4	3.9	2.1	3.7	1.8	2.0	2.5	1.6	1.9	-	2.5	0.0	1.8
	임답배	0.6	0.1	0.0	0.1	5.4	0.5	0.2	0.0	1.4	-	-	0.4	0.0
	올리브유	1.2	0.0	0.0	0.0	9.3	5.0 ³⁾	0.0	0.0	3.8	0.0	0.0	1.7	0.0
	유광종자	2.1	0.1	0.0	2.0	0.3	2.1	4.0	0.0	2.4	0.8	0.1	0.7	2.1
	신선과일	4.2	3.8	0.4	4.7	8.0	6.2 ³⁾	3.3	0.3	7.9	0.7	1.5	2.9	2.1
	신선채소	7.8	10.5	1.6	2.3	11.5	12.5 ³⁾	5.7	2.3	14.2	0.9	10.5	10.1	7.4
	기타과채류 ¹⁾	1.6	0.1	1.5	0.2	2.7	4.0 ³⁾	1.6	0.0	3.5	0.0	0.2	3.0	0.9
	포도주	6.0	0.0	0.0	4.0	2.2	2.5 ³⁾	13.0	0.0	7.5	10.1	0.0	9.0	0.0
	양질포도주	-	0.0	0.0	0.0	0.0	0.0	9.7	0.0	0.0	0.0	0.0	0.0	0.0
	종자	0.7	0.1	1.1	0.3	0.3	0.1	1.4	0.0	0.0	0.0	1.5	0.0	0.4
	섬유작물	0.5	0.1	0.0	-	9.0	1.1	0.2	0.0	0.0	-	0.0	0.0	0.0
	호프	0.1	0.0	0.0	0.4	0.0	0.1	0.0	0.0	-	-	-	0.0	0.1
	밀크	18.5	16.7	23.8	26.7	9.4	7.9 ³⁾	15.5	35.4	11.5	46.7	24.1	12.1	21.8
	쇠고기	13.5	19.1	9.4	16.1	3.6	6.8	14.6	36.0	9.8	25.2	11.0	10.3	15.1
	돼지고기	10.7	23.2	28.9	16.7	3.5	11.9	6.4	5.2	5.9	8.1	17.9	13.2	8.2
	양고기	1.7	0.2	0.1	0.3	9.0	5.2	1.3	4.9	0.7	-	0.4	3.7	4.7
	계란	3.1	2.5	1.0	2.9	2.3	3.3 ³⁾	1.7	0.8	2.5	0.8	3.2	3.7	3.7
	가금	4.3	3.4	1.8	1.9	2.3	4.6	5.2	2.7	5.4	0.0	3.4	6.5	6.3
	누에고치	-	-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소 계	90.4	89.6	86.3	90.6	89.5	86.4	94.2	94.1	87.8	98.0	77.7	88.3	91.0
비대상 품목	토마토	2.1	3.2	1.1	1.8	2.0	3.2	1.5	1.4	1.5	1.2	3.7	4.8	3.5
	기타	7.5	7.2	12.6	7.6	8.5	10.4	4.3	4.5	10.7	0.8	18.6	6.9	5.5
	소 계	9.6	10.4	13.7	9.4	10.5	13.6	5.8	5.9	12.2	2.0	22.3	11.7	9.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산액(백만ECU)		175,710	6,119	6,851	28,894 ³⁾	7,993	23,380 ³⁾	46,263	4,321	36,708	188	15,676	3,513	19,184

1) 건조콩 및 감귤류, 2) 1986, 3) 1988.

자료: <표 4-6>과 동일.

표 4-9 EC 농업생산에서 개별회원국의 비중¹⁾, 1989

단위: %

구 분		벨지움	덴마크	서독	그리스	스페인 ⁴⁾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영국
EC 시장 조직 대상 품목	소 맥	1.9	4.0	11.1	3.8	6.3	42.6	0.5	14.9	0.0	1.4	1.5	18.2
	호 밀	0.4	19.2	65.2	1.0	3.7	5.9	0.0	0.6	0.1	1.2	5.8	0.6
	귀 리	2.6	4.7	6.6	1.2	11.5	30.2	3.9	18.0	0.3	2.1	7.4	22.9
	대 맥	2.4	11.8	20.7	0.9	13.4	28.3	3.8	5.0	0.1	1.1	0.5	25.6
	미 곡	0.0	0.0	2.2	7.1	12.5	59.4	0.0	28.5	0.0	0.0	2.8	0.0
	사탕수수	0.0	0.0	0.0	5.7	19.7	6.4	0.0	78.9	0.0	0.0	9.1	0.0
	잎 담 배	5.6	3.4	25.4	3.3	9.2	27.1	1.6	16.3	0.0	9.2	0.0	8.1
	올리브유 ²⁾	0.4	0.0	2.4	39.4	8.6	9.8	0.0	46.5	0.0	0.0	1.4	0.0
	유량종자	0.0	0.0	0.0	34.0	39.2 ³⁾	0.0	0.0	63.2	0.0	0.0	2.7	0.0
	유량종자	0.1	0.0	15.4	0.6	11.6	49.0	0.0	23.1	0.0	0.3	0.7	10.8
	신선과일	3.1	0.4	18.2	8.6	16.8 ³⁾	20.4	0.2	39.0	0.0	3.1	1.4	5.5
	신선채소	4.7	0.8	4.8	6.7	18.2 ³⁾	19.3	0.7	38.0	0.0	12.0	2.6	10.3
	포 도 주	0.0	0.0	12.1	1.6	6.8 ³⁾	56.9	0.0	26.2	0.2	0.0	3.0	0.0
	양질 포도주	-	-	-	-	-	-	-	-	-	-	-	-
	종 자	0.7	6.1	8.4	1.8	1.6	56.4	0.0	0.0	0.0	20.3	0.0	6.3
	섬유작물	1.1	0.0	0.0	89.2	28.2	9.3	0.0	0.0	0.0	0.4	0.0	0.0
	호 프	1.4	0.0	82.4	0.0	8.3	3.6	0.0	0.0	0.0	0.0	0.0	12.7
	우 유	3.1	5.0	23.7	2.3	5.6	22.1	4.7	13.0	0.3	11.6	1.3	12.8
	쇠 고 기	4.9	2.7	19.7	1.2	6.0	28.5	6.6	15.2	0.2	7.3	1.5	12.2
	돼지고기	7.6	10.6	25.8	1.5	12.4	15.9	1.2	11.6	0.1	15.0	2.5	8.4
	누에고치	0.4	0.2	3.2	24.0	28.1	19.5	7.1	8.9	0.0	2.3	4.3	30.1
	누에고치	-	-	-	-	-	-	-	-	-	-	-	-
비대상 품목	소 계	3.6	3.9	17.4	4.3	5.7 ³⁾	27.8	2.7	19.6	0.1	7.8	1.8	10.7
	계 란	2.8	1.2	15.1	3.4	15.6 ³⁾	14.6	0.6	16.9	0.0	9.2	23.2	12.8
	가 금	2.7	1.6	7.4	2.4	11.8 ³⁾	31.9	1.5	26.1	0.0	7.2	3.0	16.1
	기타과채류 ⁴⁾	0.1	3.8	1.9	7.8	25.9 ³⁾	26.8	0.0	47.8	0.0	1.2	3.8	6.6
	소 계	2.3	1.9	9.1	3.7	10.9 ³⁾	25.0	1.0	26.6	0.0	6.8	10.2	13.3
	감 자	5.4	2.0	14.1	4.4	17.0	19.0	1.6	14.7	0.1	16.0	4.6	18.2
	기 타	3.7	3.7	14.7	5.0	7.1 ³⁾	15.7	1.4	26.4	0.0	19.4	1.9	9.0
	소 계	4.1	3.7	14.5	5.0	13.0	16.4	1.5	24.0	0.0	18.4	2.5	9.0
	계	3.5	3.9	16.4	4.5	12.6	26.4	2.5	20.9	0.1	8.9	2.0	10.9

1) EC 12개국 100으로 했을 때의 백분비 임. 2) 1988, 3) 건조콩, 감귤류, 4) 1986

자료: <표 4-6>과 동일.

표 4-10 EC 주요 농산물의 생산 현황

	식부면적 (千ha)					ha당 수량(100kg)					생산량(千M/T)				
	1980	1987	1988	1989	1980~89 연평균 증가율	1980	1987	1988	1989	1980~89 연평균 증가율	1980	1987	1988	1989	1980~89 연평균 증가율
소맥 ¹⁾	15,704	15,860	15,525	16,255	0.4	41.9 ⁴⁾	49.3 ⁴⁾	53.4 ⁴⁾	54.0 ⁴⁾	2.9	61,718	71,588	75,097	78,677	2.7
옥수수	3,762	3,778	4,038	3,889	0.4	54.6	68.4	69.8	67.4	2.4	20,538	25,860	28,186	26,204	2.7
곡물류계 ²⁾	36,998	35,053	34,872	35,000	-0.6	39.1	44.1	47.0	46.8	2.0	44,748	54,633	63,839	63,800	1.4
미곡	N.A	332	346	331	-0.2 ⁶⁾	N.A	57.5	56.2	59.9	2.1 ⁵⁾	N.A	1,909	1,946	1,987	2.0 ⁵⁾
유채	731	1,860	1,845	1,652	9.5	27.3	31.7	28.1	29.8	1.0	1,998	5,975	5,175	4,915	10.5
감자	1,689	1,470	1,436	1,388	-2.2	242	282	277	281	1.7	40,845	41,399	39,725	39,040	-0.5
사과	333	312	317	306	-0.9	246	242	275	260	0.6	8,189	7,544	8,730	7,946	-0.3
배	139	132	133	130	-0.7	216	197	195	N.A	-1.3 ⁷⁾	3,002	2,599	2,591	2,377	-2.6
복숭아	198	212	211	210	0.7	125	128	124	140	1.3	2,476	2,705	2,617	2,937	1.9
포도	224	196	191	183	-2.2	111	129	128	130	1.8	2,497	2,524	2,443	2,371	-0.6
과실류계 ³⁾	2,893	3,026	3,063	3,097	0.8	77	72	76	72	-0.7	22,218	21,907	23,285	22,333	0.1
오렌지	280	300	300	295	0.6	142	149	162	186	3.0	3,985	4,468	4,853	5,483	3.6
레몬	94	111	110	110	1.8	131	132	138	140	0.7	1,234	1,467	1,520	1,535	2.5
감귤류계	465	525	526	537	1.6	142	148	156	167	1.8	6,608	7,778	8,193	8,960	3.4
토마토	277	242	251	277	0	401	465	451	482	2.1	11,113	11,253	11,314	13,355	2.1
채소류계	1,619	1,644	N.A	N.A	0.8 ⁶⁾	235	251	N.A	N.A	0.9 ⁶⁾	37,993	41,287	41,464	43,973	1.6

1) Common wheat + Durum wheat, 2) 미국제외, 3) 감귤류제외, 4) Common wheat, 5) 1987~89연평균 증가율, 6) 1980~87 연평균 증가율,

7) 1980~88 연평균 증가율.

자료: <표 4-6>과 동일.

육류의 생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4-11>. 쇠고기와 말고기의 생산은 1987년 이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돈육·양고기 등의 생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흔히 EC의 버터 채고 누적을 두고 '버터의 산'이라고 불릴만큼 우유와 낙농제품의 과잉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품목에 대해 강력한 생산 통제 실시로 1987년 이래 생산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표 4-12>. 치즈의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EC의 이와 같은 농업생산 증가로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EC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소맥 등 곡물류와 설탕이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표 4-13>.

표 4-11 EC의 육류 생산 현황

	전체 육류 생산량에 대한 비중(%)				생산량(千M/T)				1986~89 연평균 증가율
	1986	1987	1988	1989	1986	1987	1988	1989	
돈 육	42.2	42.4	43.6	43.2	12,364	12,825	13,316	13,022	1.7
쇠고기	27.4	26.6	24.9	24.4	8,019	8,066	7,618	7,341	-2.9
가금육	18.6	19.1	19.6	20.3	5,443	5,784	5,997	6,126	4.0
양고기	3.2	3.4	3.6	3.6	948	1,003	1,031	1,070	4.1
말고기	0.2	0.2	0.2	0.2	58	55	52	48	-6.1
기 타	2.2	2.2	2.3	2.4	652	662	705	723	3.5
소 계	93.9	93.9	93.9	94.1	27,484	28,395	28,719	28,330	1.0
식용설육	6.1	6.1	6.1	5.9	1,800	1,857	1,837	1,787	-0.2
계	100.0	100.0	100.0	100.0	29,284	30,252	30,576	30,117	0.9

자료: <표 4-6>과 동일.

표 4-12 EC의 계란 및 낙농품의 생산 추이

단위: 千M/T

구분	1980	1987	1988	1989	1980~89 연평균 증가율
계란	4,062	4,911	5,022	4,765	1.8
원유	103,778	112,101	109,834	109,082	0.6
버터	N. A	1,875	1,671	1,697	-4.9 ²⁾
치즈	N. A ¹⁾	4,252	4,413	4,619	4.2 ²⁾
전지분유	747	888	971	894	0.2
탈지분유	2,128	1,667	1,338	1,458	-4.1
농축우유	N. A ¹⁾	1,286	1,335	1,306	0.8 ²⁾

자료: <표 4-6>과 동일.

다음으로 EC의 농산물 소비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1988년 현재 EC 가계 평균 소비지출중 식료품 및 음료, 담배에 대한 소비지출은 21.6%이다. 소득이 높은 국가는 식품 소비지출 비중이 낮은 반면 아일랜드(40.6%), 스페인(38.2%), 포르투갈(37%) 등 기타회원국에 비해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EC 가계의 식료품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은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높은 수준에서의 역내 가격지지와 국경보호를 통한 수입억제 등에 의해 기인된 현상이라고 보겠다.

주요 농산물의 1인당 소비량을 보면 대개의 경우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표 4-14>. 전체 곡물류의 경우 1985/86년에 비해 1988/89에는 영국·포르투갈·이탈리아·서독만이 1인당 연간 소비량이 늘어났을 뿐 나머지 회원국에서는 감소했다. 채소류의 소비량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룩셈부르크·그리스·스페인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과일류의 소비도 EC 전체로는 증가일로에 있다. 특히, 룩셈부르크

표 4-13 EC 주요 농산물이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 분	1976 ¹⁾	1980	1985	1987	1988	1989
소 맥	11.3	13.8	14.1	13.8	14.7	14.6
기타곡물 ⁴⁾	8.8	11.5	10.7	10.1	11.8	10.1
설탕	12.8	16.0	15.0	13.8	14.7	15.4
잎 담 배	6.0	6.4	5.8	6.3	5.9	5.7
쇠 고 기	15.2	15.9 ³⁾	16.3 ²⁾	16.4	15.4	14.8
돼지고기	21.4	20.2	20.4	20.0	19.7	N.A
버 터	N.A	N.A	26.6	25.3	22.2	N.A
치 즈	N.A	N.A	31.0	31.0	31.1	N.A
전지분유	N.A	N.A	42.3	42.3	43.0	N.A
탈지분유	N.A	N.A	39.2	39.2	34.2	N.A,.

1) EC 9개국 자료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자료를 더했음.

2) 1981~83년 연평균, 3) 1980~82년 연평균, 4) 미국 제외

자료: <표 4-6>과 동일.

크·덴마크·서독·이탈리아에서 과일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육류의 경우 쇠고기의 소비량은 줄어 들고 있지만 돼지고기와 가금육의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다. 농산물 전체로는 연평균 1~1.5%씩 소비가 늘어나는데 그쳤다(Commission of the EC, 1989a).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EC의 농산물 수급의 특징은 공급 증대가 수요 증가를 압도하였다는 점이다. 일부 농산물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농산물의 자급도가 100%를 상회하고, 더 나아가서는 과잉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유 및 낙농제품, 소맥, 설탕 등은 1970년대 후반부터 만성적으로 과잉생산을 보이고 있다<표 4-15>.

EC 농산물중 자급도가 낮은 농산물은 감귤류(67%), 신선과일(84%) 등이다. 특히, 신선과일의 경우 그리스(144%), 스페인(122%), 이탈리아(116%) 이외 나머지 회원국의 자급률은 대단히 낮다<표 4-16>. 과일류의 자급도가 20% 내외인 영국·아일랜드·덴

표 4-14 EC의 국민 1인당 1년간 식품 소비량 추이

단위: kg/인

	1968/69 ¹⁾	1975/76 ¹⁾	1985/86 ¹⁾	1988/89
소 맥	76	74	72	73
옥수수	N. A	3	7	7
미 곡	N. A	3	4	4
곡물류계	85	81	83	84
감 자	90	75	80	79
양배추	N. A	5	5	5
토마토	N. A	20	27	27
채소류계	99	97	116	117
사과	N. A	18	19	19
배	N. A	7	7	6
복숭아	N. A	5	7	7
과실류계	65	59	60	61
오렌지	N. A	14	16	19
우유	103	102	N. A	N. A
치즈	9	11	N. A	N. A
버터	6	5	N. A	N. A
계란	13	14	N. A	N. A
쇠고기	25	25	23	20
돼지고기	28	33	37	40
가금육	9	12	16	18
양고기	3	3	4	4
육류계	68	77	82	87

1) 기초년도를 중심으로 한 3개년 평균치

자료: <표 4-6>과 동일.

표 4-15 EC 주요 농산물의 평균 자급률

	1968/69	1975/76	1980/81	1985/86	1988/89
소 맥	94	106	114	124	123
대 맥	100	96	116	119	118
옥수수	45	49	58	77	95
미 곡	N. A	76	77	68	75
곡물류제 ¹⁾	86	88	97	110	113
감 자	100	98	102 ¹⁾	101	101
설탕	82	98	124	123	124
신선채소	98	94	102	107	106
신선과일	80	79	88	87	84
감귤류	N. A	43	72	75	67
신선우유	100	101	N. A	N. A	101 ²⁾
전지분유	169	263	N. A	N. A	N. A
탈지분유	140	126	N. A	N. A	N. A
치즈	98	103	N. A	N. A	107 ²⁾
버터	91	104	N. A	N. A	134 ²⁾
계란	99	100	101	N. A ¹⁾	102
쇠고기	90	99	102	107	104
돼지고기	100	99	101	102	103
가금육	101	104	107	105	105
양고기	56	64	74	80	83

1) 미곡제외, 2) 1987/88년도 자료.
 자료: <표 4-6>과 동일.

마크 등은 향후 우리 나라 과일류 수출의 잠재적 시장이라고 보겠다.

③ 농산물 무역

약 3억 2천만명에 이르는 인구규모와 역내 총생산규모가 4조 4천억 달러나 되는 EC는 거대시장임에 틀림없다. EC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입국이며, 미국 다음으로 큰 수출국이다. 이러한 사정은 농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표 4-16 EC 회원국의 신선과일 자금률

단위: %

		EC 12	룩셈 부르크	덴마크	서독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 랜드	이탈 리아	네덜 란드	포르 투갈	영국
신선 과일	1985/86 ¹⁾	87	61	38	53	125	116	89	15	128	57	95	22
	1988/89	84 ²⁾	68	20 ²⁾	55	144 ²⁾	122	96 ²⁾	13 ²⁾	116	55 ²⁾	90 ²⁾	19 ²⁾
감귤 류	1985/86 ¹⁾	75	0	0	0	163	299	3	0	113	0	100	0
	1988/89	67 ²⁾	0	0 ²⁾	0	130 ²⁾	236	3 ²⁾	0 ²⁾	107	0 ²⁾	96 ²⁾	0 ²⁾

1) 전후 3개년간 평균, 2) 1987/88년

자료: <표 4-6>과 동일.

EC의 농산물 수출은 1980년 288억달러에서 1989년에는 397달러로서 연평균 3.6%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농산물 수출에서 EC가 차지하는 비중은 12.4%에서 13.2%로 늘어났다<표 4-17>. 농산물 수입은 1980년 628억달러에서 연평균 2.5%씩 증가하여 1989년에는 635억달러 증가했으나 수출보다는 소폭으로 증가했다. 역시 같은 기간 세계 농산물 수입에서 EC가 차지하는 비중은 24.7%에서 19.3%로 감소했다.⁶⁾

EC는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주로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가공 원료용 농산물, 매니옥, 글루틴과 같은 사료곡물⁷⁾, 그리고 EC 기후상 재배가 부적합한 커피, 차, 코코아, 그리고 과채류 등이다<표 4-18>. 이 가운데 올리브유, 대맥, 복숭아, 배 등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옥수수, 소맥, 전지분유 등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6) 이처럼 세계 농산물시장에서 EC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면에서 늘어나고, 수입면에서는 줄어들어 결국 미국 등 농산물 주요 수출국들의 세계시장을 위축시켰다. 이것은 미국과 EC간 교역마찰을 빚게 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Sarriz, 1988), (MAHE' and TAVERA, 1989).

7) 이와 같은 사료곡물의 수입 급증으로 EC 역내의 곡물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는 다시 곡물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바, 현재 EC는 이러한 곡물 대체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GATT UR 협상에서 관세양어재조정(Regalancing)을 관세화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표 4-17 세계 농산물 무역에서 EC의 비중

단위: 10억달러

		19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80~89 연평균 증가율
세계의 무역	세계총수출(A)	1,604	1,948	2,144	25,101	2,879	3,099	7.6
	그중농산물(B)	233	209	229	252	287	300	2.8
	$\frac{B}{A} \times 100$	14.5	10.7	10.7	10.0	10.0	3.7	
	세계총수입(C)	1,710	2,040	2,240	2,580	2,980	3,211	7.3
	그중농산물(D)	254	234	253	280	316	329	2.9
	$\frac{D}{C} \times 100$	14.9	11.5	11.3	10.9	10.6	10.2	
EC 의 무역	EC의 총수출(E)	305.0	289.0	339.1	391.7	429.0	455.0	4.5
	그중농산물(F)	28.8	26.1	28.9	32.8	36.0	39.7	3.6
	$\frac{F}{E} \times 100$	15.2	13.7	13.4	13.1	13.4	13.1	
	$\frac{F}{B} \times 100$	12.4	12.5	12.7	13.0	12.5	13.2	
	EC의 총수입(G)	393.9	310.1	331.3	392.6	458.2	492.2	2.5
	그중농산물(H)	62.8	46.7	52.8	58.7	64.6	63.5	0.1
EC 무역 수지	$\frac{H}{G} \times 100$	15.9	15.1	15.9	15.0	14.1	12.9	
	$\frac{H}{D} \times 100$	24.7	20.0	20.9	21.0	20.4	19.3	
	전체무역수지 (E-G)	-89	-21	8	-1	-29	-7	
	농산물무역수지 (F-H)	-34	-21	-24	-26	-29	-24	

자료: <표 4-6>과 동일.

표 4-18 EC의 주요 농산물 수입 추이

단위: 千 M/T

	1985/86	1986/87	1987/88	1988/89	1985/86~88/89 연평균 증가율
곡물류계	10,658	7,163	7,838	7,332	-11.7
소 맥	2,634	2,226	1,775	2,103	-7.2
드럼밀	568	629	809	431	-8.8
호 밀	58	56	73	44	-8.8
대 맥	169	428	452	734	63.2
귀 리	76	105	150	137	21.7
옥수수	6,919	3,262	3,601	3,257	-22.2
기 타	234	458	979	626	28.0
쌀	624	537	553	525	-5.6
설탕	1,918	1,918	1,692	N.A	-6.1
와 인 ¹⁾	2,029	2,622	2,242	N.A	-5.1
신선과일	4,378	4,996	N.A	N.A	14.1
신선채소	2,203	2,065	N.A	N.A	-6.3
유 채	440	565	N.A	N.A	28.4
해바라기씨	360	229	N.A	N.A	-36.4
올리브유	9.3	26.1	52.3	45.8	70.1
사과(신선)	577.2	584.6	621.8	649.4	4.0
배(신선)	105.9	154.8	200.6	205.1	24.6
복숭아	3.2	4.3	7.6	10.0	46.2
오렌지	914.1	891.8	971.3	926.5	0.5
레몬	69.6	56.7	65.5	72.7	1.5
토마토	282.5	273.8	268.1	256.0	-3.2
감 자	380.7	343.6	318.3	399.8	1.6
버터및버터유	85.3	78.8	76.0	71.2	-5.8
치즈	108.4	109.2	115.2	118.8	3.1
탈지분유	45.4	1.6	4.6	53.3	5.5
전지분유	2.8	2.5	1.2	1.8	-13.7
쇠고기	284.0	306.0	289.6	295.5	1.3
돼지고기	102.2	52.6	44.5	67.8	-12.7
닭고기	75.5	62.8	77.8	91.2	6.5
양고기	222.6	226.9	222.0	226.5	0.6
계란	15.4	23.7	18.9	30.2	25.2

1) 千 hl

자료: <표 4-6>과 동일.

표 4-19 EC의 주요 농산물 수출 추이

단위: 千 M/T

	1985/86	1986/87	1987/88	1988/89	1985/86~88/89 연평균 증가율
곡물류계	27,500	27,102	26,963	34,868	8.2
소 맥	14,237	15,107	14,373	18,040	8.2
드 럼 밀	1,875	1,506	1,848	3,212	19.7
호 밀	127	370	449	147	5.0
대 맥	9,522	8,467	8,307	11,393	6.2
귀 리	23	51	42	118	72.5
옥 수 수	1,704	1,571	1,867	1,957	4.7
기 타	11	30	50	0	-
쌀	0	0	30	0	-
설 탕	4,550	4,701	5,281	N.A	7.7
와 인 ¹⁾	14,174	12,575	10,104	-N.A	-15.6
신선과일	1,647	1,408	N.A	-N.A	-14.5
신선채소	5,120	4,730	N.A	-N.A	-7.6
유 채	0	159	N.A	-N.A	-
해바라기씨	17	49	N.A	-N.A	188.2
올리브유	125.0	151.2	177.4	157.4	8.0
사과(신선)	200.5	186.7	191.5	161.8	-6.9
배(신선)	64.9	150.1	60.3	55.0	-5.4
복숭아	80.5	102.4	79.6	93.4	5.1
오렌지	490.3	414.0	390.7	388.9	-7.4
레몬	274.7	223.5	218.1	208.6	-8.8
토마토	81.8	88.6	86.0	94.3	4.9
감자	617.2	827.9	676.8	562.2	-3.1
호프	12.6	13.3	14.6	15.8	7.8
버터및버터유	304.8	588.0	608.7	373.1	7.0
치즈	378.3	406.5	403.9	444.7	5.5
탈지분유	267.4	389.8	615.9	409.4	15.3
전지분유	478.8	572.5	596.3	568.5	5.9
농축우유	436.2	386.9	382.9	448.9	1.0
쇠고기	987.0	735.5	645.6	882.6	-3.7
돼지고기	165.2	201.3	287.7	232.1	12.0
닭고기	332.0	368.6	394.5	440.5	9.9
계란	99.5	77.8	90.3	99.8	-3.2

1) 千hl

자료: <표 4-6>과 동일.

EC의 주요 수출 농산물로는 낙농제품과 같은 가공식품과 육류 등이다<표 4-19>. 세계 농산물 수출시장에서 EC의 비중이 높은 품목은 포도주(80.4%), 버터(55.2%), 치즈(47.7%), 쇠고기(27.9%), 돼지고기(21.2%) 등이다(1987년 기준)

EC는 농산물 교역을 역외보다는 역내에서 더 많이 하고,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EC 전체 농산물 수입중 역내 수입비중은 1986년 56.7%에서 1989년 60.1%로 늘어났다. 역외의 EC 농산물 주요 수입선은 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오스트리아 등이고, 주요 수출선은 미국·스위스·일본 등이다.

나.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① 공동농업정책의 개요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된 유럽공동체는 공동시장 형성에 농업을 포함시켰다. 농업분야도 공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역내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시켜 공동시장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처럼 EC가 농업에 대하여 공동시장 정책, 다시 말하여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을 실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① EC 결성당시만 하더라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매우 컸고 ② 각 회원국 공히 농업의 비중이 높아 농업은 고용이나 농촌주민의 생활안정 등 정치·경제안정에 긴요한 부문으로 인식되었으며 ③ 공업발전을 위한 저임금실현에 농업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하여, EC 창설 당시 농업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업을 배제한 공동시장의 형성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EC 창설당시 농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던 프랑스·네덜란드·이탈리아 등과 공

업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던 독일과 상호 이익의 교환수단으로써 농업이 공동시장 형성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Tracy, 1982(266~272); Harris, *et al.*, 1983(36). 프랑스 등이 공산품 시장을 개방하여 독일에겐 혜택을 주는 대신 독일 등의 농산물시장도 동시에 개방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로마조약 제39조에 나타난 공동농업정책의 목표로는 ① 기술 향상 등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 ②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농민의 생활수준 보장 ③ 시장 안정 ④ 식량공급의 안정성 확보, ⑤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소비자에 대한 농산물 공급보장 등이다. 이같은 공동농업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은 ① 회원국간 농산물 가격을 점차적으로 일치시키는 시장통합(unit of the market), ② 변동부과금(variable levies)과 공동관세체계를 통한 역내 우선(Community preference) ③ 유럽농업지도 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EAGGF)을 통한 재정연대 (Financial Solidarity) 등이다.

이러한 목표와 원칙을 가지고 우선 EC는 1962년 곡류, 육류 등 6개 농산물에 대해, 그리고 1968년에 몇몇 농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전반에 대해 공동농업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⁸⁾ 공동농업정책은 크게 나누어 가격정책, 무역정책, 구조정책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동농업정책중 농산물 가격 및 무역정책의 중심은 역내 농업보호에 두어졌다. 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으로 지지하여 증산을 도모하는 한편 수입부과금 등을 통해 값싼 외국 농산물의 유입을 막았다.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 및 무역정책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Commission of the EC, 1989(18~20)).

8) CAP 대상품목은 EC 전체농산물의 약 91%이다. CAP 비대상품목으로는 토마토, 고구마, 바나나, 천연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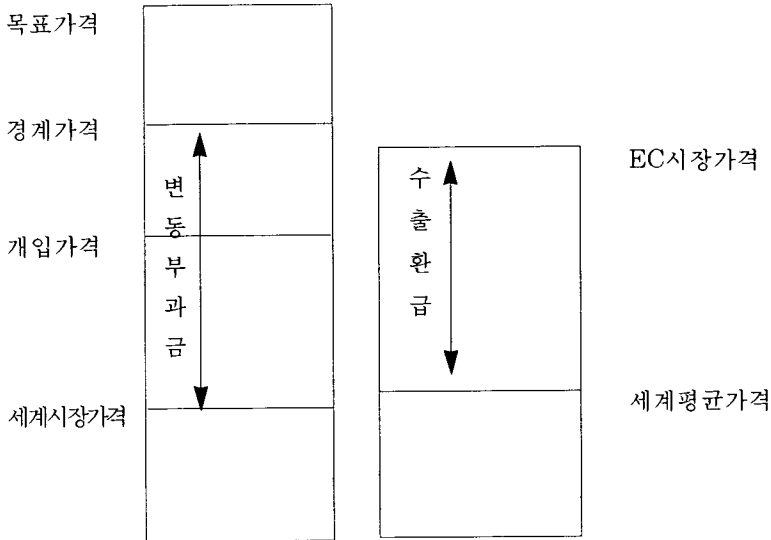
- ① 시장개입과 무역제한 실시: 곡물, 버터, 탈지분유, 쇠고기 등으로 이들 품목은 농업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임.
- ② 시장개입은 않고 무역제한만 실시하는 것: 달걀, 가금육, 포도주, 화훼류, 과채류 등으로 이들 품목은 농업 생산의 25%를 점유하는 품목임. 이와 같은 정책이 적용되는 품목은 주로 기본식량이 아니거나 토지와 관련이 적은 품목임.
- ③ 가격보상정책: 유채, 해바라기씨, 목화씨, 콩 등 유량종자류에 대해 실시. 이 정책은 역내가격과 수입가격 차이를 가공공장에 보상하여 주는 정책임.
- ④ 정액보상제도(flat-rate aids): 아마, 호프, 대마, 생사 등 특정지역의 일부 농민에게 중요한 지역 특산물에 대해 실시.

가격지지정책은 대부분의 경우 목표가격(target price), 경계가격(threshold price), 개입가격(intervention price)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운용체계는 <그림 4-4>와 같다.⁹⁾ 목표가격은 농민 수취목표 또는 가격안정대의 상한가격으로서 경계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경계가격은 목표가격에서 수송비용을 뺀 가격으로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책정된 최저수입기준가격이다.¹⁰⁾ 개입가격은 과잉공급으로 역내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공공수매기관이 시장에 개

9) '목표가격'이란 용어는 곡물, 설탕, 밀크, 올리브유, 포도, 해바라기씨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쇠고기와 포도주에 대해서는 지도가격(guide price), 담배에 대해서 기준가격(norm price), 돼지고기에 대해 기본가격(basic price)이 적용된다. 또한 경계가격은 목표가격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개념이고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돼지고기, 계란, 가금육에 대해서 입문가격(sluiice-gate price), 과채류,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참조가격(reference price)이 적용된다.

10) 이러한 정책가격은 매년 EC 집행위원회가 마련하여 각료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림 4-4 가격지지제도의 운용체계



자료: Rosenblatt, *et al*, 1988.

입하여 구매하는 가격기준이다. 개입가격은 농민에 대한 최저보장가격이라고 볼수 있다.¹¹⁾

물론 EC의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은 품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그 골자를 보면 매년 목표가격과 개입가격, 그리고 구매량을 정하여 시장가격이 개입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구매기관이 시장에서 개입하여 구매한다. 또한 목표가격을 기초로 설정된 경계가격 이하로 역외 농산물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역내 농산물 가격지지효과를 보호하고 있다. 즉, 경계가격과 세계시장가격의 차이만큼을

11) 개입방식은 연중 농민 출하량의 전량을 매입하는 A 개입(A intervention)과 시장가격의 하락이 예상될 때 대량 매입하는 B 개입(B intervention)이 있다.

변동부과금을 부과한다.

한편 EC는 농산물 수출시 역내 농산물가격과 세계시장가격의 차이를 수출업체에게 보조하여 EC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수출환급제 (export refunds)로서 유럽지도보증기금에서 지출된다.

이와 같은 가격지지정책 및 무역정책 이외에도 EC는 공동체 우선 원칙과 역내 농산물 공급안정성 확보라는 원칙하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낙농제품, 육류, 와인 등에 대해서는 민간인의 저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장보조금 (storage premium)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드럼소맥 등 특수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장려 또는 특정품목 주산지의 생산 지속을 위하여 생산장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C에서 농업보조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통화보상금제도 (Monetary Compensatory Amounts: MCAs)를 들 수 있다. EC는 공동농업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해 유럽통화단위 (European Currency Unit: ECU)로 표시된 단일가격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유럽통화단위로 표시된 농산물 가격은 농업환율 (green rate)을 통하여 각국의 화폐단위로 전환된다. 그런데 각국은 농산물 가격의 변동을 막기 위해 시장환율의 변동을 농업환율에 이전시키기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농업환율과 시장환율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이 때 농업환율에 비해 환율이 고평가된 국가에서 농산물 가격은 그 반대의 국가에 비해 농산물 가격이 높게 평가된다. 단지 농업환율 또는 시장환율 때문에 역내 단일가격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EC는 통화보상금을 통해 환율이 고평가된 국가에 대하여는 수출시에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수입시에는 수입부과금을 부과한다. 반대로 환율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는 수출시에는 수출세 (export taxes)를, 수입시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¹²⁾ 이러한 통화보상금제도는 EC 통합과 관련하여 뒤에서 보

12) EC의 통화보상금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것: El-Agraa, 1990(202-203), Harris, *et al*: 1983(1987-214); Crcmon-Taubadel, 1989(37-53).

다 자세하게 언급될 것이다.

②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추진

당초 농산물 공급의 안정적 확보, 농가소득의 안정 등을 목표로 실시된 공동농업정책은 적어도 농산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동농업정책은 과잉 누적, 예산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여 변화 내지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농업정책 또는 EC 농업이 어떠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내용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필요성

공동농업정책을 수정 내지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① 농산물 과잉문제 ② 재정압박 심화 그리고 ③ 국제 무역 마찰 등을 들 수 있다.¹³⁾

1960년대초 공동농업정책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유럽공동체는 식량 수입국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높은 가격지지와 기술진보 등으로 생산은 매년 평균 1.5~2%씩 증가한 반면 소비는 0.5~1%씩 증가하는데 그쳤다(Rosenblatt *et al.*, 1988(20). 이 결과 1960년대에는 식량부족문제가 급격하게 해소되는 기간으로 특징지워졌으며, 1970년대에는 자급달성과 함께 적지 않은 주요 품목에 대해 순 수출국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곡물과 낙농제품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문제

13)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할 것(Tanner and Swinbank, 1987), (Marsh, 1987, 1990), (Commission of the EC, 1989).

와 재고 누적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부담도 더욱 가중되게 되었다. 참고로 <표 4-20>에 EC의 주요 농산물 재고 현황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품목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곡물과 주정의 경우는 최근 들어 다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C에 있어서 주요 농산물의 재고 누적문제는 비단 재고문제 자체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밖에 다른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예컨대 재고처리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더욱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¹⁴⁾ 역내로의 수입 농산물을 감소시켜 수입부과금에 의한 재정수입을 줄여 들게 한다. 이와 더불어 과잉농산물 처리의 일환인 수출 확대를 위한 과다한 수출 보조금 지급은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을 빚게 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¹⁵⁾

공동농업정책이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의 과다이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농산물 가격지지와 재고처리 등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어 농업부문에 EC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표 4-21>. 특히, 유럽지도보증기금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가격보상부문의 지출과다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EC의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통독에 따른 동독의 EC 편입준비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농가소득의 저위와 불균등 문제이다. 앞서와 같이 EC 재정지출의 60% 이상을 농업부문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C에 있어서 농업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였다. 특히

14) 1989년과 1980년 EC의 주요 농산물 재고관리 비용은 각각 43억 ECU, 53억 ECU로서 유럽지도보증기금의 16%, 19%를 점하고 있다.

15) 1989년, 1990년 EC 주요 농산물 수출에 대한 EC의 수출 보조금은 각각 97억 ECU, 94억 ECU로서 유럽지도보증기금의 38%, 34%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0 연도별 EC의 주요 농산물 연말 재고 현황

단위: 천 M/T

	1986	1987	1988	1989	1990
곡물류	18,502	10,513.2	9,938.9	8,608.8	11,795
- 소맥(듀럼 종 포함)	11,199	6,142.0	5,940.2	3,511.2	6,137
- 보리	5,296	3,585.8	3,066.9	2,989.9	3,320
올리브유	N. A	311.1	349.2	130.8	N. A
쇠고기	N. A	753.8	582.6	158.2	N. A
낙농제품	1,632	1,482.0	110.8	26.2	N. A
- 탈지분유	772	593.6	9.6	21.9	N. A
- 버터	860	888.4	101.2	4.8	N. A
주정 (천 hl)	N. A	1,688.0	3,307.7	3,568.1	N. A

1986, 1990년도는 시장년도 기준, 기타는 회계년도 기준임.

자료: (주EC 대표부, 1991).

1980년대 이후 농산물의 구조적인 과잉문제가 심화되어 농가 판매가격이 실질적으로 정체 또는 하락함으로써 생산량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줄어들었다. 1988년 EC 농민의 평균소득은 1970년대 중반의 농가소득 수준을 밑돌게 되었다(Commission of the EC, 1989a). 연간 노동 투입단위당 순부가가치가 1975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1987년에는 95%에 불과하였다. 농가 소득의 안정이라는 공동농업정책 당초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이다.

농업내부에서의 소득불균형 문제도 최근에 들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EC 전체 농가중 20%에 해당하는 대규모 농가가 EC 예산혜택의 80%를 받고 있는 것으로 구명된 바 있다.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가격지지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 제기되는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필요성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EC는 과잉 농산물의 처리를 위해 수

표 4-2: 연도별 EC의 예산 운용 내용

단위: 백만 ECU

	1987	1988	1989	1990	1991
○ EC예산액(A)	35,469.2	41,120.9	40,917.8	46,716.8	52,969.8
○ EAGGF(B)	23,875.1	28,829.8	26,225.2	29,742.0	33,306.0
(B/A) (%)	(67.3)	(70.1)	(66.5)	(63.7)	(62.9)
- 가격보장부문	22,967.7	26,687.3	25,872.9	28,024.0	31,195.0
- 지도부문	907.4	1,142.5	1,352.3	1,718.0	2,111.0
○ CAP 수입	3,097.8	2,895.3	2,664.3	2,537.0	2,430.7
- 일반 Levies	1,626.1	1,504.6	1,282.7	1,152.4	1,218.0
- 설탕 Levies	1,471.7	1,390.7	1,381.6	1,384.6	1,212.7
※ ECU/US\$ (연평균)	1.1538	1.1825	0.9046	1.1077	-

자료: Commission of the EC, 1991.

출 보조금 지급에 의한 수출 확대를 피하여 왔다. 그 결과 세계 농산물에서 EC의 점유율이 증대되고 미국, 호주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 들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EC는 이들 국가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사게 되었다. 또한 이들 농산물 수출국들은 EC가 수입부과금 등을 통해 역내 국경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986년부터 개시된 UR 협상에서는 EC의 가격보조금, 가변부과금, 수출보조금 등이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의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EC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UR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UR 농산물 협상은 EC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도 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지가격의 인하 등 EC의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을 촉진 내지 용이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나)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주요 내용

(1) 농업백서 이전의 개혁조치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을 위한 EC의 최초 계획은 1968년 ‘맨솔트계획’ (Mansholt Plan)이다 (Veer, 1987). 이 계획안에는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농민 은퇴 지원, 농외 취업기회 확대와 기술교육 등을 담고 있다.¹⁶⁾

1972년에는 농산물 유통 합리화 및 가공산업 지원계획이 발표되었다. 주요내용은 유통시설 현대화, 소비자에 대한 농산물 직공급체계 확립 및 농산물 가공업체 육성지원 등이다. 1979년에는 조건열악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공표되었다. 산간지 등 조건열악지역에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식품 가공공장 등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며 관광지원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1979년에는 우유에 대해 과잉생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책임 과징금 제도(Coresponsibility levy)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농민으로 하여금 과잉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써 후에 곡물류와 설탕에 대해서도 실시되었다. 1984년에도 최초로 생산통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유 생산에 있어서 개인별로 생산할당을 하고 이 할당 수준을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우유에 대해서는 특별과징금

16) 이같은 농업구조 개선계획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CAP가 높은 수준에서의 가격정책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 과잉문제를 낳을 수 있고, 소농의 소득 보장을 위한 CAP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가격정책보다는 구조개선을 통해 소농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Rosenblatt, 1988 (19~20)).

(Special levy)을 물도록 하였다.¹⁷⁾ 이 때까지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은 직접적인 생산 통제보다는 개입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품목에 있어서도 우유라는 단일 품목에 국한되었다.

(2) 1985년 농업백서(Green Paper)

EC에 있어서 농산물의 과잉문제와 재정지출과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동농업정책 개혁은 1985년 농업백서(Green Paper)가 발간된 이후이다. 동 백서에는 농산물의 보증가격과 생산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전의 개혁안에 비해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1980년대초 세계적인 곡물 재고 증가 및 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되었다. EC의 경우도 낙농제품, 육류 및 소맥 등의 재고가 크게 불어나고 재정압박이 가속화되자 공동농업정책의 부분적 보완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케 된 것이었다. 농업백서에서는 생산통제가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처방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시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지지가격의 동결 또는 점진적 인하방식에 중점을 더 두고 있다.

대신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조건불리지역의 농민에 대해서는 직접소득보조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두번째는 생산자의 공동책임원칙(Principles of producer coresponsibility)을 정착시켜 모든 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생산자로 하여금 과잉농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마지막 셋째로 개입보장에 한계를 설정하여 농산물의 품질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한을 두는 정책을 포함해

17) 이밖에도 1984년에는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개입가격을 동결하고 해바라기씨에 대해서는 최대보증물량제(Maximum Guaranteed Quantity: MGQ)를 실시하였다. 유채에 대해서는 1982년에 MGQ가 도입되었다.

생산자로 하여금 시장지향적인 상품성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농업백서는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유럽농업 및 공동농업정책 발전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곡물을 비롯하여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개혁조치가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곡물류의 경우 최대보장물량(Maximum Guaranteed Quantities: MGQs)을 정하고 수확량이 이 수준을 초과하면 차기년도 개입가격을 3% 인하한다. 만일 생산량이 계속해서 여러해 동안 보장물량을 초과하면 생산이 감소할 때까지 개입가격을 누적적으로 인하시킨다. 이와 더불어 MGQs를 초과하면 개입가격의 3%에 상당하는 공동책임부과금을 부과한다. 공동책임부과금은 과잉생산 처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또한 곡물류에 대한 수매가격을 개입가격의 94%로 고정시킨다.

둘째, 개입방식의 개선이다. 전지분유는 연중 개입방식을 피하고 집중 출하기인 여름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곡물류와 유량종자에도 적용되어 수확기에만 매입하도록 하였다.

셋째, 개입시 상품의 질별로 지지가격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저급소맥은 사료용 가격으로 매입하고, 제빵용 소맥은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는 한편 최고품 소맥은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농업백서 제4장은 사회에서 농업의 역할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지가격 인하후의 농가소득 감소의 보전과 지역개발의 연계, 환경보존등이 강조되었다. 근대영농방법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들이 제안되었고,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농에 대한 유인책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원거리에 떨어져 있고, 경제적으로 개발이 덜 된 이른바 조건불리 지역에서 소득과 고용의 원천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지역조건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네 가지 형태의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Commission of the EC, 1985(57~62). 그 내용을 보면

- ① 조기 은퇴계획: 전업농이 영농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55세부터 연금 지급(연간 3,000~4,000ECU)
- ② 구조적 접근 : 소득의 50% 이상을 농업에서 얻고 노동시간의 50% 이상을 농업에 할애하는 전업농이 지지가격 인하의 결과로 소득이 감소하여 채무이행이 문제가 될 경우 일시적 보조. 또한 지역평균소득의 75% 이하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5년간에 걸쳐 체감적으로 소득보상 실시
- ③ 사회적 접근 : 농업 이외의 다른 고용기회가 거의 없는 지역은 빈곤농민이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 농민소득이 그 지역 임금 소득의 X%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상. 단, 보상은 농지 소유농가에게 국한하고 환경보존적 기능이 큰 농가를 중심으로 실시
- ④ 매상조치(Buy-out arrangement): 영세지 및 생산성이 낮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민이 휴경 등을 통해 비농업용으로 전환하거나 비농업용으로 판매할 경우 생산량을 감안한 소득 보상.

농업백서에 나타난 이와 같은 제조치들은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 증가를 막고 예산지출 증가를 막는데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1984년과 1987년 사이 EC의 농업보증 지출은 무려 40%나 증가하여 심각한 예산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보다 강력한 농업개혁안이 요구되게 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제안된 것이 1988년 농업개혁안(일명 들로르안 (Delors Plan)이라함)이다.

(3) 1988년 농업개혁안

1988년 농업개혁안은 1985년 농업백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었으나, 두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담겨 있다. 첫째는, 농업예산지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이고 둘째는, 생산량이 최대보장물량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지지가격이 인하되는 각종 안정화(Stabilization)조치이다.

〈예산 감축〉

EC 각료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새로운 농업개혁안에는 유럽농업보증지도기금 중 보증부문의 지출증가한도를 EC 역내 GDP 증가율의 7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어느 한 해의 EC GNP가 3% 증가했을 경우 농업보증부문의 지출은 2.25% 이상 증가할 수 없다. 최근 EC 경제의 성장 추세를 감안하였을 때 향후 5년간 농업보증부문 재정지출은 매년 1.9% 이상 증액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Commission of the EC, 1988a). 이것은 1975년 이래 농업보증부문 지출이 연평균 7.5%씩 증가하였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예산감축이라고 볼 수 있다.

〈안정화 조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정화조치는 최대보장물량 설정과 공동책임부과금 부과외에도 지지가격의 자동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과잉문제 해소와 예산 절감의 효과를 동시에 거양하고자 하고 있다.¹⁸⁾ 곡물류와 과채류, 그리고 우유에 대한 이 제도의 운용체계를 소개하기로 한다.

(가) 곡물류

곡물류에 대한 안정화장치는 1985년 농업백서에 나타난 최대보장물량제도에 기초하고 있다. 보장한도는 1988/89년부터 1991/92년까지 매년 160백만톤으로 고정시키고 있다. 안정화장치하에서는 매 유통연도초에 모든 곡물에 대하여 기본과징금 이외에 개입가격의 3%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공동책임 과징금(additional co-responsibility

18) 안정화 장치의 목적으로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Commission of the EC, 1988). 첫째는, 농민이 재고처리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는 공동책임과징금제도의 실시를 통해 농민으로 하여금 시장의 포화 문제를 인식케 하고 둘째, 주어진 농산물의 제도가격 경향을 잘 파악 할 수 있게하며, 마지막 셋째로, 역내 농산물시장 변동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참고기준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levy)을 부과한다. 그리고 나서 집행위원회는 늦어도 2월말까지 그 해의 수확량을 조사한다. 조사한 결과 실제 생산량이 최대보증물량인 160백만톤에서 3% 또는 그 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연초에 징수한 추가적인 공동책임과징금은 EC 예산으로 귀속하게 된다. 그러나 생산량이 최대보증물량에서 3% 이하로 증가하였을 경우 다시 말하여 480만톤 이하로 늘어났을 경우 초과로 증산된 양에 반비례하여 추가 공동책임과징금은 생산자에게 되돌려 진다. 생산량이 최대보증물량을 많이 초과하면 초과할수록 생산자에게 되돌려지는 추가 공동책임과징금은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¹⁹⁾ 반면에 생산량이 최대보증물량 이하일 경우는 추가공동책임과징금 전액이 생산자에게 반환된다.

이같은 추가적인 공동책임과징금 부과이외에도 생산이 최대보증물량을 초과하면 다음해 개입가격을 3% 인하토록 하고 있다. 만일 초과생산이 계속되면 개입가격도 계속해서 인하된다.

소농에 대해서는 직접보조를 통해 부과금 부과에 따른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휴경계획에 참여하거나 경지의 30% 이상을 휴경하는 농민은 20톤의 곡물에 대해서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곡물에 대한 EC의 안정화장치를 살펴보면 EC의 과잉생산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EC는 3중장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최대보증물량을 4개년간 동결하고 과잉생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통해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다음해 지지가격도 인하시키는 것이다.

19) 예컨대 실제생산량이 MGQs의 1.2%를 초과했다면 농민에게 되돌려지는 추가공동책임과징금은 개입가격의 1.8%(3~1.2%)이다.

(나) 과채류

안정화장치의 대상이 되는 과채류는 신선토마토, 오렌지, 레몬, 새 추마스(Satsumas), 맨더린, 클레멘타인(Clementines), 넥타린(Nectarines: 승도 복숭아) 복숭아이다.²⁰⁾ 그러나 다른 과채류일지라도 과잉생산되어 심각한 개입이 필요할 경우 안정화장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안정화장치가 생산량을 기준으로 운용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과채류의 안정화장치는 시장가격이 낮아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한(withdrawn)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매 유통연도 개시 전에 개입한도(intervention threshold)를 정한다. 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한 양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다음 해 유통연도의 기초가격과 구매가격을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하토록 되어 있다.²¹⁾ 기초가격과 개입가격의 그와 같은 인하는 그 해에 한하며, 다음 해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또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과도기 동안 특별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다.

(다) 우유

우유에 대한 안정화장치는 이미 1984년에 도입된 생산할당제에 입각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다. 안정화장치를 운용하기 위하여 두 가지 종류의 할당을 설정해 두고 있다. 첫째는 농민이나 낙농가공업자에 의해서 가공을 위해 수송될 수 있는 양과 둘째는, 농민에 의해 직접 판매할 수

20) 건포도, 가공토마토 등 가공 과채류에 대해서는 다른 안정화 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21) 과채류에 대한 기초가격(basic price)이란 일종의 목표가격개념이다. 즉, 생산자가 시장에서 받기를 바라는 가격수준(desired market return)이다. 구매가격(buying-in prices)은 통상 기초가격의 40~70% 수준이다.

있는 양이다. 할당된 양을 초과하여 우유를 유통시키거나 판매시킬 경우 농민은 추가 부과금(additional levy)을 물어야 된다.²²⁾ 낙농회사로 이동되는 우유에 대해서는 목표가격의 100%를, 그리고 농민이 직접 판매하는 우유에 대해서는 목표가격의 75%를 부과한다.

생산 할당제와 같이 과잉억제를 위한 제조치를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유의 생산량이 줄어 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EC는 1986년과 1987년에 보완조치를 내 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할당량을 감축하고 보다 엄격한 추가과징금을 부과하고 둘째, 개입제도를 개선하며 마지막 셋째, 낙농제품, 그 중에서도 특히 버터의 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것 등이다. 여기에서 개입수단의 개선조치로서 탈지분유의 수매기간을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로 제한하고 과잉이 심대할 경우 수매종료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조치〉

1988년 농업개혁조치가 나오기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농업구조와 관련된 조치들이 제안되어 시행되었으나 성과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C 각료이사회는 1988년 4월 25일 휴경제도, 조방화 계획, 그리고 조기은퇴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구조 개선안을 채택하였다.²³⁾

(가) 휴경(set aside)

원칙적으로 모든 회원국은 이 제도를 실시해야 되나 그렇다고 농민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인구의 대폭적인 감소위험이 있거나 환경보존상 현재대로 계속해서 생산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민이 휴경을 원한다고 해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 스페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22) 이와는 별도로 1977년부터 과잉생산된 우유에 대해 공동책임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과징금은 목표가격의 2%이다.

23) 이들 조치들이 목적으로 ① 시장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수요조건에 맞게 공급조건의 조절 ②지지가격 인하에 따라 소득 감소를 보게 되는 농민의 지원 ③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영농을 하는 농민 지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며, 포르투갈도 1994년말까지 실시가 유보되어 있다.

등 계획에 참여하려는 농민은 최소한 5년간 등 조치가 부과하고 있는 제한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그러나 3년후에는 취소를 허용하는 조치도 있음). 5년간 휴경을 해야 하는 농지는 공동체의 공동시장조직의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던 농지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휴경 조치에 참여하게 되면 농민은 자기가 속한 국가로부터 휴경연금(Premiums)을 받게 되는데, 연간 ha당 100ECU에서 600ECU까지이다. 이 때 공동체의 농업지도보증기금에서 15~50%를 지원한다.

휴경된 경지는 농민의 의지에 따라 목칠 수도 있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으며, 비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각 회원국은 휴경지에 이집트콩, 렌즈콩 등 콩과작물의 재배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휴경연금은 50% 정도 삭감되어 지급된다.

(나) 조방화(extensification)

이 제도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도록 되어 있으나,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에 대해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를 유보해 왔다. 이 제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1/4은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이 지원한다.

‘조방화’란 해당품목의 생산량을 5년 또는 그 이상 기간동안 최소한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쇠고기와 송아지의 경우는 사육두수를 최소한 20%이상 줄여야 되는 반면 포도주의 경우는 재배면적을 20% 감축해야 한다. 조방화에 따른 소득손실의 보상 수준은 개별회원국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생산의 전환(conversion of production)

이 제도의 목적은 최소한 부분적이라도 역내에서 과잉생산되고 있지 않는 품목의 생산을 전환하는 농민을 지원하는 것이다. 소요경비의 1/4은 유럽농업보증지도기금에서 지출된다.

(라) 조기 은퇴

조기 은퇴제도의 실시는 각 회원국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시장조건의 변화에 맞게 적응할 수 없는 농민에 대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데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시장균형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의 경영규모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조기 은퇴제도의 수혜자는 55세 이후 영농을 포기하는 “전업농”(main-occupation)이다. 농민이 “생산의 포기”라는 대안을 선택할 경우 최소한 5년 또는 정상적인 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경지를 경작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경작지는 보다 합리적인 영농유형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된 토지 합병계획에 넘길 수도 있다. 구조 재조정(Restructturing)이라고 불리는 대안은 은퇴농민이 포기한 경지를 이용하여 경지규모를 늘리는 농민은 반드시 전업농이어야 하고, 그러한 농민은 과잉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량을 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기 은퇴계획에 참여하는 농민은 연금을 받게 되는데, 유럽농업보증지도기금으로부터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3000ECU이다. 생산을 포기할 경우 농민은 ha당 연간 250ECU를 추가적으로 받는다.

(4) 91년도 농업개혁안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추진된 EC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제1차 개혁이라고 본다면 현재 성안중인 농업개혁안은 제2차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두 개혁안 모두가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차농업개혁안을 계획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공동농업정책의 개혁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잉²⁴⁾, 농업지출 과다²⁵⁾, 대소농간 보조수혜 불균형에 따른 농가계층간의 소득불균형 문제²⁶⁾ 등이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⁷⁾ 그리고 다른 한편 대외적 요인으로서 농업보조금의 대폭적인 삭감을 포함한 EC의 농업개혁이 90년말 연기된 우루과이 협상 타결에 선결조건이라는 인식이 역내외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Agra Europe, June 14, 1991). EC가 농업정책의 개혁의사를 밝힌 것도 1990년 10월 농업감축약속표(Offer List: O/L)를 토의하는 과정에서이다. 약 3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91년 2월 1일 농업개혁 지침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24) 제1차 CAP 개혁으로 유량종자와 같은 농산물의 과잉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곡물, 쇠고기, 버터, 탈지분유, 양고기, 담배, 포도주, 설탕 등의 과잉문제를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5) 1988년 농업개혁안에서 EAGGF부문의 지출 증가를 GNP 증가의 74%로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도 EAGGF는 1991년에 비해 12.5%가 증가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Commission of the EC, 1991).

26) CAP하에서 주로 가격지지에 의존하는 소득지원은 대개가 생산량에 비례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대농과 집약적으로 영농을 하는 농가에게 보다 많은 소득지원이 돌아갔다. 이 결과 소득지원의 80%가 20%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집중되었다. 현행의 CAP체제는 중소농 소득을 적절하게 보장하여 줄 수 없다는 것이다.

27) 농업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실시된 여러가지 정책들도 그 성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ommission of the EC, 1991). 예컨대 휴경계획의 경우, 곡물 재배면적의 2%(80만ha) 만이 휴경계획에 참가하였다. 휴경된 대부분의 토지는 생산성이 낮은 경지였다. 조방화계획도 실험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였다. 1990년에는 조방화를 위한 예산항목도 들어 있지 않았다. 조기 연금제도는 단지 한 개 회원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었다.

개혁지침에 나타난 농업 정책 개혁의 목적으로서는

- 자연환경 및 최소한의 농업기능 수행을 위해 농촌지역에 일정 수준의 농민규모 유지
- 이와 관련 조방화 영농, 환경보존적 영농, 그리고 비식량 생산 농가의 고무 지원 확대
- 농촌경제의 활성화
- 농산물 가격 및 생산통제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고과잉 및 예산 부담을 축소하고 균형있는 시장기능 유지
- CAP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보조방법 개선, 직접소득보조 확대 로 대·소농간 각 회원국간 균형있는 보조, 저개발지역의 구조 조정 및 개발 촉진
- 세계의 주요 교역국으로서 책임과 의무 준수

목표에 나타난 것처럼 1991년 농업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종래 가격지지에 의한 농업보조 방식을 차액보상제도(deficiency payment)의 성격이 강한 직접소득보조로 대폭 전환하는 한편 지지가격을 상당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⁸⁾

1991년 7월초에는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농업개혁안이 발표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Agra Europe, July 5, 1991)

28)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반응을 보면 프랑스, 영국 등 북부 국가들은 새로운 농업개혁안이 가격 경쟁력이 높은 농산물을 희생시켜 경쟁력이 낮은 농산물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이며, 농업정책이 경제원리에 기반을 두지않고 사회보장정책에서 접근된다고 하여 반대 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지중해 연안 국들은 전반적으로 개혁안을 지지하나 휴경제도가 영세농가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소농보호, 저개발지역 개발조치가 더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 곡물류

곡물류에 대한 현행의 공동시장조직의 기본원칙과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지가격을 3년 동안 현재 평균 수매가격 보다 35% 인하한다.

수매가격을 현행의 수매가격보다 35% 인하할 경우 곡물류의 역내 목표가격은 톤당 100ECU가 될 것인바, 이 가격은 세계시장이 안정되었을 때 기대세계시장가격 수준이다. 따라서 EC는 이 가격 수준으로 곡물류 지지가격이 인하되면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곡물류에 대한 개입가격은 목표가격보다 10% 낮게, 그리고 경계가격은 목표가격보다 10% 높게 책정하고 있다.

한편 지지가격 인하에 따른 소득손실부분은 휴경계획에 참가하면 50ha 이하 농가는 경작 면적에 상관없이 차액보상 방식의 일종으로 전액 보상해 주도록 계획하고 있다.²⁹⁾ 소득손실 보상과 휴경계획을 연계하여 추진코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전체 경지면적 중 휴경경지 비율을 15%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책임과징금과 최대보장 물량제와 같은 안정화 조치는 이와 동일한 효과를 낼

29)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작규모가 20ha 미만인 농가는 휴경에 참가하는 의무없이 소득손실액을 전액 보상받는다. 20~50ha 농가는 최소한 경지의 15%를 휴경해야만 소득손실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러한 농가는 소득손실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휴경연금(set-aside premium)도 받는다. 50ha 이상되는 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는 경지면적의 15% 이상 휴경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농가는 소득손실부분은 지원받지 못하고 다만 휴경보상금만을 받게 되어있다. 휴경된 경지는 비식량 생산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휴경조치와 연계된 소득손실 보상은 국별, 지역별로 과거 3년간 평균 수량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수량이 높은 지역 또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수 있는 새로운 조치가 강구되는 대로 폐지토록 한다.

(나) 유량종자와 단백질작물(protein crops)

유량종자와 단백질작물에 대한 개혁안은 곡물류와 같이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지가격의 인하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 작물에 대한 지지가격은 세계시장 가격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곡물류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손실은 1헥타르당 차액보상의 형태로 보전해 주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고 휴경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다.

유량종자에 대한 직접소득보상 내용을 보면 첫째로 EC는 안정된 세계시장에서의 기대되는 중기적 균형가격과 역내에서 유량종자와 곡물류가의 균형가격 관계, 그리고 역내에서 유량종자의 평균수량 등을 고려하여 보상기준 가격을 정한다(ha당 384ECU로 잡고 있음). 그런 연후에 곡물류에서와 같이 국가별·지역별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다. 보상액중 일부는 계약채배를 조건으로 재배면적에 기초하여 선급되고 나머지 일부는 유통연도말에 세계시장가격과 보상기준 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급된다. 단백질작물에 대한 보상액은 곡물에 대한 보조 수준과 지역에서의 수량 등에 근거하여 정하고, 유량종자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단, 지원이 점차 없어지게 될 사료용은 여기에서 제외시킨다.

(다) 쇠고기

쇠고기에 대한 개입가격은 3년간 15% 인하한다. 이 중 10%는 사료 등 투입재의 가격 인하에 따른 인하분이고, 나머지 5%는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감축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개입가격 인하에 따른 소득손실분은 역시 직접보조의 형태로 보전해 준다. 특히, 가축을 조방적 소규모로 사육하기 때문에 사료곡물의 가격 인하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암소사육 농가는 최초 90마리까지 3년간에 걸쳐 두당 매년 60ECU씩 총180ECU를 보조받는다.

이것은 현행의 암소에 대한 특별우대제도(special premium for

male bovines)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어린 암소 우대제도 (suckler cow premium)의 지원규모를 마리당 75ECU까지 늘린다. 단, 이같은 지원은 조방화 기준에 부합되게 사육하는 조건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³⁰⁾

(라) 유유 및 낙농제품

우선 1992년에 폐지되도록 되어 있는 우유 생산할당제도를 그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고 1991/92년에 감축할 2%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할당량을 3년간 4% 더 인하하고자 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모든 축산농가에 대하여 감축계획 (cessation scheme)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³¹⁾ 여기에서 감축된 할당량은 연간 우유 생산량이 200,000kg 이하인 농가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이들 소규모 낙농가가 할당량 감축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할당량의 4% 감축 중에서 1%는 우유 생산이 지역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산악 지역 및 조건불리지역 농민에게 재분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감축되는 생산할당량은 3%이다. 이 중 2%는 개혁시행초기 연도에 감축하고 나머지 1%는 그 다음 유통연도에 감축한다.³²⁾

수매가격은 버터의 경우 15%를, 탈지분류 5%를 인하한다. 조방적인 낙농을 고무기키기 위해 쇠고기의 경우와 같은 조방화 기준에

30) 조방화기준을 보면 조건 불리지역은 초지 1ha당 1.4 가축단위이고, 기타지역은 초지 1ha당 그 가축단위이다.

31) 감축계획에 참여하는 농가는 3년간 연간 100kg당 17ECU를 보상받는 것 이외에도 10년간 매년 우유 100kg당 5ECU를 보상받도록 되어 있다.

32) 연간 우유 생산량이 200,000kg 이하인 낙농가에 대해서는 자동수매제를 그리고 상간 및 조건 불리지역의 낙농가에 대해서는 영구수매제 (Plemanent turn of scheme)가 제안되고 있다.

맞게 젃소를 사육할 경우 연간 젃소 마리당 75ECU를 보상한다. 종전 개입가격의 15%를 공동책임과징금으로 부과하던 것은 개혁이행 초기연도부터 폐지한다.

이 밖에도 1991 농업개혁안에는 보완조치로서 환경보전적인 영농지원, 조기 은퇴 지원, 농지의 조림화계획 지원등이 제안되고 있다.

다.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전망

향후 수년간 EC 농업과 농업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이번 1991 농업개혁안이 EC의 최종안으로 확정되려면 EC 내부의 의견조정이 필요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원국간, 그리고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간에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여 결코 용이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EC의 농업개혁안은 과잉해소와 예산부담 완화에 주안을 두어 비교적 단순하였는데 비하여 이번 1991 농업개혁안은 이러한 목표 이외에도 농가계층간 그리고 회원국간 소득불균형 시정과 농촌개발 등 사회정책적 요소까지 고려하고 있어 개혁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더 복잡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정적인 과잉생산과 예산부담 가중이라는 EC 내부의 필요뿐만 아니라 EC의 입장변경 여하에 따라 타결의 여부가 달려있는 우루과이 협상 등 EC의 외부로부터의 압력으로 EC는 이번 농업개혁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1년 하반기에는 농업각료이사회에서 토의를 벌여 회원국각 이견을 좁히고 1991년도말 또는 1992년 상반기중으로 EC의 최종 농업개혁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동개혁안은 1993년부터 이행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에 따른 UR에서 EC의 입장변경도 예상된다.

현재 EC의 각 회원국은 만성적으로 과잉이 되고 있는 농산물의 과잉해소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지가격 인하와 구조조정 및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하여는 큰 의견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지지가격 인하에 따른 소득손실분은 차액보상방식을 통해 대부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보다는 오히려 이번 농업 개혁안에서 특히 강조된 사회정책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지 가격의 인하에 관한 개혁안은 큰 수정없이 통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정책프로그램은 대폭 수정하지는 아니하되 의견 조정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요 품목에 대한 지지가격 수준은 10~30% 인하하되 소득손실분은 차액보상제도의 일종인 직접보조를 통해 보상해 주고 소농에 대한 지원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점차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건불리지역 또는 산간지방은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특별지원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라. EC 통합과 EC 농업

향후 EC의 농업은 ①1992 EC 통합 ②공동농업정책의 개혁 그리고 ③UR 농산물 협상 타결 등에 의해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에서도 UR 농산물 협상 타결이 EC 농업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요인들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진행되었고, 또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거의 30여년 동안 이행해 온 공동농업정책의 기초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동 농업정책은 지금까지 유럽공동체를 지탱해 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장차 타결될 UR 농산물 협상의 내용은 EC의 입장이 상당 정도로 반영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EC 통합이 EC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만 살펴 보기로 한다.

물론 EC 시장단일화 계획에는 농업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은 없다. 그러나 계획대로 EC 통합이 추진되어 완성될 경우 각종 국경장벽의 제거, 기준 및 규격 등의 조화과정에서 EC의 농업과 식품산업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EC의 식품 가공부문에는 상표 부착 및 포장관련법규, 특별수입제한 등 총218개에 달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Commission of the EC, 1988) <표 4-22>). 이러한 비관세 조치가 제거될 경우 소비 촉진, 교육 증대 등으로 인하여 연간 총4억~10억 ECU의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총300여개에 달하는 EC 통합지침중 35%인 105개가 농산물 및 식품분야와 관련을 갖는 지침들이다. 이것들은 주로 ① 인간·동식물 건강규정의 조화 ②세제의 조화 ③기준의 조화 등이다. 간접적으로는 국경없는 단일시장 형성원칙에 위배되는 통화보상금제도, 생산할당, 국별농업보조 등의 운영이 곤란하게 되어 공동농업정책 및 농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EC 농업생산, 농산물 소비, 농산물 무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표 4-22 EC 식품가공산업에서의 비관세장벽 현황

내 용	건 수	비 율
특별수입제한	64	29.4
상표부착 및 포장	68	31.2
특정성분에 관한 금지	33	15.1
상품표시 및 함량에 관한 조치	39	17.9
세제상 차별	14	6.4
계	218	100

자료: Emerson, *etal.*, 1988.

① 농업생산

EC 시장단일화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①공동농업정책의 수정 ② 농업투입재 가격의 변화 ③ 경쟁조건의 개선 등에 의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EC 시장단일화가 공동농업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통화보상금제도의 폐지를 들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화보상금 제도는 EC가 단일의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해 고안해 낸 제도이다. 농업환율에 비해 시장환율이 고평가된 국가, 다시 말해 자국화폐의 평가절상을 농업환율에 반영시키지 않은 국가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높게 평가되어 수출시에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입시에는 수입 부과금(세)을 부과한다. 결국 이와 같은 통화보상금 제도는 국경조치로 작용하여 역내에서 농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여 왔다. 이는 분명히 국경없는 단일시장 정신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철폐 또는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Commisson of the EC, 1988., Manegold, 1989., Josling, 1990., Swinbank, 1990). 더구나 유럽단일통화의 창출은 이를 더욱 부추길 전망이다.

통화보상금제도는 구조적으로 각국의 지지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해 왔다. 농산물 가격이 낮은 국가의 농민희생 아래 농산물 가격이 높은 국가의 농민들이 이익을 보았고, EC 경제 전체로 볼 때 마이너

33) EC 집행위원회는 통화보상금제도가 폐지되면 역내 농산물 가격은 점진적으로 세제시장가격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는 반면 각료이사회는 현행가격 수준의 최고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슬링(Josling)도 통화보상금제도가 폐지되면 역내의 평균 농산물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하였다(1990).

한편 EC 집행위는 통화보상금제도 폐지로 역내 농산물 가격이 10% 하락할 경우 소비자와 납세자의 잉여는 각각 96억ECU 늘어나고 생산자 잉여는 10억 ECU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Commission of the EC, 1988).

스의 잉여(welfare)효과를 발휘했다. 이 제도가 폐지될 때 역내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측되고 있지 않다.³³⁾ 단지 분명한 사실은 역내에서 국가간 농산물 가격차이가 줄어들고 가격의 역할이 증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내 국가간 농업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EC는 세제조화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를 4~9% 범위로 통일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 경우 농산물에 대해 비교적 높은 과세를 해 온 덴마크·이탈리아·포르투갈에서는 세수 감소와 함께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세제가 조화되면 상기한 세율격차에 의한 시장 왜곡효과가 줄어들게 되어 역시 생산에 대한 가격의 기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해 온 우유와 설탕에 대한 생산 할당제도 원칙적으로 볼 때 국경없는 단일시장 창출이라는 EC 통합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 단순히 EC 통합원칙만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생산할당제도는 시장단일화 추진과 함께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 EC에서는 생산과 무역을 왜곡하는 어떠한 장벽도 존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EC는 1991년 농업개혁안에 우유에 대한 생산할당제를 확대하여 계속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과잉이 되고 있는 우유와 설탕이 균형상태로 회복하면 이러한 생산할당제는 폐지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91 농업개혁안에 나타난 우유에 대한 생산할당제는 4%를 줄이 되, 이 중 1%는 소농에게 재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소농에 대해 특별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가격의 점진적 인하에 따라 소농은 더욱 생산이 어렵게 되어 농업구조는 보다 효율성이 높은 중 대농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공동농업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별보조는 EC 전체의 농업보조중 약 31~42%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 역시 통합 EC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 회원국간 경쟁조건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공동농업정책 개혁에 따라 지지가격이 점차 인하되는 추세 속에 국별 농업지원 프로그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단지 이러한 국별 농업 지원 프로그램은 농업생산과 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직접소득보조의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C 농업은 분업화와 전문화가 보다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EC 통합이 EC 농업에 주는 또 하나의 영향은 농업 생산비의 절감에 따른 효율제고 내지 생산성 증대이다. 규격 및 기준의 통일, 규모경제 달성, 경쟁환경의 개선 등에 따라 비료, 농기계, 농약 등 농업투입재를 보다 저가로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EC 통합은 EC 농업을 보다 효율화시키고 분업화, 전문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국경없는 단일시장 속에서 보다 진정한 의미의 공동시장제도가 확립되고, 경쟁조건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② 농산물 소비

이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EC에서 농산물 소비는 거의 포화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과채류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다.

EC 시장단일화가 농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시장단일화로 전반적인 GNP가 증가하고, 따라서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대하는데 따른 소비 증가와 소비의 대체효과이다. 이른바 소득효과에 의한 소비의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면 절대적인 소비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저급 농산물에서보다 고급 농산물로 소비 유형이 변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식품 소비가 포화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비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소득국이었던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 등지에서는 다

소의 소비 증가도 예상된다.³⁴⁾ 〈표 4-23〉은 이들 4개국의 식품 소비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들 국가는 1인당 과일류와 육류의 소비량이 EC 평균보다 적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대체의 방향은 곡물류와 육류 등의 소비가 줄어 드는 대신 과채류와 가공식품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에서와 같이 건강식품 또는 저카로리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격 변화에 의한 소비 변화이다. 먼저 공동농업 정책의 개혁에 따라 지지가격이 인하되고, EC 통합으로 농업이 보다 시장지향적·경쟁적으로 되면 역내의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될 것이다.³⁵⁾ 이 경우에도 저소득 국가에서 육류나 곡물류의 소비가 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고소득국가는 눈에 띌 만큼의 소비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농산물간 상대가격의 변화도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국경장벽제거로 역내 국가간 농산물 무역이 촉진되면 소비자는 보다 다양한 품목과 양질의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볼 때 EC 시장 단일화로 EC의 농산물 소비는 절대적인 양이 다소 증가하는 한편 보다 양질의 식품 소비로 소비유형이 변화될 전망이다. 이는 역내 농산물의 과잉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4) 1988년의 경우 이들 국가의 1인당 GNP는 포르투갈(3,650달러) 그리스(4,800달러), 스페인(7,740달러), 아일랜드(7,750달러) 등이다. (World Bank, 1990). 물론 다른 모든 회원국들의 1인당 GNP는 10,000 달러가 넘는다.

35) 이와 관련 시치니(Cecchini) 등은 EC 통합 후 역내의 소비자 물가는 4.5~7.7% 인하하는 것으로 측정한바 있다(Cecchini, et al., 1988)

표 4-23 EC 4개국의 식품 소비동향(1인 연간 소비량), 1988/89

단위: kg

	EC평균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곡 물 류	84	106	72	101	90
그중소맥	73	105	70	87	74
감 자	79	87	97	142	94
채 소	117	205	182	95	125
과 일	61	49	40	34	36
육 류	87	71	87	87	60
식 고 기	20	16	11	19	12
돼지고기	40	22	45	35	24

자료: (Commission of the EC, 1991).

③ 농산물 무역

이미 앞에서 EC 통합에 따라 농업생산과 소비가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농산물 무역은 이와 같은 역내의 수급구조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보다는 이른바 무역 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 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e)에 의한 농산물 무역 변화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관세동맹이론에 의하면 관계동맹으로 동맹국간 관세가 인하되면 무역 창출효과가 생기는 한편 역외국의 저비용 공급국에서 역내의 고비용 공급국으로 무역이 전환되는 효과도 나타난다. 이러한 이론은 역내 시장 통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만일 역내 무역 장벽이 완화 또는 제거되면 무역이 창출될 것이다. 국경세와 같은 국경에서의 재정적 무역장벽, 표준 및 규격, 그리고 기타 상업적 법규 등과 같은 기술장벽의 완화 내지 제거가 여기에 포함된다. 1992 EC 통합의 계획 일부로서 국경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은 당초 EC 설립과 세 차례에 걸친 EC 확대과정에서 생겨난 무역

창출 효과를 더 크게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EC 시장단일화로 EC의 역내 농산물 무역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첫째, 종래 국경세(border tax) 또는 보조금(subsidies)으로 기능하여 역내간 농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한 통화보상금 제도가 철폐되어 농산물 무역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이다이며, 가장 중요한 점으로써 둘째, 각국별로 상이한 동식물 검역과 위생규정을 조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검역절차도 간소화되고 비용도 절감되어 농산물의 수출입이 용이해 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검역 및 위생에 대한 각국의 민감한 입장으로 현재 이 분야의 추진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셋째 표준규격, 함량기준, 포장, 상품표시 등 각종 규격 또는 기준을 조화시킴으로써 역시 농산물 수출이 용이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식물 검역 규정과 기준 등이 조화가 되면 아무래도 종래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던 선진국들의 문호가 많이 개방되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농산물 그 중에서도 특히 과채류 등의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EC 통합이 EC 농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C의 농업은 주로 CAP 개혁과 UR 협상결과 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부언해 두고자 한다. 어디까지나 EC 통합은 EC 농업을 변화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한 요인에 불과한 것이다.

EC 통합이 EC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무역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EC 통합은 농업이 분업화·전문화로 이행하는 데 촉매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장

UR 농산물 협상 타결 및 EC 통합과 한국 농업

1. UR 농산물 협상 타결과 한국 농업

UR 농산물 협상 타결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한국농업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첫번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UR 농산물 협상 타결로 인한 국제 농산물시장의 변화와 한국농업과의 관계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UR 농산물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의 의무이행과 한국농업과의 관계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UR 농산물 협상 타결은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 교역량의 증가, 국제가격 안정성의 증가 등을 가져올 것이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영향들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본연구에서는 앞서 논의된 국제가격 변화와 관련된 부분만 언급하고자 한다. UR 농산물 협상에서는 농업에 대한 보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감축을 논의하고 있다. 즉, 국내보조, 국경보호, 수출보조가 그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보조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있어 이를 감

축하는데 따른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다. 그러나 한국은 많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로 국경보호를 하고 있으며, 정부수매제도, 투입물에 대한 보조 등 국내보조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경보호와 국내보조를 UR 농산물 협상 결과에 따라 감축할 경우 한국농업은 커다란 타격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가. 국제 농산물 가격 변동과 한국농업

① 국제가격 상승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농업에 대한 보조를 철폐하고 농산물 무역을 자유화할 경우 국제 농산물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연구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완전개방(완전한 보호수준의 철폐)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은 10%~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Krissoff외(1990)는 평균 16%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먼저 이러한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으로 수입 비용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은 1990년도에 약 38억달러에 달하는 농축산물을 수입하였다. Krissoff외(1990)의 예측결과를 토대로 한국이 UR 농산물 협상 타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산출한 결과가 <표 5-1>에 나타나 있다. 물론 UR 협상에서 농업에 대한 보조를 철폐하자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제 농산물 가격은 USDA나 기타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표5-1>에서 가격 상승(C)은 Krissoff외(1990)의 예측을 UR 농산물 협상에서 전체적인 보호 수준이 50% 감축될 경우로 가정하여 100% 감축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1/2로 줄어든다는 가정하에 작성된 것이다.

표 5-1 국제가격 상승과 수입 비용의 증가

단위: 1,000 \$

품 목	1990수입액 (A)	가격상승(%) [*] (B)	가격상승(%) (C)	가격변화후 수입액		추 가 비 용	
				(D)	(E)	(F)	(G)
쇠고기	309,424	11.0	5.5	343,461	326,442	34,037	17,018
낙농품	12,090	68.0 ¹⁾	34.0	20,311	16,200	8,221	4,110
매니옥	48,938	16.0 ²⁾	8.0	56,768	52,853	7,830	3,915
커피	73,964	7.5 ³⁾	3.8	79,511	76,775	5,547	2,811
밀	419,438	20.0	10.0	503,325	461,382	83,887	41,944
옥수수	835,023	23.0	11.5	1,012,318	960,276	177,295	125,253
콩	252,367	-3.0	-1.5	244,796	248,581	-7,571	-3,785
팜유	63,158	14.0	7.0	72,000	67,579	8,842	4,421
설탕	367,188	40.0	20.0	514,063	440,625	146,875	73,437
기타	1,372,410	16.0 ²⁾	8.0	1,591,996	1,482,203	219,586	109,793
농축산물계	3,754,000	16.0				684,549	342,275

* 가격상승은 Krissoff의(1990)의 추정결과를 이용. 가격 상승(C)은 보호수준을 50% 감축할 경우를 가상하여 100% 감축시의 결과를 1/2로 추정한 것임.

- 1) 버터, 치즈, 기타 유가공품의 단순평균
- 2) 농축산물 평균치 적용
- 3) UNCTAD(1990)의 추정치 적용

보호 수준의 감축으로 가장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부문은 낙농품으로 예상되나 한국의 낙농품 수입은 그리 많지 않아 추가적 비용도 크지 않을 것이다. 보호 수준의 50% 감축으로 인한 낙농품 수입의 추가비용은 약 4백만달러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수입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은 옥수수이다. 1990년도 한국의 옥수수 수입액은 8억 3,500만달러에 달했으며, 보호 수준의 50% 감축을 가정하

국제가격 상승률도 11.5%나 되어 수입에 따른 추가적 비용은 약 1억 2,5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UR 타결 이후 국제가격 상승률을 8%로 가정할 때 농축산물 수입에 드는 추가적 비용은 약 3억 4천만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은 국제 경쟁력의 향상이다. 한국이 GATT에 제출한 국별 농업 보호 현황표 (Country List)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은 거의 없다. 최소한 주요 농산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품목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축산물과 과일은 국내외 가격차가 크지 않아 경쟁력 제고노력 여하에 따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품목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복숭아, 단감, 누에고치, 감자, 양파, 포도, 사과, 배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들 가운데는 UR 협상 타결로 국제 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품목이 있을 것이다. 그밖에 국내외 가격차가 커 현재 예상하고 있는 UR 협상 타결로 인한 국제가격 상승 폭으로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들도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국제 가격 상승은 경쟁력 제고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UR 농산물 협상 타결로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이 예상될 때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UR 협상 타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즉, 한국이 UR 농산물 협상 타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분야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비관세조치를 관세상당액으로 전환하여 감축해 나가자는 국경보호조치에 관한 부분이다. 관세상당액을 감축해 나갈 때 국내 가격은 변하지 않고 국제 가격만 상승한다면 국제 가격의 상승 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관세상당액을 일정량 감축한 뒤에도 국내 가격은 관세상당액 감축 이전 수준 또는 그것보다 오히려 높게 유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가격이 200원 국제 가격이 100원이라고 할 때 관세상당액은 100원이 된다. 이 때 국제 가격이 20% 상승하여 120원이 되었다고 하면 관세상당액 감축이 없을 경우 국내 수입가격은 220원이 된다. 따라서 관세상당액 감축 폭이 매년 5%라고 하면 관세상당액 감축을 포함할 경우의 국내 수입가격은 215원이 되어 관세상당액 감축이 이루어져도 국내 가격은 최초의 200원보다 높게 유지될 수 있게 된다. 국제 가격 상승이 없을 경우에 관세상당액을 5% 감축하면 국내 수입가격은 195원으로 국내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 가격 상승은 수입개방, 특히 관세 상당액 감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② 국제 가격 안정성의 증대

UR 농산물 협상 타결은 국내외 농산물 보호정책의 자유화를 의미하며, 이는 그동안 각국이 자국의 농산물 시장보호와 가격안정을 위해 취해 오던 정책을 감축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시장의 가격 불안정요인을 국제 시장에 전가시켜 오던 각종 정책의 감축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은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derson과 Tyers(1990)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농산물 교역을 자유화할 경우 국제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은 2/3 정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제 농산물 가격 안정은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바람직한 현상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농산물 수입국에 있어서 국제 가격의 안정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UR 농산물 협상 타결로 인한 시장개방은 수입가격 측면에서는 불리하나 식량의 안정적 수입이라는 측면에서의 국제 가격 안정성 증대효과는 긍정적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 1979~80년 기간의 냉해와 이로 인한 국제적인 쌀값 상승을 기억하고 있다. 한국은 그 당시 장기 쌀 구입계약을 체결했으

며, 그 이후 쌀 생산이 정상궤도에 오르자 장기 구입계약에 따른 쌀 도입으로 국내의 쌀 공급이 과잉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의한 피해의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국제 가격이 불안정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때 채택하는 수입정책으로는 국내 저장시설의 확충, 장기 수입계약, 양국간의 식량교역 협정(예, 미소간의 식량 교역 협정)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제 농산물 가격 안정성의 증대는 이러한 정책들의 의미를 축소시켜 주며,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게 된다.

③ 국제적 분업화의 촉진

한국농업은 그동안 국제화·개방화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후반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UR 협상의 타결은 우리의 의사와는 거의 무관하게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의 변화는 또한 한국농업의 국제화·개방화를 더 한층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국제화·개방화는 세계농업의 분업화·전문화를 촉진시켜 각국은 자국의 여건에 맞는 농산물에 특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국제적으로 대량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에 있어서는 몇몇 작목을 전문적·집단적으로 생산하게 될 것이다.

국제 농산물시장의 교역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 세계 경제는 농업과 비농업을 포함한 전체경제의 측면에서 국제분업을 이루어 왔음은 물론 농업내부에 있어서도 분업화를 실현시켜 왔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인한 통신, 수송수단의 개발, 발전은 국제적 분업을 촉진시켜 왔으며, 세계는 이미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과 이로 인한 무역장벽의 해소는 이러한 국제적 분업이라는 기존의 흐름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제적 분업화 과정에서 한국농업이 특화해 나가야 할 농산물은 한국에 주어진 여건과 발전 가능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나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책의지와 국제적 여건 변화에 달려 있으나 최소농업 유지를 위한 일부 곡물은 가격 경쟁력은 없으나, 계속 경작될 수 있을 것이며, 일부 경제적으로 유통이 어려운 채소류, 토산물도 국제적 경쟁력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되어 나갈 것이다.

둘째, 경쟁력을 상실하고 축소되어 가는 일부 곡물류, 축산물에 대체되어 생산될 수 있는 농산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품목들이다. 현재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농산물로는 일부 소가축, 사과와 배 등의 과일류, 화훼류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의 방향에 따라서는 경제전체의 분업화를 놓고 볼 때 농업부문이 전반적으로 급속히 축소되고, 비농업부문이 크게 성장하는 과정을 견게 될 수도 있다. 한국농업이 투자와 기술 개발, 시장 개척 등에 있어 활로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UR 농산물 협상 결과는 농업부문의 급속한 축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나. UR 농산물 협상 타결결과의 이행과 한국농업

UR 농산물 협상에서 각국은 각자의 제안서(Offer List)를 제출하였다. 각국의 제안은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정 수준의 보호 수준 감축은 불가피할 것이다. 보호 수준의 감축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은 최근 UR 협상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많이 행하여졌다. 이러한 계량분석은 제안서가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보호 수준 감축에 따른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며, 이러한 충격을 농업부문 나아가서는 한국경제가 어떻게 흡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 수립에 기초적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UR 농산물 협상 타결로 국제 농산물시장이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UR 타결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UR 타결로 보호 수준 감축이라는 의무를 이행함에 따른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농업(생산자에 대한) 피해와 구조조정의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의 농업보호총량(AMS) 제측 결과를 보면 한국의 농업에 대한 보호는 대부분 국경조치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수한 국내보조(재정보조)에 의한 보호는 쌀과 쇠고기를 제외하고는 AMS의 5% 내외이며, 쌀은 12%, 쇠고기는 11% 수준이다. 따라서 UR 타결 이후 보호 수준 감축으로 한국농업이 받게 될 충격은 주로 국경보호의 감축(관세상당액의 감축)에서 오게 될 것이다.

한국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관세상당액을 30% 감축할 경우에 한국 농업분야의 피해액을 계측한 두 가지 대표적인 연구결과를 통해서 개방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최양부의 (1991)에 따르면 관세상당액 30% 감축으로 인한 피해는 약 2조 3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2>.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미곡부문으로 총피해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환외 (1991)도 관세상당액 30% 감축으로 농업부문 부가가치가 약 2조원 감소할 것으로 계측하였다 <표 5-3>. 1989년도 농업부문 부가가치가 12조원 정도인 것을 생각할 때 농업소득의 약 17%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2 TE 30% 감축에 따른 피해액(품목별 계측)

단위: 억원

품 목	피 해 액	품 목	피 해 액	품 목	피 해 액
쌀	12,163	보리	800	맥주맥	133
콩	594	감자	226	고구마	251
고추	1,287	마늘	1,161	양파	266
감귤	423	참깨	920	땅콩	156
쇠고기	844	돼지고기	425	닭고기	179
계란	125	전지분유	76	탈지분유	79
조제분유	95	기타	1,780		
합계	22,842				

자료: 최양부외, 1991.

표 5-3 TE 30% 감축에 따른 피해액(농업부문모형에 의한 계측)

단위: 10억원

품목	1989년도 부가가치	TE 감축후 부가가치(2001년)
쌀	5,423	3,294
채소	2,066	2,523
쇠고기	753	437
기타축산	693	1,078
전작물	853	269
기타	1,479	1,427
계	12,015	10,031

자료: 이정환외, 1991.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부문이 피해를 보는 반면 비농업부문과 농산물 소비자들은 이익을 보게 된다. 이러한 생산자잉여의 소비자잉여로의 이전은 최세균(1991)의 한국에 있어서의 쌀 시장과 쇠고기 시장개방의 예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에도 비농업부문에 비해 소득의 열위에 놓여있는 농업부문(농업 생산자)에 대한 소득 보전, 피해 보상대책이 개방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R 타결로 인한 개방화는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 특히 생산조정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표 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상당액을 감축할 경우 쌀, 쇠고기 등의 생산액은 감소하나, 쇠고기를 제외한 기타 축산부문과 채소류의 생산액은 오히려 증가한다. 최세균(1990)은 쌀, 쇠고기의 개방으로 과일, 채소 등의 기타 농산물부문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계측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개방화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산조정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생산조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의 연구결과들에 나타난 생산증가 품목들에 대한 철저한 국내의 시장조사와 수급 전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UR 농산물 협상 타결과 이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국내보조의 감축과 국경조치의 관세화가 단행될 경우 국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수매 물량과 품목의 축소는 국내보조 감축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며, 이는 곧 고정된 가격을 시장기능에 맞게 변동하도록 하고, 시장가격의 등락을 정부수매 물량에 의해 조절하던 가격조절 기능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UR 타결의 결과로 국제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은 감소할 것이다. 또한 국내 농산물 가격을 관세화를 통해 국제 가격과 연계시킬 경우 국제 가격의 변동이 국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따라서 국내 가격은 UR 타결 이후 국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안정성이 감소할 것이다. 수매정책, 가격 지지정책 등 가격 안정정책이 UR 협상 타결로 확대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을 고려하면 저장정책의 필요성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UR 타결 이후 증대될 국내 가격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정책으로서의 저장정책의 확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밖에 최근의 세계경제의 주요 흐름으로 기술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국제화·개방화도 한국농업의 흐름의 방향을 UR 타결효과와 함께 국제적 분업화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과 기술의 발달은 세계 농산물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식품 소비패턴은 고급화하게 된다. 국제 농산물시장은 식량부족의 시대에서 식량과잉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소비자들은 식품의 양보다는 질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소득탄성치가 낮은 식품의 소비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곡물류의 상대적 소비 감소와 육류, 유제품 등의 축산물과 과일, 채소 등 수요의 소득탄성치가 높은 식품의 소비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계 농업생산은 곡물류 중심에서 축산물과 과일, 채소 등으로 옮겨 갈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토지보다는 기술과 자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기술의 발달, 특히 통신, 운송 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해 가고 있는 듯하다. 전반적으로 국가간의 교류, 지역간의 교류, 국민간의 교류는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증진은 세계경제의 개방화시대를 촉진시키고 있다. 세계경제의 개방화는 국제적 분업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농업도 국제적 분업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허신행(1989)은 이러한 분업화 과정에서 분화될 국제 농업생산의 형태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토지조방적, 자연자원 의존형 농업으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 범주에 속하는 국가로 보았다. 둘째, 토지조방적이면서 자본집약적인 농업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농업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노동집약적 농업으로 중국·인도·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을 들 수 있다. 넷째, 노동과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으로 한국과 대만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과 기술집약형 농업으로 화란·덴마크·일본 등이 이러한 형태의 농업국에 속한다. 허신행(1989)은 또한 세계농업이 부존자원의 양과 인력, 그리고 자본과 기술 수준에 따라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재편되며, 각국은 유리한 분야로 특화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그는 한국농업에 있어 토지자원의 최소화와 인력 부족 현상의 심화를 들어 한국농업은 자본과 기술집약형 농업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EC 통합과 한국 농업

가. EC 통합이 역외 국가에게 미치는 영향

EC 통합이 역외의 특정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크게 보아 ① 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와 ② 세계 교역질서 예컨대 UR

농산물 협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는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직접효과라고 한다면 후자는 간접효과에 해당된다.

물론 간접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역외국이 보다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직접효과이다. 직접효과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무역 창출효과에 따라 대EC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이고 둘째는, 무역 전환효과 등에 따라 대EC 수출이 줄어드는 효과이다. EC는 EC 통합으로 역내 경제가 활성화되고, 역내의 국별 물리적·기술적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역내외 모든 국가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Commission of the EC, 1988). 반면 미국·일본을 비롯한 역외 국가들은 EC 통합이 지역 경제화, 유럽 요새화(Fortress Europe)가 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농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EC 통합이 역외 국가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으로는

① 경제성장 촉진으로 인한 새로운 시장창출과 이에 따른 역외 국가들의 수출기회 확대

② 동식물 검역·위생관리 기준, 각종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조화로 수출 비용 절감

③ 역내 국경장벽의 제거로 인한 시장 개방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EC 통합이 역외국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① 현재보다 강화된 법규나 검역기준 등을 제정시 새로운 무역장벽 직면

② 역내 무역 촉진으로 인한 무역 전환효과 발생에 따른 대EC 수출 감소

③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대응개방 요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한편 EC 통합이 세계농산물 교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UR 농산물 협상을 통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C 통합으로 EC는 그들의 CAP를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개혁할 것으로 보이지만 CAP 자체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EC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UR에서 EC의 목소리는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UR 협상은 EC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상태에서 타결될 공산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접근상으로 총체적 접근(global approach)과 분리적 접근(separate approach) 중 어느 것이 채택될지는 예상하기가 어렵지만 감축 폭만큼은 미국이 당초 제시한 75%보다 훨씬 낮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록 이론적인 추론에 불과한 것이지만 EC 통합은 세계 농산물시장의 사정을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왜냐하면 ① EC 통합으로 MCA가 철폐되면 역내 지지가격이 인하되어 생산이 줄고 ② GNP 증가 등으로 역내 식품 수요가 증가하여 EC의 과잉농산물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되며 ③ 농업생산비의 저하에 따른 농업소득 증가로 CAP 예산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EC의 과잉농산물 수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통합은 세계의 농업을 보다 분업화·전문화방향으로 진행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각국은 거대 EC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나.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1989년의 경우 미국의 대EC 농산물 수출액은 74억달러였고, 제2의 EC 수입선인 브라질은 50억달러에 달하는 농산물을 EC에 수출했다. 이들 국가를 포함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EC 통합으로 자국의 대EC 농산물 수출길이 막히거나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초기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산품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겠지만, 농산물의 경우 우리 나라와 EC간의 농산물 교역량은 미국이나 호주 등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나라 농업분야는 EC 통합에 대한 관심이 자연히 저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세히 따지고 보면 EC 통합은 분명 우리 나라

농업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농업의 개방화·국제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EC도 우리 나라의 중요한 농산물 교역 상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EC 역내에서의 무역 창출 효과를 EC 자체 내에서 모두 흡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무역 창출효과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역외 국가가 향유하게 될 것인바, 우리 나라라고 이를 공유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EC 통합에 따라 우리 나라의 대 EC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역으로 EC가 역외국에 대해 새로운 무역장벽을 쌓고 배타적인 그야말로 요새화가 될 경우 우리 나라의 대EC 농산물 수출은 어렵게 될 소지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대 EC 농산물 수출이 줄어든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우리 나라에 대해 추가적인 개방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만은 없다고 본다.

이렇듯 EC 통합은 우리 나라 농업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① 긍정적인 영향

EC 통합이 우리 나라 농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중 대표적인 것은 대EC 농산물 수출길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단일화에 따른 GNP 증가로 역외 농산물에 대한 수입수요 증가, 단일규정적용 등에 따른 농산물 수출비용 절감 등은 분명히 우리 나라의 대EC 농산물 수출 가능성을 밝게 해주는 요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EC에 대해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제시하는 것은 본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와 EC간 농산물 교역 현황과 과채류의 수출증대 가능성만을 제시하는데서 멈추기로 한다.

1990년말 현재 우리 나라의 대EC 농수산물 수출액은 총1억 9천만 불로서 전년대비 6% 신장하였다. 동년 우리 나라는 전체농수산물 수

출액 중 7.6%를 EC로 수출했다. 역시 EC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매우 미미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수출품목 구성상으로도 소수품목에 불과하다. <표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의 경우 수산물과 잎담배가 전체 수출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는 인삼 및 인삼제품, 버섯류가 600백만달러 정도 수출될 뿐 나머지 품목들은 매우 미미한 실적이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유럽지역에 사과, 배, 감귤류 주스 등이 소액이나마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도 검역상의 이유로 진출하기 어려운데 유럽에 이들 품목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와 관련시켜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EC 회원국중 우리 나라 농산물 수출의 주요 시장은 스페인(42백만달러), 서독(38백만달러), 프랑스(35백만달러) 등이다. 영국은 27백만달러로서 EC 국가중 우리 나라가 네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다. 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 등은 경제력이 낮고, 농업의 비중이 큰 국가들이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능력이 제한적일 것이고,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면 우리 나라는 향후에도 기존의 수출시장을 넓히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여 서독·프랑스·영국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품목으로는 기존에 어느 정도 수출되던 인삼과 인삼제품, 버섯류 등은 계속하여 수출 증대를 꾀하는 한편 사과와 배 등 과실류의 수출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C의 과실류와 감귤류의 자급도는 각각 84%, 67%로 다른 농산물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영국과 덴마크의 과실류 자급도는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장 개척 및 홍보 그리고 EC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 등을 충족시킨다면 이들 품목의 수출이 본격화 될 수 있다고

표 5-4 우리 나라의 대EC 농수산물 수출실적, 1990

단위: 천달러

	프랑스	이태리	서독	화란	벨기에	그리스	덴마크	영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계
수산물	1,443	4,356	3,491	1,713	2,472	571	161	4,366	1,098	74	11,080	30,825 (3.0)
화훼류	5	9	23	708	-	-	-	-	-	-	-	745 (40.0)
선선버섯	28	-	-	-	-	-	-	-	-	-	-	28 (-)
건조버섯	232	-	171	49	50	-	-	-	-	-	73	575 (2.3)
사과	-	-	1	-	-	-	-	-	-	-	-	1 (-)
배	-	-	56	133	-	-	-	12	-	-	1	202 (3.0)
인삼	134	190	1,114	112	47	7	4	196	30	-	1,477	3,311 (4.1)
조제수산물	26,794	6,088	745	2,290	5,675	480	443	3,567	1,482	-	26,237	73,801 (34.2)
조제버섯	-	-	48	-	-	-	-	-	-	-	-	48 (-)
(죽순)김치	221	-	75	40	3	-	-	19	-	-	414	772 (4.3)
감귤류쥬스	-	-	463	318	303	-	-	-	-	-	-	1,084 (10.8)
인삼제품	167	270	1,276	193	82	3	2	296	29	-	471	2,789 (4.7)
앞담배	1,141	545	27,276	3,348	3,326	560	-	18,077	2,065	715	984	58,037 (71.7)
기타	4,717	2,533	3,633	1,036	1,902	133	288	834	18	1,080	1,793	18,331 (-)
계	34,882	13,991	38,372	9,940	13,860	1,754	1,262	27,367	4,722	1,869	42,530	190,549 (7.6)

() 내는 우리 나라 전체 수출액에 대한 비율임.

자료: 관세청, 1990.

본다. 특히, 영국은 유럽진출의 전초기지로서 먼저 공략해야 될 시장이라고 본다. 다른 회원국에 비해 검역조건이 덜 까다롭기 때문이다. 참고로 <표 5-5>와 <표 5-6>에 EC 주요국의 과실류 검역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선과일류의 자급도가 55%에 불과한 네덜란드는 국내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을 모두 경매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판매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표 5-5 EC 제국에서의 수입금지 과일

국 명	품 목
이탈리아	감귤류, 복숭아, 자두, 살구, 버찌, 배, 사과, 포도
스 페 인	감귤류, 복숭아, 자두, 살구, 배, 사과, 멜론, 수박, 파인애플(여름)

자료: (關口洋一, 1991).

표 5-6 식물검역증명서 제출시 수출 가능품목

국 명	품 목
아일랜드	감귤류, 자두, 살구, 버찌, 사과, 배
네덜란드	아일랜드에서 네덜란드로 들어오는 휴대과일에 대한 증명서 필요
영국, 독일	불필요
프랑스	전과실(단 휴대과실은 불필요)
이탈리아	위 <표 5-5> 이외의 신선과일
스페인	2kg 또는 5개 이하의 휴대과실에 대해서는 증명서 첨부 불필요

자료: <표 5-5와> 동일.

아직 우리 나라 과실류의 대EC 수출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실적은 없는 상태이나 대EC 과실류의 수출이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로 홍보의 부족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맛이나 품질면에서 유럽 산에 비해 우리 나라 사과, 배가 훨씬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유럽인에게 이것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장개척 노력의 일환으로 농산물의 홍보활동이 크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한 수단으로 EC지역에서 농산물 무역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② 부정적인 영향

EC 통합이 우리 나라 농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대EC 농산물 수출시 새로운 비관세장벽의 직면 우려이다. 새롭게 제정 또는 조화될 동식물 검역규정, 포장 및 표시요건 등이 현행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되거나 또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되더라도 역외국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우리 나라는 대EC 수출시 새로운 비관세 장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EC는 1990년부터 EC로 수출되는 우리 나라 양송이 통조림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EC로부터 추가적인 농산물 개방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단일화된 EC 시장에 우리 나라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상호주의라는 원칙에 의거 EC도 우리 나라에 대해 그들의 관심 농산물의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1990년말 현재 EC로부터 우리 나라의 농수산물 수입총액은 2억 3,000만달러로서 전년대비 22.5%가 늘어났다<표 5-7>. 최근 들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EC는 우리 나라 농수산물 수입 총액중 5.7%를 차지하고 있다. EC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로는 낙농제품(69.2%), 알콜, 음료류 (57.1%) 돼지고기통조림(51.7%) 등이다. 국가별로는 영국과 서독·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

표 5-7 우리 나라의 EC 농산물 수입 현황, 1990

단위: 천달러

	프랑스	이태리	서독	화란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덴마크	영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계
가금육	1,617	-	63	523	-	-	-	-	410	-	395	-	3,008(31.0)
낙농제품	4,085	130	32	5,934	3,353	-	-	122	145	-	-	-	13,801(69.2)
커피·차류	102	11	468	29	1,017	-	8	-	122	-	-	276	2,033(2.4)
곡물류	206	-	2,504	1,311	-	-	-	12,159	7,639	-	-	-	23,819(1.8)
전분류	3,097	-	1,138	300	796	-	-	587	-	-	-	-	5,918(24.1)
유지류	1,070	64	3,230	5,602	607	-	-	531	1,097	-	-	180	12,381(6.4)
돼지고기	48	3	8	74	-	-	-	2,697	2	-	-	-	2,832(51.7)
통조림													
당류와	1,018	14	1,011	3,051	125	-	-	347	1,621	-	-	8,811	15,998(3.8)
과자류													
코코아제품	751	244	2,494	12,091	1,982	-	-	329	1,829	-	87	1,606	21,413(42.0)
과채류	245	62	369	262	61	-	41	190	756	1,211	-	440	3,637(2.9)
조제품													
기타조제	597	8	3,248	1,138	573	-	-	1,159	3,583	-	3,388	-	
식품													
음료·알콜류	2,745	1,211	4,683	835	62	-	-	73	29,401	56	101	233	39,400(53.1)
기타	12,952	4,553	18,493	6,592	3,784	71	7,802	5,850	10,858	76	1,211	1,916	73,449(-)
계	28,533	6,301	37,741	37,742	12,363	71	7,851	24,044	57,463	1,343	4,797	12,742	230,991(5.5)

()내는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비율임.

자료: 관세청, 1990.

비중이 높다. 앞으로도 EC가 우리 나라에 대해 농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게 될 경우 현재 EC가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역내에서 과잉생산되고 있는 낙농제품과 육류 가공품에 대한 개방압력이 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넷째로는 EC 통합에서 무역 전환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대 EC 농산물 수출이 감소할 수 있는 미국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개방압력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5-8〉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EC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 수출에서 EC의 비중은 대부분의 품목중에서 1986년 또는 1987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1986년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EC 가입에 따른 무역 전환효과와 EC 역내의 생산 증대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했을때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 수출중 EC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육류 및 육류 조제품, 곡물 및 곡물 조제품에 대한 수입개방압력을 추가적으로 가할 가능성이 있다.

표 5-8 연도별 및 주요 품목군별 미국 농산물 수출시장으로서 EC 비중*

단위: %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식품 및 산동물	15.3	16.2	19.1	17.9	14.3	11.5
육류 및 육류조제품	11.8	11.9	12.4	13.3	10.2	5.8
낙농품 및 조란	2.0	6.1	2.1	1.7	4.2	3.4
곡물 및 곡물조제품	9.5	9.1	6.8	5.0	4.9	4.2
과채류	20.1	20.9	23.0	27.0	25.8	22.4
동물사료	53.9	56.2	58.9	56.3	41.8	39.8

* 미국의 총수출중 EC에로의 수출 비중.
자료: OECD, 1989.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은 1992년 11월의 미국 대통령선거, 1992년도말을 목표로 진행중인 EC 통합, 1991년 7월의 G7 정상회담에서 1991년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한 점 등의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1991년말까지의 타결 가능성이 높다. 세계 농산물시장은 개방화·분업화의 추세를 견지해 왔으며,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은 이러한 추세를 급진전시킬 전망이다.

한편 지역주의 흐름으로서의 EC 통합도 역내외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농업부문은 물론 한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업부문의 개방은 한국농업에 커다란 시련이 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교역질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농산물 교역질서 변화를 UR 협상과 EC 통합의 관점에서 조명할 때 분야별 파급효과와 그 함축성은 다음과 같다.

(1)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와 농업부문에 대한 국내보조의 감축은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유도할 것이다. USDA, UNCTAD를 비롯한 몇몇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산물시장의 완전한 자유화는 국제 농산물 가격을 20%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UR이 타결된다 해도 농업부문이 완전히 자유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보조, 국경조치, 수출보조의 3개 분야가 평균 50% 정도 감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농업부문 보호를 50% 감축할 경우를 가정하여 Krissoff외의 연구결과와 연계시켜 보면 국제 농산물 가격은 8% 정도 상승한다. 그러나 품목별로는 큰 차이가 있다.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은 식량자급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최소한 중단기적으로는). 또한 한국과 같은 농산물 수입국에 있어서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은 수입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을 8%로 가정할 때 연간 농산물 수입에 대한 추가비용은 3억 4천만달러를 넘게 된다. 품목별로는 옥수수 수입에 1억 3천만달러, 설탕 수입에 7천만달러, 밀 수입에 4천 2백만달러, 쇠고기 수입에 2천만달러 등 농산물 수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은 여타조건이 일정하다면 국내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가 현저하여 국제 가격이 10~20% 정도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해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축산물(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가 크지 않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품목의 국제 가격 상승은 국제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제 곡물(사료곡물)류 가격 상승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축산업에 생산비 인상요인이 되며,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약화는, 특히 사료곡물 자급국과 수출국에 대하여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수출품목

으로 육성할 경우 태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잠재적 수출 경쟁국인 미국·EC와의 경쟁에서도 국제 곡물류 가격 상승은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은 UR 타결에 의한 의무사항 이행에 도움이 된다. UR 타결로 한국 농산물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줄 부분은 각종 비관세 국경조치의 관세화와 이의 감축이다. 만약 국제 가격이 상승한다면 관세상당액을 일정 부분 감축함으로써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과 수입 증가의 충격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결국 UR 타결로 인한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은 농산물 수입비용의 증가, UR 협상 결과 이행에 따른 충격 감소, 농산물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 축산물의 경쟁력 약화 등의 파급효과를 한국농업에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국제수지 적자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수입비용 추가부담에 따른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수출 증대, 특히 농산물 수출 증대의 필요성이 그만큼 증가한다. 또한 국제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은 식량자급의 필요성을 그만큼 증가시키는 바, 특히 큰 폭의 가격 상승(68%)이 예상되는 유제품 등의 자급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일부 축산물의 수입 사료곡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는 특히 대 태국·EC·미국과 관련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국제 농산물 가격 안정성 증가와 관련하여

국제 농산물 가격의 안정성은 각국의 농업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제 가격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국내정책으로는 종가세와 각종 저장정책을 들 수 있으며, 안정성을 저해하는 정책은 변동부과금제, 국제 가격 변동률을 국내 가격에 반영시키는 각종의 가격정책, 수량규제 등이 있다. 반면 종량세와 부족불지불제도는 자유무역과 비교할 때 국제가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UR 협상 타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자유화와 국제 가격 안정성과의 관계는

이러한 정책들의 상반된 영향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현행 관세의 인하와 저장정책은 UR 이후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반면 EC의 변동부과금 제도와 각국의 비관세조치는 관세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UR 타결 이후 국제 가격 안정성은 향상될 것이다. 세계 농산물시장의 완전한 자유화는 국제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을 2/3 정도 감소시킬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국제 가격 안정성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직결된다. 국제 가격 안정성의 향상은 수입국과 수출국 모두에게 바람직한 현상이다. 특히, 수입국에 있어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채택해 온 장기 수입계약, 양자간의 식량교역협정 등의 필요성이 감소되며, 이러한 정책수행에 따른 비용도 감소한다.

(3) 국내 보호수준 감축과 관련하여

농업에 대한 보호수준을 감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농업피해발생, 국제적 분업화 촉진, 국내 가격 불안정성의 증가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보호수준 감축에서 한국농업에 가장 큰 타격이 될 관세상당액의 감축에 있어 30% 감축을 가정하더라도 2조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반면 비농업부문과 소비자의 잉여는 증가한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생산자의 피해는 소비자잉여의 증가 가운데 일정 부분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보호수준의 감축은 국제적 분업을 촉진시키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농업도 전문화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특화방향은 주어진 여건과 국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채소류, 쇠고기를 제외한 기타 축산물, 과일, 화훼류 등의 생산활동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생산조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수입 전망 등의 시장분석이 필수적이다.

UR 협상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수매 물량과 품목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국내 가격 불안정성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

다. 또한 관세화를 통해 국내 농산물 가격을 국제 가격과 연계시킬 경우 국제 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가격 불안정요인도 증가한다. 따라서 수매정책, 가격 지지정책 등이 UR 타결로 감소할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국내가격 불안정성 증대에 대비한 저장정책의 확대 필요성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4) EC 통합과 관련하여

EC 통합은 EC 경제를 활성화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약 5%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는 물론 역내 무역장벽의 제거로 무역 창출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EC 통합은 CAP 개혁과 함께 EC 농업을 보다 효율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GNP 증가 및 지지가격 인하 등에 따라 농산물 소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농산물 무역도 촉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 농업이 EC 통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으로는 ①과 채류 등 농산물의 대EC 수출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②EC가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유제품 및 육류 가공품 등에 대한 수입개방압력을 더욱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③EC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감소한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개방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가 되도록 하는 한편 긍정적인 영향, 즉 농산물 수출 확대 가능성은 십분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EC 시장에서 우리 나라 농산물의 홍보를 강화하고, EC 통합으로 변화될 제규정·기준 등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EC가 추가적으로 개방을 요구할 육류 가공품과 같은 품목에 대한 사전 대비책의 수립도 요청된다. 이러한 대비책의 요체는 무엇보다도 관련 품목의 경쟁력 제고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인용 및 참고문헌

- 관세청, 「무역통제연보」, 1990.
- 김세원, 「국제경제질서」, 무역경영사, 1985.
- 대한민국 정부, 「Negotiating Group on Agriculture Country Lists」, 미발간의 GATT 제출자료, 1990.
- 도용환, 백홍근, 「EC 통합의 개관 및 시사점」, 신한종합연구소, 1989.
- 민병해, 「경제 통합론」, 법문사, 1988.
- 민충기, 「EC 경제통합과 대외무역정책의 변화」, 정책연구 9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 박성조, 「통합시장 EC」, 매일경제신문사, 1989.
- 이정환 외, “UR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촌경제」, 제13권 4호, 1990. 12.
- 이정환, “UR과 한국농업의 기본문제, 그리고 농정의 선택,” 「농촌경제」, 제14권 1호, 1991. 3.
- 이재욱 외,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추이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전국경제인연합회,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한국경제의 진로」, 1989.
- 주 EC 대표부, 「EC 농업정책 동향」, 1991.
- 최세균, “수입자유화 효과분석에 대한 일반균형 이론의 적용,” 「농촌경제」, 제13권 4호, 1990. 12.
- , “최고기 수입개방과 사회적 후생의 변화,” 한국농업경제학회, 1990년도 동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1. 2
- 최양부 외, 「UR 농산물 협상 및 수입자유화 전략 수립에 관한 연

- 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 허신행, “기술의 시대와 21세기 농업,” 「농촌경제」, 제12권 4호, 1989. 12.
- , “UR 이후의 세계농업 전망과 우리 농업의 나아갈 길,” 「농촌경제」, 제13권 4호, 1990. 12
- 關口洋一, “農産物 輸出と植物檢疫,” 「農業構造問題研究」, 제169호, 1991, pp. 73~117.
- 岸上愼太郎, 「EC 1992年 핸드ブック」, The Japan Times, 1989.
- 中野一新, 「國際農業調整と 農業保護」, 農山漁村文化協會, 1990.
- Agra Europe*, No. 1444, June 14, 1991.
- , No. 1447, July 5, 1991.
- Anderson, K and R. Tyers, “Welfare Gains to Developing Countries from Food Trade Liberalization Following the Uruguay Round,” Department of Economics and Centre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Univ. of Adelaide, Australia, July, 1990.
- Bale, M.D. and E. Lutz, “The Effects of Trade Intervention on International Price In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61, No. 3, August, 1979.
- Balassa, Bela, *The Theory of Integrations*, George Allen & Uuwin Ltd., 1969.
- Brealey Mark and Quigley Conor,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of the EC: 1992 Handbook*, Graham & Trotman, 1989.
- Burniaux, J.M et al, “Economy-Wide Effects of

-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 GE Approach Using the Walras Model," in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eds. Goldin, I. and O. Knudsen, World Bank, 1990.
- Cecchini, P, *et al.*, *The European Challenge 1992. The Benefits of a Single Market*, Grawer, Aldershot, 1988.
- Christophe Jean, *et al.*, *The European Single Market*, study written by the Clud de Bruxelles under the direction of Jonathan TODD, 1989.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EC), *Perspectives fo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om(85) 333 final, July 1985.
- ,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An Area Without Internal Frontiers, The Progress Report Required by Article 813 of the Treaty*, Com(88) 650, 17 • November, 1988.
- , *Restoring Equilibrium on the Agricultural Market*, 1988(a)
- , *Europe Without Frontiers -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 of the Communities, 1989.
- , *A common Agricultural Policy for the 1990s*,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 of the Communities, 1989. (a)
- , *Agricultural Situation in the Community*, 1991.
- , *Communication of the Commission of the Council : The Development and Future of the CAP*, COM (91) 100 final, February 1991(b)

- , CAP Reform: *NEW Commission Proposals Single Major shift in Farm Policy*, 1991(c)
- El — Agraa, Al M., *The Economics of the European Community*, Philip Allan, 1990.
- Emerson, M. *et al.*, *European Economy*, Belgium, 1988.
- Harris Simon, *et al.*, *The Food and Farm Policies of the European Community*, John Wiley & Sons, 1983.
- Josling Tim, "Completion of International Market Implications for Non-EEC Countries," *Food Policy*, Vol. 15, No. 2 April 1989, pp. 152~160.
- Krissoff, B. *et al.*,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s and Developing Countries," ERS, USDA, *Staff Paper* No. AGES 9042, Washington, D.C. 1990.
- MAHE', L. P and TAVERA, C., "Bilateral Harmonization of EC and U.S Agricultural Policies,"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15, 1989, pp. 327~348.
- Manegold, "EC Agricultural policy 1988~89," *Review of Marketing and Agricultural Economics*, Vol. 57, No. 1~3, 1989, pp. 11~46.
- March, John S., "Alternative policies for Agriculture in Europe,"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14, 1987, pp. 11~21.
- ,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Juliet Lodge, ed,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Challenge of the Future*, St. Martins Press, 1990.
- OECD, *Foreign Trade by Commodities*, Vol. 2, 1989.
- Parikh K. S. *et al.* *Towards Free Trade in Agriculture*,

- Laxenburg, Austria, 1988.
- Rosenblatt Julis, *et al.*,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of the European Community - Principles and Consequences*, IMF Occational Paper No. 62, 1988.
- Runge, F. C. ,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Uruguay Round," *Staff Paper* , Univ. of Minnesota, 1991, 2.
- Sarris, Alexander H., "EC-US Agricultural Trade Confrontation," in Robert E. Baldwin, *et al.*, eds, *Issues in US-EC Trade Rela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pp. 101~134.
- Shei , S.Y., and R.L. Thompson, "The Impact of Trade Restrictions on Price Stability in the World Wheat Market,"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59, No. 2, May 1977.
- Swinbank Alan, "Implications of 1992 for EEC Farm and Food Policies," *Food Policy*, Vol. 15, No. 2. April 1990, pp. 102~110.
- Tanner Carolyn and Swinbank Alan, "Prospects for Reform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Food Policy*, Vol. 12, No. 4, 1987, pp. 290~294.
- Tracy Michael, *Agriculture in Western Europe-Challenge and Response. 1880~1980*, Granada Publishing, 1982.
- UNCTAD,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in the Uruguay Rou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UNDP/UNCTAD Projects of Technic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for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New York, 1990.

US Department of Commerce, *EC 1992 : A Commerce Department Analysis of European Community Directives*, Vol. 1-3, 1989.

Veer Jan le, "Perspectives for the CAP,"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14, 1989. pp. 1~10.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0*, 1990.

Zietz, I, and A. Vald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in Food and Agricultural Policies : Effects of Alternative Policies," in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eds. Goldin, I. and O. Knudsen, World Bank, 1990.

Zwart, A. C. and D. Blandford, "Market Intervention and International Price Stability,"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71, No. 2, May 1989.

빈

면

연구보고 239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 변화와 한국 농업

UR 농산물 협상 타결 및 EC 통합과 관련하여

적은날 1991. 8.

펴낸날 1991. 8.

발행인 허 신 행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적은곳 (주)문 원 사 739-391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